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교도작업특별회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6.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목 차】

Ⅰ. 개 관 ····· 1
1. 법무부 소관 세입 ····· 1
2. 법무부 소관 세출 ····· 2

Ⅱ. 회계별 총괄 ····· 4
1. 일반회계 ····· 4
가. 세 입 ····· 4
(1) 총 괄 ····· 4
(2) 세입내역 ····· 6
나. 세 출 ····· 8
(1) 총 괄 ····· 8
(2) 프로그램별 세출결산 내역 ····· 13
(3)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 19
다. 예비비 ····· 23
2. 교도작업특별회계 ····· 24
가. 세 입 ····· 24
(1) 총 괄 ····· 24
(2) 세입내역 ····· 24
나. 세 출 ····· 26
(1) 총 괄 ····· 26
(2) 세출내역 ····· 28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30
가. 수 입 ····· 30
나. 지 출 ····· 31

Ⅲ. 검토의견 ····· 33
1. 일반회계 ····· 33
◈ 세 입 ◈ ····· 33
(1) 총 괄 ····· 33
▢ 과태료 등 장기 미수납 관련 대책마련 필요 ····· 35
(2) 위약금(57-572) 및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38
▢ 세입추이를 고려하지 않는 관행적 예산액 산정 주의 필요 ····· 40
(3)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5-651) ····· 45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입예산액 편성 필요 ····· 46

◈ 세 출 ◈ ····· 49
가. 총괄 및 기획조정실 등 ····· 49
(1) 총 괄 ····· 49
▢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등 지속 점검 필요 ····· 49
▢ 국회 심의 없는 검사 직책수행경비 지급구간 신설 주의 필요 ····· 54
▢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예산의 편성·집행에 통일성 확보 필요 ····· 62
▢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66
(2)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7034-500) ····· 71
▢ 윈도우11 전환사업 점검 및 문제 재발 방지 필요 ····· 72
(3)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7038-301) ····· 76
▢ 국회 미심사 신규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전용 주의 필요 ····· 77
(4)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 81
▢ 드론 보험료 집행과목 부적절 ····· 81

나. 법무실 ····· 84
(1)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1031-300) ····· 84

▢ 공익법무관의 충원율 제고 및 배치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 85
(2) 기업환경지수개선 사업(1032-307) ····· 89
▢ 보조비목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일반수용비 집행 주의 필요 ····· 90

다. 인권국 ····· 94

(1) 법률구조(1131-300) ····· 94
▢ 자체수입 과소 수납에 따른 사업 차질 ····· 95
(2) 인권국 기본경비(7011-263) ····· 102
▢ 집행계획 없는 정책연구비 편성 지양 필요 ····· 103

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105

(1)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 105
▢ 세부사업의 활성화나 통·폐합 여부를 검토할 필요 ····· 106
(2) 이민정책연구원 운영(1231-302) ····· 108
▢ 보고서 발간 체계 점검 필요 ····· 109
(3)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1232-300) ····· 112
▢ 출국대기실 운영실적에 근거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113
(4)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32-305) ····· 117
▢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모니터링 필요 ····· 118
(5)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 122
▢ 보호외국인 의무관 임상연구비의 적정성 점검 필요 ····· 123
(6)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 ····· 126
▢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예산 낭비와 같은 사례 예방 대책 필요 ····· 127

마. 검찰국 ····· 131

(1) 개관 및 총괄 ····· 131
▢ 검찰청 소관 결산 개요 ····· 131

▢ 예산집행 세부내역 관행적 미제출 시정 필요 ····· 134
(2)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 137
▢ 검찰청 소관 영상녹화장비를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필요 ····· 138
(3)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1) ····· 143
▢ 검찰청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 144
(4) 마약수사(1335-304) 등 ····· 146
▢ 가상자산추적 관련 예산집행의 실효성 제고 필요 ····· 147
(5) 형사보상(1337-302) ····· 150
▢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등 개선 필요 ····· 151
(6)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 160
▢ 자산취득비 및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 과다편성 주의 필요 ····· 161
(7) 검찰청시설운영(1333-300) 등 ····· 165
▢ 공공요금 등 부족분에 대한 연례적 이·전용 개선 필요 ····· 166
(8) 공공수사(1335-302) 등 ····· 170
▢ 포상금 편성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171
(9)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1335-305) ····· 176
▢ 각 내역사업의 연례적 실적부진 개선 필요 ····· 177
(10)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 180
▢ 예산편성·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 철저 필요 ····· 181
(11)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1335-306) 등 ··· 187
▢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비 과다편성 개선 필요 ····· 189
▢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 예산 과다편성 개선 필요 ····· 192

바. 국제법무국 ····· 197

(1)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1431-302) ····· 197
▢ 연구용역의 연례적인 연말발주 실태 개선 필요 ····· 199

(2) 국제법무국 기본경비(7011-266) ····· 202
▢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개최경비의 기본경비 집행 및 예산 전용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03

사. 교정본부 ····· 207
(1)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 207
▢ 면밀한 이·전용 등 예산의 계획적 집행 필요 ····· 208
(2)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 212
▢「제2차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 213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문제 ····· 215
(3) 교정교화(1532-301) ····· 221
▢ 가족만남의 시간 등 사회적 처우 활성화 필요 ····· 222
▢ 정신질환자·이상동기범죄자 등 심리치료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26

아. 범죄예방정책국 ····· 231
(1) 소년원생수용(1632-300) ····· 231
▢ 소년원학교 교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자격 교원 인력 충원 필요 ···· 232
(2) 갱생보호활동(1633-300) ····· 238
▢ 전남기술교육원 건립사업 이월 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239
(3) 전자감독 (1635-301) ····· 245
▢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대응한 지도·감독 전담인력 확충 필요 ····· 246

자. 법무연수원 ····· 250
(1)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5131-311) ····· 250
▢ 수입대체경비 편성 목적과 무관한 예산 집행 재발방지 필요 ····· 251
(2) 법무연수원 기본경비(7018-254) ····· 255
▢ 예산편성과 다른 집행 등 부적절한 집행 관행 개선 필요 ····· 256

◈ 예 비 비 ◈ ····· 259
(1) 조은석 특별검사(1339-309), 이명현 특별검사(1339-311) ····· 259
▢ 예비비지출 개요 ····· 259
▢ 예비비 배정액의 전용 및 과다 불용 주의 필요 ····· 261

2. 교도작업특별회계 ····· 269
◈ 세 입 ◈ ····· 269
(1) 교도소수입(63-631) ····· 269
▢ 교도작업 재료비 증가 및 수입실적 추세를 반영하지 않는 부적정한 예산 편성 관행 시정 필요 ····· 269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274
◈ 총 괄 ◈ ····· 274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 미준수 시정 필요 ····· 275
◈ 수 입 ◈ ····· 278
(1)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278
▢ 미수납된 이자금의 신속한 수납 필요 ····· 279
(2)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282
▢ 장기 미수납된 정산 반환금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 마련 필요 ····· 283
(3) 일반회계 전입금(91-911) ····· 287
▢ 연례적인 전입금 법정비율 미준수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288
◈ 지 출 ◈ ····· 290
(1)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 290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적기 반납을 위한 조치 필요 ····· 292
▢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변경 및 보조금 교부 부적정 ····· 295

(2)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 298
▢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개소 지연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 300

【참고자료】 2024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결과 ····· 306

Ⅰ. 개　　관

법무부는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1. 법무부 소관 세입

2025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조 6,673억 6,3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전년대비 291억 1,500만원(1.8%) 감소한 1조 6,165억 200만원으로, 수납액의 주요 감소 요인은 일반회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등의 수납액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미수납액은 168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7억 4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1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은 과태료,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관급물품 훼손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 등이 미수납된 것에 따른 것이고,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의 미수납액은 위탁 교도작업 공임이 미수납된 것에 따른 것임.

<전체 세입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5년	1,667,363	1,633,393	1,616,502	96.9	99.0	1	16,890
2024년	1,445,459	1,662,669	1,645,617	113.8	99.0	2	17,051
증감률	15.4	△1.8	△1.8	-	-	△57.2	△0.9

<회계별 세입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667,363	1,633,393	1,616,502	1	16,890
일 반 회 계	1,543,683	1,498,539	1,481,834	1	16,704
교 도 작 업 특 별 회 계	123,680	134,854	134,667	-	186

2. 법무부 소관 세출

2025년도 세출예산(추경예산액 기준. 이하 개관 및 회계별 총괄 부분에서 같음) 총액은 4조 5,188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을 합하여 총 4조 9,101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음.

2025년도 지출액은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조 8,667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고,

2026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총 1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3%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불용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432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8억 7,4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 33억 3,400만원임.

<전체 세출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5년	4,518,802	4,910,156	4,866,775	107.7	99.1	173	43,208
2024년	4,414,107	4,427,902	4,374,179	99.1	98.8	10,093	43,631
증감률	2.4	10.9	11.3	-	-	△98.3	△1.0

<회계별 세출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총 계	4,518,802	4,910,156	4,866,775	173	43,208
일반회계	4,395,122	4,786,455	4,746,407	173	39,874
교도작업 특별회계	123,680	123,702	120,368	-	3,334

II. 회계별 총괄

1. 일반회계

가. 세 입

(1) 총 괄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5년	1,543,683	1,498,539	1,481,834	96.0	98.9	1	16,704
2024년	1,324,930	1,531,021	1,514,352	114.3	98.9	2	16,667
증감률	16.5	△2.1	△2.1	-	-	△57.2	0.2

(가) 전년 대비 증감내역 및 증감사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5,436억 8,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4,985억 3,900만원으로, 이 중 1조 4,818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고 167억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구체적으로, 수납액은 2024년 대비 325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감소율 2.1%), 이는 주로 벌금 및 과료 수납액이 전년도 1조 3,020억 6,600만원에서 1조 2,539억 8,900만원(전년 대비 480억 7,800만원 감)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2025년도 법무부 일반회계에서의 세입예산 수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징계부과금	1조 4,078억 3,100만원
· 면허료 및 수수료	337억 800만원
·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230억 8,600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136억 2,700만원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1억 3,700만원
· 토지, 건물 등 관유물대여료	8억 9,100만원
· 변상금 및 위약금	7억 8,200만원
· 기타잡수입	7억 5,800만원
· 가산금, 자산매각대 등 기타	1,500만원

(나) 미수납내역과 발생사유

미수납액 167억 400만원의 내역은 벌금 및 과료, 과태료 등 123억 9,4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5억 3,600만원, 가산금 및 자산매각대 등 13억 6,4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7,500만원, 기타 1억 3,400만원으로, 그 원인은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납기 미도래 등임.

(2) 세입내역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543,683	1,498,539	1,481,834	1	16,704
▪ 재산수입	1,426	2,162	2,028	-	134
▪ 경상이전수입	1,481,942	1,438,805	1,422,239	1	16,56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3,298	34,466	34,466	-	-
▪ 수입대체경비수입	27,017	23,086	23,086	-	-
▪ 관유물매각대	-	20	15	-	5

(가) 재산수입

재산수입은 토지·건물 및 기타관유물대여료와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21억 6,200만원 중 20억 2,8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3,400만원임.

(나) 경상이전수입

경상이전수입은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1조 4,388억 500만원 중 1조 4,222억 3,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00만원, 미수납액은 165억 6,500만원임.

(다)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면허료·수수료, 기타 잡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344억 6,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및 법무연수원 교육비로서 징수결정액 230억 8,6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마) 관유물매각대

관유물매각대는 건물·기계기구 등 고정자산 등의 매각대금으로서 징수결정액 1,500만원 중 1,000만원이 수납되었고, 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나. 세 출

(1) 총 괄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4조 3,951억 2,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0억 7,100만원, 예비비 3,812억 6,200만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은 총 4조 7,864억 5,500만원이 되었음.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예 산 액	예 산 결 정 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증감(△)액	이 용 증감(△)액	
4,395,122	10,071	381,262	21,457 △21,457	56,449 △56,449	4,786,455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2%인 4조 7,464억 7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0%인 1억 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인 398억 7,400만원임.

<법무부 일반회계 소관 세출 현황(전년도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5년	4,395,122	4,786,455	4,746,407	108.0	99.2	173	39,874
2024년	4,293,578	4,306,684	4,255,881	99.1	98.8	10,071	40,732
증감률	2.4	11.1	11.5	-	-	△98.3	△2.1

(가) 성질별·프로그램별 지출

2025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의 성질별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인건비 지출액은 2조 7,626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무원 증원 등 인건비 소요액 증가에 따른 것임.

물건비 지출액은 7,649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 소요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전지출비는 9,294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2% 증가하였고, 이는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등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자산취득 지출액은 2,006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비의 지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전출금은 887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는데, 이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납입금임.

<2025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성질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
2025년	4,746,407	2,762,617	764,978	929,408	200,643	88,762
2024년	4,255,881	2,679,346	753,367	521,674	215,373	86,121
증감률	11.5	3.1	1.5	78.2	△6.8	3.1

2025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의 프로그램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지출되었음.

- 법무활동 4,583억 4,900만원
- 인권활동 730억 8,300만원
- 출입국관리 1,606억 1,000만원
- 검찰활동 4,421억 3,200만원
- 국제법무활동 90억 4,500만원
- 교정활동 4,756억 300만원
- 범죄예방활동 1,691억 7,600만원
- 특별감찰관활동 7억 600만원
- 법무교육훈련 77억 5,300만원
-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등 2조 9,499억 5,100만원

(나) 전용액

2025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214억 5,7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9% 감소한 금액임.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음.

·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족액 64억 3,100만원
· 구호 및 교정비 등 부족액 56억 2,500만원
· 형사보상금 부족액 47억 7,500만원
· 국내 및 국외 업무여비 부족액 20억 9,600만원
· 인건비 부족액 12억 4,900만원
· 연구비 등 기타 부족액 12억 7,900만원

(다) 이용액

2025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564억 4,900만원이 이용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금액임.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세부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이용이 이루어졌음.

· 형사보상금 부족액 377억 3,700만원

· 교정시설 등 공공요금부족액 106억 1,200만원

· 교정시설 수용자 급식비 등 부족액 81억원

(라) 이월액

2025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1억 7,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8.3% 감소한 금액임. 이는 리모델링사업이 국유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비(420목) 이월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연구용역 등 계약 수행을 사유로 이월처리되었음.

· 연구용역 등 각종 용역 1억 7,300만원

(마) 불용액

2025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총 398억 7,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금액임. 프로그램별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음.

- 법무활동 2억 4,300만원
- 인권활동 7,900만원
- 출입국관리 21억 9,200만원
- 검찰활동 182억 3,900만원
- 국제법무활동 8,800만원
- 교정활동 36억 7,500만원
- 범죄예방활동 20억 2,800만원
- 특별감찰관 활동 100만원
- 법무교육훈련 4억 600만원
-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등 129억 2,300만원
  (인건비 63억 2,800만원, 기본경비 36억 800만원 포함)

(2) 프로그램별 세출결산 내역

(가) 법무활동(1000)

법무활동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액은 1,532억 5,6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600만원, 예비비 3,053억원을 포함한 4,586억 2,200만원으로 이 중 99.9%인 4,58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예비비 3,053억원은 국가배상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000만원은 계약기간 이행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 2억 4,3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5년도 법무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153,256	66	305,300	56 △56	-	458,622	458,349	30	243

(나) 인권활동(1100)

인권활동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731억 6,200만원으로, 이중 99.9%인 730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9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5년도 인권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73,162	-	-	-	-	73,162	73,083	-	79

(다) 출입국관리(1200)

출입국관리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액은 1,629억 1,4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이용액 1억 1,200만원을 감한 1,628억 200만원으로 이 중 98.7%인 1,606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전용액 10억 9,200만원은 청사 임차료, 관리비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불용액 21억 9,2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5년도 출입국관리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 출승인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162,914	-	-	1,092 △1,092	△112	162,802	160,610	-	2,192

(라) 검찰활동(1300)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2025년도 추경 반영 예산액은 3,495억 5,3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400만원, 예비비 729억 5,200만원, 이용액 377억 3,700만원을 포함한 4,604억 3,600만원으로 이 중 96.0%인 4,42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예비비 729억 5,200만원 중 429억원은 형사보상금 부족분에, 300억 5,200만원은 특별검사 운영 경비에 충당하였고, 이용액 377억 3,700만원은 형사보상금 부족분에, 전용액 100억 8,300만원은 형사보상금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500만원은 연구용역비 등이 이월된 것이고, 불용액 182억 3,9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5년도 검찰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349,553	194	72,952	10,083 △10,083	37,737	460,436	442,132	65	18,239

(마) 국제법무활동(1400)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은 2024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예산액은 61억 1,7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 및 예비비 30억 1,000만원을 포함한 91억 5,500만원으로 이 중 98.8%인 90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월액 2,300만원은 계약기간 이행에 따른 것임.

<2025년도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6,117	28	3,010	-	-	9,155	9,045	23	88

(바) 교정활동(1500)

교정활동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액은 4,561억 5,8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2,000만원, 이용액 166억원을 포함한 4,792억 7,800만원으로 이 중 99.2%인 4,75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음.

전용액 60억 5,000만원은 구호 및 교정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부족분에 충당하였고, 이용액 166억원은 수용자 급식비,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부족분에 충당하였으며, 불용액 36억 7,5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5년도 교정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456,158	6,520	-	6,050 △6,050	16,600	479,278	475,603	-	3,675

(바) 범죄예방활동(1600)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액은 1,715억 8,4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이용액 3억 8,000만원을 감한 1,712억 400만원으로 이중 98.8%인 1,69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용액 3억 8,000만원은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액으로, 전용액 6,200만원은 보호관찰활동 국내여비 부족분에 각각 충당하였으며, 불용액 20억 2,8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5년도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171,584	-	-	62 △62	△380	171,204	169,176	-	2,028

(사) 특별감찰관활동(1800)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액은 8억 7,400만원이며 이 중 87.0%인 7억 6,069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874	-	-	303 △303	-	874	761	-	103

(아) 법무교육훈련(5100)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81억 5,900만원으로 이 중 95.0%인 77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억 600만원은 집행잔액임.

<2025년도 법무교육훈련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8,159	-	-	-	-	8,159	7,753	-	406

(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7000)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은 법무·검찰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및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2조 9,245억 8,3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6,200만원을 합하고 이용액 538억 4,500만원을 감한 2조 8,740억원으로 이 중 99.6%인 2조 8,611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8억 1,100만원은 불용하였음.

전용액 38억 1,200만원은 운영비와 여비 부족분 등에 충당하였고, 불용액 128억 1,100만원만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임.

<2025년도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2,924,583	3,262	-	3,812 △3,812	△53,845	2,874,000	2,861,134	56	12,811

(차) 기타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의 전출금(8800)으로 예산액 887억 6,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3)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2025년도 법무부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계상되었던 사업은 10개 프로그램에 82개 세부사업으로 총 1조 9,820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음.

(가) 부서별 결산내역

법무실 소관으로 국가배상금지급 등 11개 사업에 4,583억 4,900만원,

인권국 소관으로 법률구조 등 5개 사업에 730억 8,300만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등 9개 사업에 1,606억 1,000만원,

검찰국 소관으로 수사지원 등 23개 사업에 4,421억 3,200만원,

국제법무국 소관으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등 4개 사업에 90억 4,500만원,

교정본부 소관으로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등 5개 사업에 4,756억 300만원,

범죄예방정책국 소관으로 갱생보호활동 등 9개 사업에 1,691억 7,600만원,

법무연수원 소관으로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등 4개 사업에 77억 5,3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나) 기타

기획조정실 등 소관 11개 사업에 968억 5,000만원, 특별감찰관 소관 1개 사업에 7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2025년도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총 계	4,340,427	4,786,455	4,746,407	173	39,874
인건비 계	2,661,080	2,607,475	2,601,147	-	6,328
기본경비 계	167,311	166,856	163,192	56	3,608
기금전출금 계	88,762	88,762	88,762	-	-
사업비 계	1,512,036	2,012,124	1,982,068	118	29,938
<법무활동>	153,256	458,622	458,349	30	243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2,961	2,746	2,689	-	57
국가배상금지급	131,765	437,280	437,279	-	1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678	678	678	-	-
기업환경지수 개선	2,653	2,653	2,652	-	1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4,659	4,659	4,650	-	9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2,595	2,595	2,559	30	6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	826	826	822	-	4
변호사 제도의 선진화	779	779	764	-	15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5,283	5,283	5,188	-	95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771	837	817	-	2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	286	286	252	-	34
<인권활동>	73,162	73,162	73,083	-	79
법률구조	67,337	67,337	67,336	-	1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5,143	5,143	5,108	-	35
인권교육	191	191	173	-	18
아동인권 증진	245	245	240	-	5
국제인권역량강화	246	246	225	-	21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출입국관리>	162,914	162,802	160,610	-	2,192
이민정책개발지원	190	190	173	-	17
이민정책연구원운영	3,455	3,455	3,455	-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55,163	55,636	55,157	-	479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	9,849	9,849	9,534	-	315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0,410	30,410	30,383	-	27
외국인보호관리	21,372	21,428	21,278	-	150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7,639	17,033	16,380	-	65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10,927	10,927	10,652	-	275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13,909	13,874	13,601	-	273
<검찰활동>	294,858	460,436	442,132	65	18,239
검찰청시설운영	82,703	80,546	79,670	-	876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957	7,358	7,351	-	7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2,097	11,699	11,549	-	150
국제형사협력지원(ODA)	2,509	2,509	2,498	-	11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9,187	24,096	23,445	-	651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2,400	2,400	2,361	-	39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3,339	33,339	32,786	-	553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9,861	10,004	9,765	-	239
형사부 등 수사지원	47,838	85,128	80,983	65	4,081
공공수사	1,346	3,246	2,287	-	959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9,918	13,923	12,753	-	1,170
마약수사	7,823	9,523	8,878	-	645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2,760	3,672	3,332	-	340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4,858	6,033	5,738	-	295
공판활동지원	1,265	2,037	1,592	-	445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6,648	7,190	7,078	-	112
형사보상	42,000	127,454	127,454	-	-
형사법정비	349	227	218	-	9
안미영 특별검사	-	373	354	-	19
조은석 특별검사	-	10,407	6,573	-	3,834
민중기 특별검사	-	10,637	9,063	-	1,573
이명현 특별검사	-	7,372	5,459	-	1,913
안권섭 특별검사	-	1,263	943	-	320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국제법무활동>	6,117	9,155	9,045	23	88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516	516	503	-	13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734	734	683	23	28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50	174	152	-	22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4,717	7,731	7,706	-	25
<교정활동>	456,158	479,278	475,603	-	3,675
교도소행정지원	51,516	51,416	51,242	-	174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85,596	86,616	83,719	-	2,897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17,241	16,591	16,210	-	381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90,348	313,398	313,203	-	195
교정교화	11,457	11,257	11,228	-	29
<범죄예방활동>	171,584	171,204	169,176	-	2,028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17,373	17,293	16,891	-	402
재범 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기술 연구개발(R&D)	2,000	2,000	2,000	-	-
소년원생수용	26,971	26,971	26,733	-	238
청소년비행예방	5,577	5,527	5,408	-	119
갱생보호활동	46,856	46,856	46,856	-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2,581	12,581	12,357	-	224
보호관찰활동	17,102	17,164	16,905	-	259
전자감독	36,847	36,547	35,878	-	669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활동	6,277	6,265	6,149	-	116
<특별감찰관활동>	404	707	706	-	1
특별감찰활동	404	707	706	-	1
<법무교육훈련>	8,159	8,159	7,753	-	406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5,437	5,437	5,187	-	250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1,577	1,577	1,432	-	145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37	137	135	-	2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1,008	1,008	999	-	9
<법무및검찰행정지원>	96,662	99,837	96,850	-	2,987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608	608	542	-	66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피드백	120	120	104	-	16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20,107	20,107	18,030	-	2,077
정보기획지원	37	37	37	-	-
양성평등정책 지원	233	233	211	-	22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41,485	41,485	41,337	-	148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강화	811	811	775	-	36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2,803	2,803	2,691	-	11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0,751	20,751	20,662	-	89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4,141	7,316	7,114	-	202
법무부 기록관 운영	5,566	5,566	5,348	-	218

다. 예비비

예비비는 3,812억 6,2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그 전액이 배정되었으며, 배정액의 97.9%인 3,736억 200만원이 지출되었음.

예비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용은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에 3,481억 9,900만원, 특별검사 운영경비에 300억 5,200만원,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사업에 30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76억 6,000만원임.

<예비비 배정 및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지출결정액	배 정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025년	381,262	381,262	373,602	-	7,660
2024년	345	345	317	-	28
증감	380,917	380,917	373,285	-	7,632

2. 교도작업특별회계

가. 세　입

(1) 총　괄

2025년도 세입 예산액은 1,236억 8,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8억 5,300만원으로, 이 중 1,346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 8,6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5년	123,680	134,853	134,667	108.9	99.9	-	186
2024년	120,529	131,648	131,264	108.9	99.7	-	384
증감률	△0.8	5.7	5.7	-	-	-	19.0

(2) 세입내역

재산수입은 기타재산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이 수납되었음.

경상이전수입은 위약금 및 국고금 반환금 등으로서 2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9,300만원을 수납하였고 2,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교도작업제품 판매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717억 3,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15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 6,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관유물매각대는 건물매각대와 기계기구매각대 등으로, 10억 7,800만원이 수납되었음.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으로 2,200만원 수납되었음.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상반기 교도작업 운영자금에 사용되는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129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음.

정부내부수입은 세계잉여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488억 4,9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2025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 현황(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23,680	134,853	134,667	-	186
• 재산수입	-	2	2	-	-
• 경상이전수입	103	218	193	-	25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4,443	71,739	71,578	-	161
• 관유물매각대	-	1,078	1,078	-	-
• 전년도이월금	-	22	22	-	-
• 세계잉여금	9,388	12,945	12,945	-	-
• 정부내부수입	49,746	48,849	48,849	-	-

나. 세 출

(1) 총 괄

202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237억 200만원으로 97.3%인 1,203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는 교도작업제품 생산·공급, 작업장비 확충, 수형자 직업훈련비용 및 출소 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작업장려금 지급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인 33억 3,400만원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C/A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5년	123,680	123,702	120,368	97.3	97.3	-	3,334
2024년	120,529	121,218	118,297	98.1	97.6	22	2,899
증감률	2.6	2.0	1.8	-	-	-	15.0

지출액 1,203억 6,800만원의 성질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인건비 지출액은 8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액임.

물건비 지출액은 372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도작업 재료비 등의 지출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임.

이전지출액은 275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형자 작업장려금 지급액 등이 늘어났기 때문임.

자산취득 지출액은 546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 현황(성질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2025년	120,368	839	37,273	27,596	54,659
2024년	118,297	821	36,837	24,979	55,660
증감률	1.8	2.2	1.2	10.5	△1.8

2025년 세출예산 불용액은 33억 3,400만원으로 그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불용액 22억 8,700만원은 예산 대비 실제 예탁금의 차액임.

(2) 세출내역

(가) 교도작업(1535-300)

2025년도 교도작업 사업은 예산현액 624억 4,700만원의 99.0%인 61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교도작업 사업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등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62,105	-	-	2	340	62,447	61,834	-	613

(나) 직업훈련(1535-301)

2025년도 직업훈련 사업은 예산현액 45억 3,200만원의 99.3%인 4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직업훈련 사업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등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4,399	-	-	133	-	4,532	4,502	-	30

(다) 시설보완(1535-302)

2025년도 시설보완 사업은 예산현액 37억 8,400만원의 90.4%인 34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시설보완 사업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등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3,897	22	-	△135	-	3,784	3,421	-	363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가. 수 입

2025년도 수정수입계획액은 1,448억 7,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39억 2,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98억 1,300만원으로 전년보다 74억 100만원 증가하였음.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수입 계획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25년(B)	24년(C)				
합 계	144,877	153,923	149,813	142,412	103.4	105.2	18	4,092
자체수입	5,613	11,056	6,945	5,599	123.7	124.1	18	4,092
정부내부수입	88,762	88,762	88,762	86,121	100.0	103.1	-	-
여유자금회수	50,502	54,106	54,106	50,692	107.1	106.7	-	-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자체수입은 69억 4,5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0억 6,2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및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익금 19억 6,000만원, 구상금 18억 3,300만원 등임.

정부내부수입은 887억 6,2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벌금 수납액의 8%)임.

여유자금회수는 541억 600만원으로, 이는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20억원과 한국은행예치금회수 21억 600만원임.

미수납액은 40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이자 미반납액 등임.

나. 지 출

2025년도 수정지출계획액 및 지출계획현액은 1,448억 7,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98억 1,300만원으로 전년보다 74억 100만원 증가하였음.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지출계획액(A)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B/A	B/C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5년(B)	24년(C)				
합 계	144,877	144,877	149,813	142,412	103.4	105.2	-	4,370
사업비	94,545	94,545	90,189	85,717	95.4	105.2	-	4,356
기금운영비	48	48	34	48	71.6	72.3	-	14
정부내부지출	2,245	2,245	2,244	2,541	100.0	88.3	-	1
여유자금운용	48,039	48,039	57,345	54,106	119.4	106.0	-	-

지출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사업비 지출액은 901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7,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신변보호 강화 사업 등의 지출액 증가임.

기금운영비 3,400만원은 기금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고, 정부내부지출 22억 4,4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임.

여유자금운용 573억 4,500만원은 통화금융기관예치금 560억원과 한국은행예치금 13억 4,500만원임.

불용액은 43억 7,000만원으로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임.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 세 입 ◈

(1) 총 괄

▢ 결산 개요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의 대부분은 형사재판 등에 따른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56)’가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각종 출입국 관련 수수료 등을 포함한 ‘면허료 및 수수료(65)’와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액 등을 포함한 ‘기타경상이전수입(59)’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조 5,436억 8,300만원이고, 1조 4,985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조 4,818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7억 400만원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5					2026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액
○일반회계 세입 총계	1,543,683	1,498,539	1,481,834	16,704	1	1,548,832
・토지대여료 (51-511)	485	477	390	87	-	699
・건물대여료 (51-512)	613	528	489	39	-	703

목 명	2025					2026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13	13	12	1	-	17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264	1,039	1,032	7	-	1,106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51	105	105	-	-	61
・벌금 및 과료 (56-561)	1,337,329	1,254,163	1,253,989	174	-	1,337,329
・몰수금 및 추징금 (56-562)	123,093	141,748	141,748	-	-	130,898
・과태료 (56-563)	11,514	23,206	12,059	11,147	-	12,167
・징계부과금 (56-564)	31	1,108	35	1,073	-	39
・변상금 (57-571)	202	2,641	105	2,535	1	252
・위약금 (57-572)	1,826	678	677	1	-	1,296
・가산금 (58-581)	2	1,360	1	1,359	-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7,945	13,902	13,627	275	-	9,094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32,427	33,708	33,708	-	-	27,919
・기타잡수입 (69-691)	871	758	758	-	-	935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65-651)	26,880	22,909	22,909	-	-	26,162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69-691)	137	177	177	-	-	151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	15	15	-	-	-

▢ 과태료 등 장기 미수납 관련 대책마련 필요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18개의 과목별 수납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액 총 1조 4,985억 3,900만원 대비 98.9%에 해당하는 1조 4,818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개 세입과목에서 총 167억 400만원이 발생하였음.

미수납액의 발생은 국가의 징수결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거나 무자력으로 인해 징수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등의 경우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있음. 그러나 법무부의 미수납액 발생 과목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장기·과다 미수납에 기인한다는 문제가 있음.

세입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과태료(56-563)'는 2025년도에 232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52.0%에 불과한 120억 5,900만원을 수납하여 111억 4,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5년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음.[1)]

다음으로, '변상금(57-571)'은 징수결정액 26억 4,100만원 대비 4.0%에 불과한 1억 500만원만을 수납하였고 25억 3,500만원 규모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 또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수납액임.[2)]

---

1)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지명수배·환형유치 등이 불가능하고, 벌금·추징금과 달리 결정과 동시에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납제도가 없어 신속한 집행을 담보할 강제력 있는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임.

2) 변상금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거 검찰 추징금·벌금 수납 담당자의 수입금 횡령에 대한 변상금 부과금액(약 13억원) 및 그 친족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 금액(5

<미수납액 발생 주요 항목별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과태료	변상금	가산금	징계부과금	토지대여료
2021	징수결정액(A)	22,320	2,452	1,326	610	690
	수납액(B)	12,074	104	2	△88*	461
	B/A	54.1	4.2	0.2	△14.4	66.8
	미수납액	**10,246**	**2,287**	**1,238**	**698**	**229**
2022	징수결정액(A)	21,493	2,738	1,382	721	679
	수납액(B)	11,647	387	1	49	542
	B/A	54.2	14.1	0.1	6.8	79.8
	미수납액	**9,845**	**2,350**	**1,381**	**672**	**137**
2023	징수결정액(A)	21,904	2,524	1,331	686	662
	수납액(B)	11,915	114	2	6	477
	B/A	54.4	4.5	0.2	0.9	72.1
	미수납액	**9,989**	**2,405**	**1,293**	**680**	**137**
2024	징수결정액(A)	21,638	2,552	1,334	779	464
	수납액(B)	11,124	83	10	61	365
	B/A	51.4	3.3	0.7	7.8	78.7
	미수납액	**10,512**	**2,470**	**1,324**	**718**	**98**
2025	징수결정액(A)	23,206	2,641	1,360	1,108	477
	수납액(B)	12,059	105	0.5	35	390
	B/A	52.0	4.0	0.0	3.2	81.7
	미수납액	**11,147**	**2,535**	**1,359**	**1,073**	**87**

* 2019년 수납된 징계부과금의 환수결정에 따른 환급금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억원)이고, 그 외에는 모 공업사의 국유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약 4억원) 및 영치금 횡령에 따른 변상금(약 2억원) 등임.

특히, ‘가산금(58-581)’는 매년 13억원 이상을 징수결정하고 있음에도 수납액이 장기 미수납으로 인해 수납률이 1%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징계부과금(56-564)’도 매년 수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2025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2%인 3500만원에 불과하였음.

이들 장기 미수납액 대부분은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사망, 소송진행 중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임.

그러나 장기 미수납이 지속되는 경우 과태료, 변상금 및 징계부과금 등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불필요한 추가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법무부는 장기 미수납 해소를 위한 지속적 수납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음.

(2) 위약금(57-572) 및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결산 개요

‘위약금’은 「출입국관리법」[3]상 보호 일시해제 보증금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상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분 및 지체상금 등, 법령과 계약에 따라 국가가 수납하는 위약금 수입으로 구성됨.

---

3)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당초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18억 2,600만원이었으나, 6억 7,800만원만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0만원임.

〈위약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5								2026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위약금	1,826	1,826	-	1,826	678	677	1	-	1,296

한편,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법무부가 갱생보호활동 및 법률구조사업 등에 지원했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반납한 이자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당초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2억 6,400만원이었으나, 10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0만원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5								2026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재산 이자수입	264	264	-	264	1,039	1,032	7	-	1,106

▢ 세입추이를 고려하지 않는 관행적 예산액 산정 주의 필요

세입예산의 편성은 해당 세입항목과 관련한 법령·제도 변경 및 국내·외 제반 상황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세입 예상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57-572) 및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등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세입전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최근 수납액 평균”만을 근거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있음.

먼저 ‘위약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무부 위약금 세입의 대부분은 ‘보호 일시해제 보증금’[5]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6]의 국고귀속분으로 이루어짐. 이들 항목의 수납액은 여러 해외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국민의 입국까지 제한하여 국내에 강제퇴거·출국명령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음.

그러나 다음의 그림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된 2023년부터는 위 보증금의 국고귀속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도 크게 감소하여 각 보증금의 국고귀속액이 2021년~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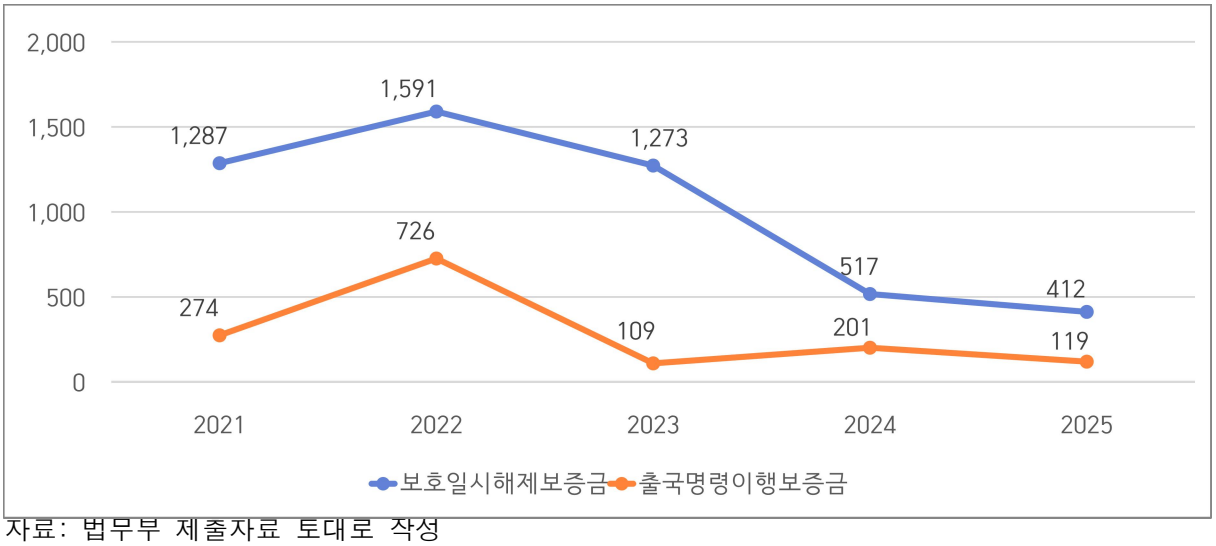
---

5)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하였으나 즉시 그 사람을 국외로 송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자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바, 이들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예치를 조건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음. 다만, 도주나 출석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음.

6)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조건을 붙이면서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바, 위 기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음.

〈최근 5년간 보호 일시해제 보증금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국고귀속 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토대로 작성

그럼에도 법무부는 2024년도 및 2025년도 위약금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 따른 보증금 국고귀속분의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안 산출근거를 "최근 3년간 수납실적 평균"으로만 설정하였음.

〈위약금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1	687	-	687	1,610	1,600	232.8	99.4	1	-
2022	687	-	687	2,384	2,383	346.9	99.9	1	-
2023	783	-	783	1,495	1,494	190.8	99.9	1	-
2024	1,541	-	1,541	767	766	49.7	99.9	1	-
2025	1,826	-	1,826	678	677	37.1	99.8	1	-

자료: 법무부

그로 인해 세입예산액을 오히려 전년 대비 증액하여 '과다'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24년도 및 2025년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각각 49.7%, 37.1%에 불과하였음.

이와 반대로,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세입예산액을 기계적으로 '과소' 편성한 문제가 있었는바, 이 역시도 법무부가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및 그 이후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고금리 상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보조사업의 수행을 마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7]에 따라 국고로 반납하여야 함. 법무부 소관의 기타재산이자수입 항목은 이러한 보조금 이자 반납액이 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수납실적은 자연히 국내 기준금리 수준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법무부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전보다 높은 기준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로 "최근 3년간 수납실적 평균"이라는 기준만을 관행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다음의 표와 같이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에 현격한 차이가 초래되었음.

---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재산이자수입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1	339	-	339	189	182	53.7	96.2	7	-
2022	319	-	319	147	140	43.9	95.2	7	-
2023	331	-	331	561	554	167.4	98.8	7	0.1
2024	331	-	331	1,113	1,106	334.2	99.4	7	-
2025	264	-	264	1,039	1,032	391.1	99.3	7	-

자료: 법무부

〈국내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이러한 격차는 지난 2023년도 및 2024년도 결산에서도 마찬가지였음. 법무부는 당시에도 고금리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세입예산액 편성으로 인하여 예산액 대비 각각 167.4%

및 334.2%에 이르는 금액을 수납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크게 확대된 것임.[8)]

이와 같이 부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예산액과 수납액 간 과도한 격차가 반복될 경우 세입 추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세입 규모를 왜곡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국내·외 제반 상황에 따른 실제 세입전망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수납실적에 기반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8) 반대로, 기준금리가 낮았던 지난 2021년도 및 2022년도에는 법무부의 기계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수납률이 오히려 예산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는바, 이러한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 격차는 사실상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다만, 법무부는 반복된 지적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에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세입예산액을 11억 600만원 규모로 증액하여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3)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5-651)

▢ 결산 개요

면허료 및 수수료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시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 등으로, 당초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268억 8,000만원이었으나, 229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5								2026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면허료 및수수료	26,880	26,880	-	26,880	22,909	22,909	-	-	26,162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입예산액 편성 필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 3만 5천원,[9]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 3만 5천원, 사실증명 1통당 2천원 등의 수수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음.[10]

2025년 동 수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268억 8,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29억 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9억 7,100만원이 과소 징수되어 전체 수납률은 8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5년 세입예산액 당시 편성근거로 수납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수수료 단가를 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2024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기존 대비 5천원씩 상승한 단가기준을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4년간 동 수입의 결산 내역에서는, 2023년 예산액 118억 5,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86억 5,200만원으로 68억 200만원 초과 징수되어 수납률이 157.4% 달하였고, 2024년에는 예산액 173억 3,8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91억 9,500만원으로 18억 5,700만원 초과 징수에 따라 수

---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개정2023. 6. 14.>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개정 2024. 12. 24.>

1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개정 2016. 9. 29.>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개정 2024. 12. 24.>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납률이 110.7%였던 상황에서, 2025년에는 수납률이 85.2% 수준에 머물러,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불일치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수입대체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예산액 편성근거 및 불일치 사유
2022	15,459	14,296	14,296	92.5	・**최근 3년('17~'19년) 수납액 평균**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수의 감소
2023	11,850	18,652	18,652	157.4	・**최근 3년('19~'21년) 수납액 평균**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에 따른 등록외국인 수 증가
2024	17,338	19,256	19,195	110.7	・**등록증 예상발급수량 602천매**×30,000원×0.96(수수료징수율) ・유학생 · 외국인력 등 등록외국인 수 증가
2025	**26,880**	**22,909**	**22,909**	**85.2**	・등록증 예상발급수량 **768천매**×35,000원(수수료 인상 고려, 30,000→ 35,000원) ・외국인력(E-9) 입국자 수 감소

불일치 원인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액 산정 당시에는 2017~2019년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발급 감소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2023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코로나19 발생 기간(2019~2021년)의 실적에 기반하여 예산액을 산정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물량・단가 기준을 보면,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단가를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상향시킴과 동시에 발급수량을 768,000매로 예상하여 총 26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실제 발급 수량은 678,179매로 편성 기준 대비 88.3% 수준에 불과하게 되어 예산액 대비 39억 7,100만원이 과소 징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7년간 외국인등록증 등 발급현황>

(단위: 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등록 외국인	신규	294,553	122,991	169,475	287,752	385,407	392,604	390,562
	재발급	131,870	133,910	117,284	124,484	148,484	177,735	202,073
거소신고 동포	신규	53,849	15,461	23,282	30,974	49,648	37,745	29,117
	재발급	23,021	58,026	61,690	64,300	54,913	58,419	54,942
합 계		**503,293**	**330,388**	**371,731**	**507,510**	**638,452**	**666,503**	**676,694**

이는 최근 6년간 등록증 발급실적 상 2024년 66.7만 매, 2023년 63.8만 매,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50.3만매 등으로 과거 70만매 이상 발급실적이 없는 상황 하에서, 특별히 발급의 폭증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세입안 편성을 768,000매로 과다 설정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면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것임.

비록 수입대체경비의 재원인 면허료 및 수수료 규모의 정확한 산정 및 예측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간에 나타난 편성방식에는 합리성이 결여된 요소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예산액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의 불일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가. 총괄 및 기획조정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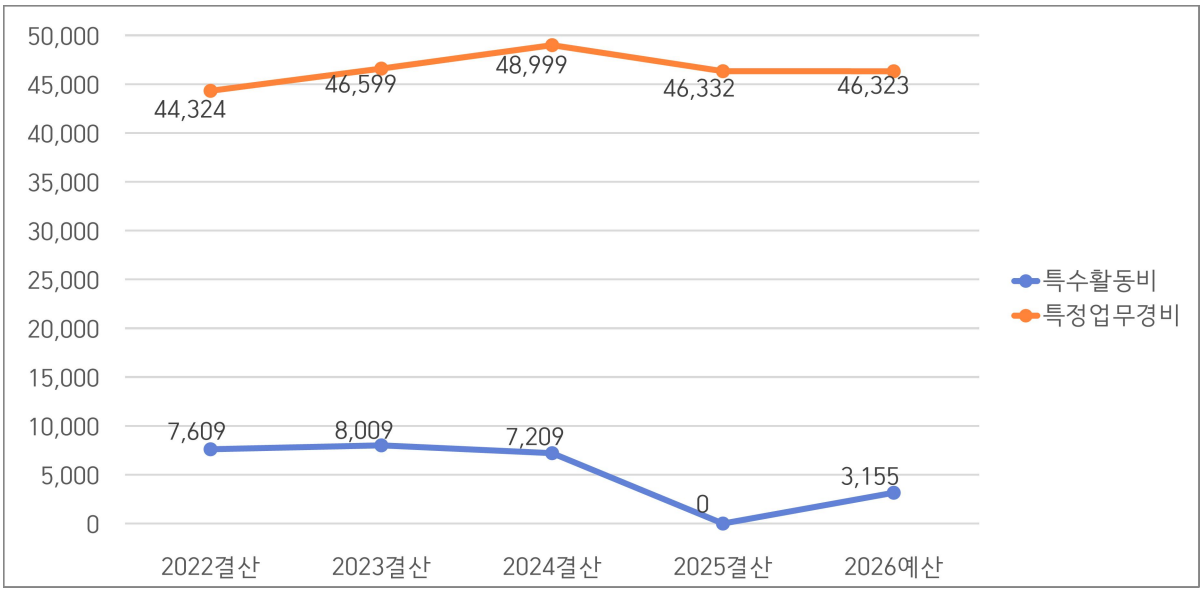
(1) 총　괄

▢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등 지속 점검 필요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예산에는 수사·공소유지·형집행 등 검찰기능 수행 전반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검찰국 소관 각 세부사업에 특수활동비(230) 총 40억 400만원, 특정업무경비(250-03) 총 506억 9,100만원이 각각 편성된 바 있음.

<최근 5년간 검찰 특정업무경비 · 특수활동비 규모>

(단위: 백만원)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특수활동비(230)'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목이고, '특정업무경비(250-03)'는 수사활동에 소요

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목으로, 지출행위의 성질[11] 및 기밀유지 필요성[12] 등에 따라 두 비목을 구분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임.

각각의 편성·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특수활동비는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그간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관행 및 그 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80억 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2025년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6개월분 총 40억 400만원이 복원된 것임.

<최근 5년간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 ·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전년 대비
	예산 (추경)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추경)	집행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536	536	536	536	482	482	241	-	338	97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22	122	122	122	110	110	55	-	44	△11
형사부 등 수사지원	4,674	4,674	5,074	5,074	4,567	4,567	2,283	-	2,067	△216
공공수사	356	356	356	356	320	320	160	-	64	△96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471	1,471	1,471	1,471	1,324	1,324	812	-	362	△450
마약수사	275	275	275	275	248	248	374	-	248	△126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75	175	175	175	158	158	79	-	32	△47
합 계	**7,609**	**7,609**	**8,009**	**8,009**	**7,209**	**7,209**	**4,004**	**-**	**3,155**	**△849**

자료: 법무부

11) 현금 지출 외 지출증빙서류 구비가 불가능·곤란한 성질

12) 관련 판례상 특수활동비는 일자·금액을, 특정업무경비는 일자·장소·금액을 공개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당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함께 채택되었는바, 이에 따라 검찰은 2025년도 특수활동비를 전액 불용처리하였음.

한편,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편성 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 72억 900만원 중 20억원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었고, 추가적으로 20억 5,400만원이 삭감되어 총 31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 대비 8억 4,900만원(21.2%) 감액된 규모로, 별도의 부대의견 채택은 없어 2026년도는 정상 집행 중에 있음.

다음으로, 특정업무경비 또한 지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2025년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 506억 9,100만원이 모두 복원되었음.

다만,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수사관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13] 이내 정액지급분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외에 부서 단위로 실소요에 맞추어 지급하는 경비는 별도의 소급 지급 없이 5월 이후로만 소요대로 지급하였음. 그 결과 2025년에는 총 463억 3,2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만을 집행하고, 43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13)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나,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지급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1. p.184

<최근 5년간 검찰 특정업무경비 편성·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전년 대비
	예산 (추경)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추경)	집행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89	89	89	89	89	89	153	100	138	△15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4,051	4,051	4,423	4,423	4,539	4,539	4,539	4,183	3,989	△550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58	58	76	76	88	88	88	88	-	△88
형사부 등 수사지원	32,767	32,767	33,768	33,768	34,533	34,533	35,543	33,912	33,321	△2,222
공공수사	1,512	1,512	1,512	1,512	1,578	1,578	1,740	866	1,474	△266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2,088	2,088	2,672	2,672	3,542	3,542	3,726	3,406	2,810	△916
마약수사	1,130	1,130	1,228	1,228	1,337	1,337	1,387	1,265	1,355	△32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626	626	720	720	720	720	942	661	848	△94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714	714	795	795	1,186	1,186	1,187	994	1,141	△46
공판활동지원	772	772	772	772	772	772	772	343	694	△78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517	517	543	543	614	614	614	514	553	△61
합 계	**44,324**	**44,324**	**46,599**	**46,599**	**48,999**	**48,999**	**50,691**	**46,332**	**46,323**	**△4,368**

자료: 법무부

한편,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도 지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전환되고

일부는 삭감되어 총 463억 2,300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음.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 대비 43억 6,800만원(8.6%) 감액된 규모임.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그간 편성·집행의 적정성 및 집행내역 공개범위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하라'는 취지로 시정요구(시정·주의)를 채택하기도 하였음.[14)]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편성 규모를 필수 불가결한 범위로만 한정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에도 실제 예산 소요 검토 및 집행실태 점검 등을 토대로 그 적정성 여부를 지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14) 아울러, 검찰이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 등 성격으로 집행해 온 관행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맞게 집행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시정)도 함께 채택하였음.

▢ 국회 심의 없는 검사 직책수행경비 지급구간 신설 주의 필요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직책수행경비(250-02) 예산액은 190억 3,900만원이고, 예비비 4억 5,000만원 및 이·전용 6억 6,200만원(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1억 1,270만원이며, 이 중 188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 법무부(소속기관 포함) 직책수행경비(250-02)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직책수행경비(250-02)	19,039	-	△362	450	19,127	18,872	-	255	19,040
·본부	**981**	**-**	**46**	**-**	**1,027**	**1,021.3**	**-**	**5.7**	**981**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7011-200)	979	-	46	-	1,025	1,021	-	4	979
- 기획조정실 등	979	-	46	-	1,025	254	-	4	979
- 법무실						199			
- 인권국						79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79			
- 검찰국						183			
- 국제법무국						82			
- 교정본부						90			
- 범죄예방정책국						55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2	-	-	-	2	0.3	-	1.7	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7038-300)	2	-	-	-	2	0.3	-	1.7	2
·출입국 소속기관	**322**	**-**	**4**	**-**	**326**	**326**	**-**	**0**	**322**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0)	322	-	4	-	326	326	-	0	322
·검찰 소속기관	**15,572**	**-**	**△400**	**-**	**15,172**	**15,166**	**-**	**5**	**15,572**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2)	15,572	-	△400	-	15,172	15,166	-	5	15,572
• 교정본부 소속기관	**1,193**	**-**	**-**	**-**	**1,193**	**1,164**	**-**	**29**	**1,194**
교도소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6)	1,193	-	-	-	1,193	1,164	-	29	1,194
• 범정국 소속기관	**671**	**-**	**-**	**-**	**671**	**619**	**-**	**52**	**671**
소년원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7)	220	-	-	-	220	201	-	19	220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8)	77	-	-	-	77	67	-	10	77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7018-209)	374	-	-	-	374	351	-	23	374
• 법무연수원	**285**	**-**	**-**	**-**	**285**	**263**	**-**	**23**	**285**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7018-204)	285	-	-	-	285	263	-	23	285
• 특별감찰관	**15**	**-**	**△13**	**-**	**2**	**2**	**-**	**0**	**15**
특별감찰관 기본경비(1818-250)	15	-	△13	-	2	2	-	0	15
• 특별검사	**-**	**-**	**-**	**450**	**450**	**311**	**-**	**138**	**-**
안미영 특별검사(1339-308)	-	-	-	14	14	14	-	-	-
조은석 특별검사(1339-309)	-	-	-	168	168	64	-	104	-
민중기 특별검사(1339-310)	-	-	-	153	153	143	-	10	-
이명현 특별검사(1339-311)	-	-	-	105	105	82	-	23	-
안권섭 특별검사(1339-312)	-	-	-	9	9	8	-	1	-

자료: 법무부

기획예산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는 정부조직법 또는 직제에 정해진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공무원에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며[1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직위별 지급단가가 명시되어 있음. 이 지급단가에 표기되지 않은 직책수행경비는 2025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하되,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

유 형	기준액	비 고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750	※ 갑·을 구분 기준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보조기관	700	•갑 : 현원 6명이상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기관장	650	•을 : 현원 5명이하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갑"	60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을"	550	
•복수직 3급 "갑"	500	
•복수직 3급 "을"	450	
•4급 기관장	400	
•4급 보조기관 "갑"	350	
•4급 보조기관 "을"	300	
•4급 복수직	150	
•5급 기관장	150	
•5급 보조기관	80	
•6·7급 기관장	80	
•6·7급 보조기관	50	

※ 상기 지급단가란에 표기되지 않은 직책수행경비는 2025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한다. 다만,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검사의 직책수행경비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에 계상한 내역대로 집행해왔으나,

1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2 직책수행경비(250-02목)
직책수행경비는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2025년에는 예산편성 시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사업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검사(10년이상)', '검사(10년이하)' 세 구간으로 나누어 계상한 것을, 실제로는 '검사(15년이상)' 지급구간을 신설하여 네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실제집행내역 비교>

①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7011-200]

(단위: 명, 천원)

2025년 예산편성내역			2025년 실제집행내역		
			지급 인원 수	지급단가	연간지급금액
1. 월정직책급		978,720	156	-	1,021,297
가. 일반직		509,700	102	-	469,500
1) 국무위원	1명*2,475,000원*12월=	29,700	1	2,475	29,700
2) 차관	1명*1,350,000원*12월=	16,200	1	1,350	16,200
3) 1급 보조기관	2명*1,050,000원*12월=	25,200	2	1,050	25,200
4) 2,3급 보조기관(갑)	13명*900,000원*12월=	140,400	9	900	97,200
5) 복수직 3급	11명*500,000원*12월=	66,000	13	500	78,000
6) 4급 갑	34명*350,000원*12월=	142,800	36	350	151,200
7) 복수직 4급	46명*150,000원*12월=	82,800	39	150	70,200
8) 예비군 중대장	1명*150,000원*12월=	1,800	1	150	1,800
9) 4급 기관장	1명*400,000원*12월=	4,800	-	400	0
나. 검사		469,020	54	-	519,520
1)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4명*1,125,000원*12월=	54,000	3	1,125	40,500
2) 15년이상 검사	-	-	19	820	186,960
3) 검사(10년이상)	43명*795,000원*12월=	410,220	29	795	276,660
4) 검사(10년이하)	1명*400,000원*12월=	4,800	3	400	14,400
다. 조정	-	-	-		33,277

자료: 법무부

②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단위: 명, 천원)

2025년 예산편성내역			2025년 실제집행내역		
			지급 인원 수	지급단가(평균)	지급금액
1.직책수행경비		14,991,622	2,220	564	15,030,536
가.검사(2292명), 검사직무대리(120명)		14,104,977	1,930	606	14,036,554
1)검찰총장	1명*1,537,500원*12월=	18,450	1	897	10,763
2)대검차장	1명*1,125,000원*12월=	13,500	3	449	16,155
3)고등검사장	6명*1,125,000원*12월=	81,000	6	1,036	74,560
4)검사장(대검검사급)	32명*1,125,000원*12월=	432,000	33	1,053	416,973
5)15년이상 검사	-	-	585	820	5,634,175
6)10년이상 검사	1,026명*795,000원*12월*0.83=	8,124,073	430	767	3,958,832
7)10년미만 검사	1,226명*400,000원*12월*0.82=	4,825,536	773	372	3,455,207
8)검사직무대리	120명*400,000원*12월=	576,000	98	400	469,889
9)부족분	34,418,000원=	34,418	-	-	-
나.일반직(253명,보조기관)		886,645	290	286	993,982
1)1급(갑)	1명*795,000원*12월*0.98=	9,349	1	597	7,163
2)2,3급(갑)	24명*680,000원*12월*0.98=	191,923	26	651	203,162
3)3급복수직(갑)	16명*500,000원*12월*0.98=	94,080	17	494	100,829
4)4급(갑)	114명*350,000원*12월*0.98=	469,224	137	342	562,264
5)4급(을)	1명*300,000원*12월*0.98=	3,528	5	263	15,752
6)4급(기타)	32명*150,000원*12월*0.98=	56,448	22	150	39,690
7)5급	66명*80,000원*12월*0.98=	62,093	83	65	65,122
2.부족분	579,947,000원=	579,947	-	-	135,554

자료: 법무부

③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 [7018-204]

(단위: 명, 천원)

2025년 예산편성내역			2025년 실제집행내역		
			지급 인원 수	지급단가	연간지급금액
1. 월정직책급		285,400	334	-	262,637
가.고등검사장	1명*1,125,000원*12월=	13,500	1	1,125	7,875
검사장(대검차장급)	-		5	1,125	66,375
나.검사장	6명*900,000원*12월=	64,800			
15년이상검사	-		10	820	97,580
다. 검사(10년이상)	16명*795,000원*12월=	152,640	4	795	35,775
라.2.3급보조기관	3명*900,000원*12월=	32,400	3	900	34,200
마.4급보조기관(갑)	5명*350,000원*12월=	21,000	5	350	18,900
바.4급 복수직	1명*150,000원*12월=	1,800	1	150	1,800
사.조정	-740,000원=	-740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검사(15년이상)’ 지급구간을 신설하여 근무기간 15년이상 검사에게는 10년이상 검사보다 직책수행경비를 월 25,000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예산액 대비 추가지출금액은 총 1억 8,375만원임.

<2025년도 법무부 직책수행경비 추가지급내역>

(단위 : 명, 원)

구분	검사 (10년이상) 지급단가 [A]	신설된 검사 (15년이상) 지급단가 [B]	지급단가 차이 [C=B-A]	지급 연인원 [D]	추가 지급금액 [C*D]
본부	795,000	820,000	25,000	211	5,275,000
- 기획조정실 등	795,000	820,000	25,000	26	650,000
- 법무실	795,000	820,000	25,000	86	2,150,000
- 인권국	795,000	820,000	25,000	-	-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795,000	820,000	25,000	-	-
- 검찰국	795,000	820,000	25,000	61	1,525,000
- 국제법무국	795,000	820,000	25,000	33	825,000
- 교정본부	795,000	820,000	25,000	-	-
- 범죄예방정책국	795,000	820,000	25,000	-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795,000	820,000	25,000	5	125,000
검찰 소속기관	795,000	820,000	25,000	7,020	175,500,000
교정본부 소속기관	-	-	-	-	-
범정국 소속기관	-	-	-	-	-
법무연수원	795,000	820,000	25,000	119	2,975,000
특별감찰관	-	-	-	-	-
특별검사	-	-	-	-	-
총계				7,350	183,750,000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법관의 직책수행경비 지급 구간 신설(법관 15년 이상)이 선행되었고, 2025년도 예산 확정 이후 당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그동안 법관과 검사의 직책수행경비 단가가 동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15년 이상)' 지급구간을 신설하도록 「법무부 예산집행 유의사항」(법무부 내부 집행기준)을 수정한 후 추가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법무부 예산집행 유의사항」 직책수행경비 지급기준〉

지급대상	월 지급액(단위: 천원)
검찰총장	1,537.5
대검 차장, 고등검사장	1,125
대검 검사급 검사	1,125
15년 이상 검사	**820**
10년 이상 검사	795
10년 미만 검사 및 검사직무대리	400
고공단 (가 등급)	795
고공단 (나 등급)	680
일반직 3급	500
일반직 4급(직제상 정원 6인 이상)	350
일반직 4급(직제상 정원 5인 이하)	300
일반직 4급 복수직	150
일반직 5급	80

자료: 법무부

그러나 국회에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당시 15년이상 검사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지급구간 신설 내용이 없었음에도 예산 확정 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직책수행경비를 추가 지급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만약 이러한 법무부의 사례가 향후 정당한 선례로 작용한다면 다른 부처에서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확정 후 직책수행경비 단가를 인상하거나 특정 구간을 신설하는 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특히, 국회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직책수행경비를 국회가 확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16]을 채택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예산전용을 통해 15년이상 검사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국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17]

따라서 법무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직책수행경비 지급구간 신설이나 단가 인상 등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6) (32)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직책수행경비를 국회가 확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7) 또한 기존 「법무부 예산집행 유의사항」에 따른 10년이상 검사의 직책수행경비 월 79만 5천원은 법무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급의 직책수행경비와 동일한 단가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법무부가 15년이상 검사에게 월 82만원을 지급하도록 직책수행경비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과의 차이 문제뿐 아니라,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행정부 소속 1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급 직책수행경비 지급 기준단가인 월 70만원(보조기관) 또는 75만원(중앙기관장)과의 격차가 더욱 커진 상황임.

▢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예산의 편성·집행에 통일성 확보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법 등에서는 사업주나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험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전·보건 관련 의무 규정(요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법무부 및 소속기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비목의 적합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확인되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법무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위탁 업체를 통해 실시한 각종 안전·보건관리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국과 운영지원과는 일반용역비(210-14), 법무연수원과 범죄예방정책국은 일반수용비(210-01), 교정본부는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210-09)를 통해 집행하는 등 실·국별 비목이 각각 다르게 집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2025년 법무부가 집행한 안전보건 업무 위탁비 내역>

(단위:백만원)

실국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비목	예산액	집행액	수탁업체
검찰국	검찰청 시설운영 (1333-300)	검찰청사 유지보수 등 관리	**일반용역비 (210-14)**	237	353.2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631-304)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비	**일반수용비 (210-01)**	224	75	㈜서동건축사사무소앤안전진단 등
교정본부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 (1531-302)	교정시설 유지보수	**일반수용비 (210-01)**	1,327	1,088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3,011	1,270	

실국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비목	예산액	집행액	수탁업체
운영지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해 보건관리자 배치	**일반용역비 (210-14)**	17	21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등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7018-254)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10	10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이와 같은 현상은 기재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일반수용비(210-01)는 업무대행수수료로, 일반용역비(210-14)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다르게 해석·적용하거나, 재원의 여유가 있는 비목에서 관례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해됨.

이처럼 법령상 규정된 직원의 안전·보건상 위험 방지 위탁이라는 공통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무부 내에서 실·국별로 각각의 다른 비목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비목의 적합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법무부는 실국내 관련 예산을 조사하여 만약 위탁 성격의 업무대행을 통하는 것이라면 일반용역비(210-14)로, 반대로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차원이라면 일반수용비(210-01)[18]

18) 일반수용비를 활용하는 경우 위탁수행이 아닌 직접 사업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사고 발

로 집행하는 등 지침 준수 및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19].

생 등의 관리 책임에 대해 해당 실·국이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될 것임.

19)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건물 및 건축설비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정 시설 장비에 대하여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이므로, 이와 직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 장기 위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에 해당됨. 또한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등 기관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게 대행시키는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가 포함되는 것이라면 관리용역비(210-15)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임.

▢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변호사법」 제21조의2[20]에 따르면, 변호사가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받아야 함.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실무수습 대상인 변호사는 연간 2,100명 수준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인원도 연간 400명 이상임. 마찬가지로, 법무부와 검찰청 등 소속기관에서도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를 60명 내외로 채용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20)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최근 10개년 변호사 실무수습 기관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실무수습 기관						계
	국회, 법원, 헌재,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국가기관, 지자체, 그 밖의 법인 등	국제기구, 국제법인 등	대한변호사협회	
2016	82	40	990	214	1	441	1,768
2017	95	38	1,004	209	–	496	1,842
2018	112	62	1,086	243	–	495	1,998
2019	76	54	1,136	236	1	620	2,123
2020	85	56	1,216	216	–	686	2,259
2021	88	30	1,391	335	–	248	2,092
2022	109	28	1,284	335	–	274	2,030
2023	137	21	1,173	318	–	410	2,059
2024	140	20	1,199	302	–	442	2,103
2025	**138**	**14**	**1,158**	**284**	**–**	**558**	**2,152**

주: 각 기관별 실무수습 완료(종료) 기준으로, 여러 기관에서 수습을 마친 경우 중복 집계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및 각 소속기관에서 채용하는 실무수습 변호사는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소송지원, 법률자문, 소관 법령해석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무부 전체적으로 약 13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결산 결과,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액 12억 7,2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사업에 전용(2억 9,600만원)하거나 불용(3억 400만원)함에 따라 실제 집행액이 총 6억 7,200만원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무수습 변호사 관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 기관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합 계	1,272	-	△296	-	976	672	-	304	1,272
법무실	**507**	**-**	**-**	**-**	**507**	**308**	**-**	**199**	**507**
인권국	**63**	**-**	**-**	**-**	**63**	**3**	**-**	**60**	**63**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32	-	-	-	32	32	-	-	32
검찰청	**552**	**-**	**△286**	**-**	**266**	**244**	**-**	**22**	**552**
검찰국	48	-	△10	-	38	37	-	1	48
국제법무국	54	-	-	-	54	48	-	6	54
교정본부	-	-	-	-	-	-	-	-	-
범죄예방정책국	**16**	**-**	**-**	**-**	**16**	**-**	**-**	**16**	**16**

자료: 법무부

2025년도 채용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법무부는 당초 총 80명의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59명만을 채용하는 데 그쳤는바, 이는 법무실 및 검찰청 등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임.

〈부서 · 기관별 실무수습 변호사 최근 5년간 채용실적〉

(단위: 명)

부서 · 기관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합 계	41	41	72	57	74	60	86	62	80	59
법무실	**29**	**28**	**31**	**29**	**31**	**30**	**32**	**32**	**32**	**26**
인권국	**5**	**6**	**5**	**4**	**5**	**4**	**4**	**2**	**4**	**1**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3	2	2	3	3	5	5	2	2	2
검찰청	**–**	**–**	**29**	**18**	**29**	**18**	**35**	**19**	**35**	**24**
검찰국	3	4	3	3	3	3	3	3	3	3
국제법무국	–	–	–	–	–	–	3	3	3	3
교정본부	–	–	–	–	2	–	3	1	–	–
범죄예방정책국	**1**	**1**	**2**	**–**	**1**	**–**	**1**	**–**	**1**	**–**

자료: 법무부

부서·기관별 세부 실적을 보면, 다른 곳들은 당초 계획을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법무실은 32명 채용을 계획하였음에도 실제 26명만을 채용하는 데 그쳤고, 검찰청도 당초 35명 채용을 계획하였음에도 실제 채용은 24명에 불과하였음. 또한, 인권국은 4명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1명만을 채용하였고, 범죄예방정책국은 매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1년도 외에는 전혀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검찰청 등의 채용실적 부진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임. 법무부는 지난 2021년경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정원 제한 등으로 실무수습

기회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21] 2022년부터 검찰청에서도 실무수습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채용 규모를 확대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검찰청 등의 채용실적이 지속적으로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이는 민간 법무법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습에 비하여 근무여건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 등에서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경험을 쌓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지원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과거의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확대한 채용계획을 실제 수요에 맞지 않게 지속 유지하면서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다른 사업으로의 예산 이·전용 및 불용 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향후 법무부는 실무수습 변호사의 채용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21) 한겨레, “변협의 느닷없는 진입장벽…신입 500명 ‘실무연수 대란’ 아우성”, 2021. 4. 28. 등

(2)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7034-500)

▢ 결산 개요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는 법무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및 내부포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보호관찰·소년보호·출입국 관련 시스템과 범죄예방·교정 등 정보시스템 및 기타 정보화 기반 등을 운영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414억 8,500만원이고, 이 중 413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행정정보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41,485	41,485	-	-	-	41,485	41,337	-	148	44,554
·법무정보·사이버 보안시스템 운영	6,370	6,370	-	△127	-	6,243	6,243	-	-	5,947
·범죄예방정보 시스템 운영	1,931	1,931	-	△59	-	1,872	1,868	-	4	2,032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6,026	6,026	-	△74	-	5,952	5,936	-	16	4,489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16,784	16,784	-	△197	-	16,587	16,483	-	104	16,711
·정보화사업 (ISP포함)	10,374	10,374	-	457	-	10,831	10,807	-	24	15,375

▢ 윈도우11 전환사업 점검 및 문제 재발 방지 필요

법무부는 2025년 4월 국정원으로부터 윈도우10 기술 중단 관련 대책을 통보받고 윈도우11 전환사업을 준비하여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같은 해 8월에 전환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 전환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그런데, 다음과 같이 윈도우11 전환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법무부는 윈도우11 전환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22]에서 전환사업 필요예산 4억 9,900만원 중 부족 예산 4억 5,700만원을 세부사업 내 다른 예산의 전용을 통해 마련한 문제가 있음.

전용액 4억 5,700만원은 관리용역비(210-15)에서 2억 4,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서 1억 7,200만원, 임차료(210-07)에서 2,500만원을 각각 전용 감액한 것인데,

이는 법무정보 사이버보안 시스템 운영 및 범죄예방·교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은 본래 목적의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대다수의 내역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 연중(8월)에 예산을 전용 감액하여 축소시킨 것이므

22)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수명 주기 정책에 따라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대해 2021년 6월 최초 예고하고, 최종버전 확정발표는 2023년 4월에 한 바 있음.(https://learn.microsoft.com/ko-kr/lifecycle/announcements/windows-10-22h2-end-of-support-update)

로 전용 시기에 문제가 있고, 아울러 전용 감액된 내역사업비들이 당초 과다 계상되어 여유재원으로 활용가능한 것은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윈도우11 전환사업을 위한 전용 발생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무정보 · 사이버보안 시스템운영	6,370	6,370	△127	6,243	6,243	-
-임차료(210-07)	684	684	△5	679	679	-
-관리용역비(210-15)	5,686	5,686	△122	5,564	5,564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운영	1,931	1,931	△59	1,872	1,868	4
-관리용역비(210-15)	1,931	1,931	△59	1,872	1,868	4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6,026	6,026	△74	5,952	5,936	16
-임차료(210-07)	2,249	2,249	△6	2,243	2,243	-
-관리용역비(210-15)	3,777	3,777	△68	3,709	3,693	16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16,784	16,784	△197	16,587	16,483	104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29	5,829	△172	5,657	5,637	20
-임차료(210-07)	5,389	5,389	△25	5,364	5,338	26
-일반연구비(260-01)	4,419	4,419	**457**	4,876	4,857	19

다음으로, 윈도우11 전환사업에 일반연구비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비목 집행이라고 할 것임.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는 기재부 지침에 따를 경우 자산취득

비(430-01)를 통해 구입·설치하거나 시설장비유지비(210-09) 또는 관리용역비(210-15)를 통한 대행으로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23], 법무부는 앞선 표에서 본 바와 같이 타 내역사업비 전용 감액으로 마련한 예산을 지식기반 업무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목적에 집행가능한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 증액하여 윈도우11 전환사업을 추진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전환사업이 단순한 윈도우11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소속기관에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고유 장비(여권판독, 지문인식)의 프로그램 재설치, 호환성 검증 및 환경설정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일반연구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동 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24]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MS 오피스 등 정품인증, 주변기기·업무 프로그램 설치 및 정상 작동 테스트가 명시되어 있을 뿐, 일반연구비(260-01) 용도로 집행할 수 있는 전산개발이나 조사·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해당 사업은 윈도우 프로그램 단순 설치 및 프린트 등 부속장치의 호환성 테스트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을 부적절한 비목으로 추진한 것임.

---

2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430-01)는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고,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집행가능하며,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음.

24) 「사업수행계획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1 전환 사업」, ○○○○○ 컨소시엄, 2025.09.01

<2025년 윈도우11 전환사업 사업계획서 중 “사업 내용” 상세>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PC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Win10 → Win11)
❑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대상 PC 마스터 이미지 제작/제공
❑ 윈도우 및 MS 오피스 등 정품인증 진행
❑ 주변기기/업무 프로그램 설치 및 정상 작동 테스트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윈도우11 전환사업과 관련해 비목적합성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3)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7038-301)

▢ 결산 개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은 2024년 구축이 완료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HW·SW, 네트워크, 연계시스템, 보안,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운영·관리하는 등의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07억 5,100만원이며, 이 중 206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0,751	20,751	-	-	-	20,751	20,662	-	89	47,917
· 시스템 운영 유지 · 관리	20,580	20,580	-	△300	-	20,280	20,273	-	7	27,480
· 조달수수료	171	171	-	-	-	171	90	-	81	241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ISMP	**-**	**-**	**-**	**300**	**-**	**300**	**299**	**-**	**1**	**-**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	-	-	-	-	-	-	-	-	19,046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감리	-	-	-	-	-	-	-	-	-	687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PMO	-	-	-	-	-	-	-	-	-	463

▢ 국회 미심사 신규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 전용 주의 필요

법무부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에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25]) 수립에 3억원을 집행하였음.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26]에 근거하여 2026년 9월부터 각종 영장을 전자적 전송 방법 등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오프라인 서면으로 처리하던 통신·금융영장 등의 집행을 전자문서 송수신 방식의 온라인 처리로 전환하기 위해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임.

다만,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위 시스템 구축 및 ISMP 수립예산 반영 등과 관련

---

25) ISMP(Information Strategy Master Plan)는 정보화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구축 범위, 추진방식,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설계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절차임.

2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다음부터 "영장등"이라 한다)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각 호 생략)
② 전자문서로 발부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장등이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장등을 전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전송은 그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그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영장등을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③ 제2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장등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암호화 조치를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용 프로그램 내에서 제16조제4항제3호의 정보가 동일한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전용 프로그램에는 원본 형태의 출력을 방지하고 집행 완료 이후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영장등이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달리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음. 그럼에도 법무부는 차세대 KICS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편성된 관리용역비(210-15) 3억원을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없던 ISMP 수립용역에 집행한 것임.

<2025년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4.27.)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7038-301)	210-15	300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7038-301)	260-01	법 제정에 의거한 시스템(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필요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후 관리용역비를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사업 추진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6년 9월 전자영장 집행 시행에 맞추어 2026년도부터 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ISMP를 먼저 수립해야 했으나,[27]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심의 당시 차세대 KICS 안정화 대응, 관련 예산확보 주체 결정, 기관 간 의견 조율절차, 시스템 구축 방향 관련 다각적 논의, 관련 근거 미흡[28] 등 상황으로 인하여 ISMP 수립 예산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승

27)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p.45

2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전자영장 집행 관련 규정이 2024년 10월에 마련되었음.

인을 거쳐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29]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부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ISMP 수립을 위해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특히, ISMP의 수립은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편성을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로서, 일단 ISMP 수립이 완료되면 해당 시스템의 필요성, 구축 범위, 소요예산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예정된 수순처럼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심사하지 않은 ISMP 수립에 다른 예

---

29)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될 수 있는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인 검토 및 심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당초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아 국회 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위하여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집행하는 것을 엄격히 지양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시에는 ISMP 수립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및 총 소요경비 등을 국회에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4)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 결산 개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7037-300)은 법무부가 시행 중인 각종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8억 1,100만원이고, 이 중 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811	-	-	-	811	775	-	36	848
• 홍보사업비	383	-	-	-	383	374	-	-	383
• 근로자 인건비	379	-	-	-	379	343	-	36	413
• 홍보업무 운영비	49	-	-	-	49	49	-	-	52

□ 드론 보험료 집행과목 부적절

법무부는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영상 촬영용 드론을 구입하였고,[30] 드론 영상 촬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드론 드론 기기 파손, 드론 추락에 의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고자 드론 보

30) 구입단가 279만원, 내용연수 4년.

험에 가입하였음.[31]

그런데 법무부는 2021년 이후 매년 드론 보험에 가입하면서 드론 보험료를 공공요금및제세(210-02) 과목이 아닌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여 왔음.

〈 드론 보험료 지급내역 〉

(단위: 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2021	일반수용비(210-01)	440,000	440,000
2022	일반수용비(210-01)	487,000	487,000
2023	드론 촬영 예정이 없어 보험 미가입		
2024	일반수용비(210-01)	440,000	440,000
2025	일반수용비(210-01)	404,000	404,000

자료: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로 드론 보험료를 집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의 예산에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31) 공공기관의 경우는 드론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음

「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1-1. 일반수용비(210-01목)
가. ~ 마. (생 략)
바. 자산취득비, 공사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용역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 타. (생 략)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목)
1. ~ 2. (생 략)
3. 기 타

-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 계상

- 에너지·물 등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또는 과징금

그러나 2021년 드론을 구입한 후 드론 사용계획이 없던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드론 보험료를 집행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론 보험료 지급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계상하거나, 드론 보험료 지급 전에 일반수용비 예산의 일부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목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따라서 법무부는 드론 보험료 집행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계상하거나 세목조정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법무실

(1)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1031-300)

▢ 결산 개요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은 국가·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운영 및 유지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공익법무관을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액은 29억 6,100만원이고 2억 1,500만원이 전용 등으로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7억 4,600만원인데, 이 중 26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700만원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2,961	2,961	-	△215		2,746	2,689	-	57	2,543
• 소송 및 자문예산	700	700	-	△208	-	492	492	-	-	700
• NDSL 운영경비	1,676	1,676	-	-	-	1,676	1,660	-	16	1,248
• 송무관련 운영경비	585	585	-	△7	-	578	536	-	41	595

▢ 공익법무관의 충원율 제고 및 배치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장관이 임용하여 법률구조업무[32]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33]에 종사하는 임기제공무원[34]으로서, 「병역법」[35] 및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을 대체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검찰청 등에 총 195명이 배치되어 있음.

<공익법무관 배치 현황>

(단위: 명, 2026. 5. 기준)

구분	법무부	검찰청	소송수행청*	법률구조공단	기타	총계
배치인원	90	43	30	32	0	195

* 소송수행청 : 법무부 국가소송과 소속으로 각 소송수행청에서 파견 근무

자료: 법무부

32)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3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34)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5)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7) 공익법무관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등 공적 목적이 강한 공익법무관의 업무 특성상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익법무관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최근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필요인원 대비 충원인원의 비율인 충원율이 최근 5년 간 매년 70% 미만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실제로, 2017년도 공익법무관 전체인원은 583명이었으나 2022년 142명, 2023년 122명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24년 131명, 2025년 171명, 2026년 5월 기준 19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충원율은 2017년 92.7%에서 2022년 28%로 크게 하락한 이후, 2023년 40%, 2024년과 2025년 68%, 2026년 5월 기준 64%으로 여전히 70% 미만을 기록하고 있음.

〈2017년 및 최근 5년 간 공익법무관 업무별 배치현황 및 충원율〉

(단위: 명, %)

구 분		2017	2022	2023	2024	2025	2026.5
전체인원		583	142	122	131	171	195
업무	법률구조	255	31	20	21	31	32
	국가송무	328	111	102	110	140	163
충원율	필요인원(A)	192	100	100	100	100	100
	충원인원(B)	178	28	40	68	68	64
	충원율(B/A)	92.7	0.28	0.4	0.68	0.68	0.64

자료: 법무부

공익법무관 충원율 저조의 원인에 대해 법무부는 병역 미필 졸업자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우나, 국방부와 미

필 인력자원 배분 관련 정례협의를 하기로 하는 등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와 함께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수의 감소추세에 따른 국가기관의 소송수행·법률구조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서 최장 6개월의 근무기간으로 채용함에 따라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국가기관에서 소송수행이나 법률구조 업무를 밀도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2025년 법무실 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실제 근무기간별 인원 〉

(단위: 명)

3개월 미만	3개월~5개월	6개월 이하	총 인원
5	18	3	26

자료: 법무부

또한, 현재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익법무관을 그 주된 업무[36]라 할 수 있는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송무업무

36)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를 수행하게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수행청에 주로 배치하기보다, 법령검토나 법률자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법무부에 다수 배치(2026년 5월 기준 총원 195명 중 90명, 약 46.2%)하였음.

〈최근 5년 간 공익법무관 배치기관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5.
법률구조	법무부	4	–	–	–	–
	대한법률구조공단	24	20	21	31	32
	기타	3	–	–	–	–
	소 계	31	20	21	31	32
국가송무	법무부	73	64	68	84	90
	검찰청	29	27	29	38	43
	소송수행청	9	11	13	18	30
	소 계	111	102	110	140	163
합 계		142	122	131	171	195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충원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익법무관 감소 추세에 따라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무관 배치기관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각급 기관”이란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기업환경지수개선 사업(1032-307)

▢ 결산 개요

‘기업환경지수개선’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및 국제콘퍼런스 개최,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실시,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중 내역사업인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여 국제중재센터 전문인력 확보, 국제중재 전문인력 양성, 한국 국제중재 홍보, 국제중재선터 설명회·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는 것임.

기업환경지수개선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액은 26억 5,300만원이고 이중 26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만원임. 또한 내역사업인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는 예산액 24억원 전액이 대한상사중재원에 교부되었으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중재전문인력 채용 차질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 24억원 중 20억 800만원이 실집행되고 3억 9,200만원은 불용되어 국고에 반납되었음.

〈 기업환경지수개선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업환경지수개선	2,653	2,653	-	-	-	2,653	2,652	-	1	2,653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2,400	2,400	-	-	-	2,400	2,400 (2,008)	-	- (392)	2,400

주: 괄호안은 보조사업자(대한상사중재원)의 보조금 실집행액 및 불용액

▢ 보조비목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일반수용비 집행 주의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예산처공고)을 명시하였음.

동 지침 제4조[37]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건설비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동 지침 [별표1]에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이

37)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구체화되어 있음.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사업의 2025년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서 비목별 총괄명세서를 보면, 보조비목은 여비(220목)와 운영비(210목) 및 인건비(110목), 보조세목은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및 기타직보수로 구분되어 있음.

<2025년도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사업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여비(220)	국외여비(02)	92,681,000	92,504,751	176,249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786,655,000	785,932,984	722,016
운영비(210)	임차료(07)	180,664,000	180,629,503	34,497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40,000,000	40,000,000	-
인건비(110)	기타직보수(02)	1,300,000,000	908,855,543	391,144,457

자료: 2025년도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이 중 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의 보조사업비와 집행액이 가장 크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1]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동비,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

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2025년도 보조사업 집행세부내역을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반수용비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공간 구축 등 각종 공사비, 연구용역 대금, PC와 복합기 등 자산 구입, 장소 대관료, 식음료비 등에 일반수용비를 상당금액 집행하였음.

<2025년도 일반수용비 용도 외 사용 사례>

(단위: 원)

구분	집행건명	집행일자	집행액
식음료 구입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식음료비(5건)	2025-09-08	6,643,500
공사대금	국제중재센터 사무공간 시설구축 공사(인테리어 및 인터넷)	2025-04-10	24,805,000
	국제중재센터 사무공간 유무선 인터넷 시설 설치	2025-12-19	7,779,200
	국제중재센터 사무공간 시설구축-인테리어공사	2025-12-22	49,005,000
	국제중재센터 사무공간 시설구축-인테리어공사 잔금	2025-12-26	114,345,000
용역대금	국제중재센터 웹사이트 개편-잔금	2025-12-26	24,750,000
	국제중재심판원 및 국제자문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대금 지급	2025-12-29	20,000,000
자산취득	국제중재센터 사무공간 PC 구매	2025-04-10	3,146,000
		2025-06-05	2,110,000
		2025-07-11	4,598,000
	국제중재센터 사무공간 복합기, 컬러프린터, 파쇄기 구매	2025-05-23	9,735,000
	국제중재센터 업무용 카메라 구매	2025-10-17	1,481,050
	국제중재센터 사무공간 가구 구입	2025-12-29	15,138,200

자료: 2025년도 기업환경지수개선 보조사업 집행세부내역을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 들어,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식음료비는 업무추진비(240목)로, 국제중재센터 사무공간 시설구축 공사대금은 건설비(420목)로, 국제중재심판원 및 국제자문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대금은 연구용역비(260목)로, 사무공간 PC와 복합기 등 자산취득은 자산취득비(430목)로 각각 편성·집행하였어야 함.

또한 당초 보조사업 집행계획서에 업무추진비나 건설비, 연구용역비 및 자산취득비 과목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승인하에 보조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했어야 하나, 보조사업자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반수용비를 용도 외로 집행하였으며,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음.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러한 보조비목의 용도 외 사용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보조비목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 인권국

(1) 법률구조(1131-300)

▢ 결산 개요

‘법률구조’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73억 3,700만원이고, 이 중 673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률구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률구조	67,337	67,337	-	-	67,337	67,336	-	1	66,602
·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 강화	50	50	-	-	50	49	-	1	238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지차보조	65,370	65,370	-	-	65,370	65,370	-	-	63,888
·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기구 수지차보조	1,917	1,917	-	-	1,917	1,917	-	-	1,976
· 기타 법률구조기구 수지차보조	-	-	-	-	-	-	-	-	500

수지차 보전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부분을 동 사업의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지차보조’ 내역사업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기구 수지차보조’ 내역사업을 통해 수지차 보조금을 지원받음.

▢ 자체수입 과소 수납에 따른 사업 차질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2025년도 자체수입은 당초 계획된 예산액 대비 적은 금액이 수납되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519억 6,800만원을 자체수입으로 계획하였으나 그보다 63억 9,700만원이 적은 455억 7,100만원이 수납되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예산액 17억 1,600만원 대비 3억 900만원이 적은 14억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예산액 2억 6,700만원 대비 1억 7,500만원이 적은 9,200만원이 수납됨.

국고보조금은 자체수입의 실제 수납액과 무관하게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액만큼 기관에 지원되기 때문에, 2025년에 지출가능한 예산 총액이 세 기관 모두 자체수입 감소액만큼 감소하였음.

<2025년도 기관별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자체수입	예산액(A)	51,968	1,716	267
	실제 수입액(B)	45,571	1,407	92
	차이(C=B-A)	△6,397	△309	△175
국고보조금(D)		65,370	1,548	369
지출가능 예산총액 (E=B+D)		110,941	2,955	461

자료: 법무부

자체수입 감소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9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내방객 감소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데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38] 소송이 급감하여 2022년 이후 상환수익(△30억 4,600만원)과 상대방 상환금(△5억 200만원) 수입이 계획 대비 감소하였음. 또한 청사 및 관사 이전이 최소화됨에 따라 매각대 수입(△22억 7,400만원)이 감소한 것도 주요 원인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개인, 법인 및 출판물 후원금 감소(△9,500만원)와 회관 임대수입 감소(△1억 4,100만원)가 주요 원인이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후원금 감소(△1억 100만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수요 미달 및 폐강에 따른 수강료 감소(△1,200만원)로 자체수입이 계획에 미달하였음.

3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제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근로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으로도 총 1,000만 원 한도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확정판결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가 불필요하게 됨.

<2025년도 세 기관 자체수입 감소 상세 원인>

(단위: 백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구 분	예산	수납	구 분	예산	수납	구 분	예산	수납
정부지원금(a)	65,370	65,370	정부지원금(a)	1,548	1,548	정부지원금(a)	369	369
- 보조금	65,370	65,370	- 보조금	1,548	1,548	- 보조금	369	369
자체수입(b)	**51,968**	**45,571**	**자체수입(b)**	**1,716**	**1,407**	**자체수입(b)**	**267**	**92**
- 상환수익	40,065	37,019	-프로젝트 지원금	1,172	1,145	-후원금	150	49
- 국선변호수익	6,010	5,583	-회비수입	2	1	-회비	10	11
- 매각대	3,009	735	-후 원 금	100	5	-출판부	2	1
- 이자수익	12	16	-임대사업수입	384	243	-수강료	12	-
- 상대방상환금	2,643	2,141	-상환수입	20	7	-이자	5	1
- 기타수익	229	75	-기타수입	32	6	-기타	40	2
			-전기이월금	6	-	-전년도이월금	48	28
총계(a+b)	117,338	110,941	총계(a+b)	3,264	2,955	총계(a+b)	636	461

자료: 법무부

이러한 자체수입 감소로 지출 가능한 예산 총액이 줄어들면서 세 기관은 일부 사업을 기존 계획 대비 축소하여 수행하였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체수입 감소분 63억 9,700만원 중 62억 4,841만원을 사업비에서 감액 지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위탁사업인 '법률구조 활동비'에서 16억 6,569만원이,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업무전산화비에서 3억 434억원이 적게 지출되었고, 사무실 환경개선 및 관사 추가 취득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년도로 연기(36억 1,983만원 감액 지출)하였음.

<2025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세출예산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세출예산(A)	실집행(B)	차액(B-A)
계	117,338	110,941	△6,397
인건비	66,457	66,457	0
경상경비	2,574	2,425	△149
사업비	48,307	42,059	△6,248
기관운영경비	2,906	2,636	△270
법률구조활동비	25,742	24,076	△1,666
법률구조제도조사 연구비	53	26	△27
홍보및법문화활동비	483	243	△240
업무전산화비	11,807	11,503	△304
청사취득및관리비	6,894	3,274	△3,620
전출금	400	299	△101
기타비용	22	1	△21

자료: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자체수입 감소분 3억 900만원 중 인건비에서 1억 8,600만원을, 사업비에서 7,510만원을 감액 지출하였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소송구조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혼전 교육프로그램 심화과정을 중단시키는 등 일부 계획에서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2025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세출예산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세출예산(A)	실집행(B)	차액(B-A)
계	3,264	2,955	△309
인건비	1,525	1,339	△186
경상경비	160	112	△48
사업비	1,579	1,503.9	△75.1

	소송구조비	400	355	△45
	예방교육 프로그램	5	3.9	△1.1
	프로젝트 사업비	1,172	1,145	△27
	기타 사업비	2	-	△2

자료: 법무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도 자체수입 감소분 1억 7,500만원으로 인하여 소송구조, 조정화해, 야간상담 등 기관의 핵심 목적사업은 내부 인력으로 대체하고, 법률계몽사업 및 교육사업은 축소 조정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2025년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세출예산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세출예산(A)	실집행(B)	차액(B-A)
계		636	461	△175
인건비		287	261	△6
경상경비		15	16	1
사업비		335	184	△171
	청사유지비	88	56	△32
	법률구조비 (소송구조, 조정화해, 야간상담, 순회상담)	115	46	△69
	법률계몽비	72	18	△54
	교육사업비	42	5	△37
	기타사업비	18	19	1

자료: 법무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 기관은 법률구조, 교육, 상담 등 주요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을 연기하였음.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활동 지출 축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 및 교육프로그

램에서의 차질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법률계몽사업 축소는 세 기관이 추진하는 핵심 기능 수행이 전반적으로 다소 위축되었음을 시사함.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감소시키고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에 세 기관은 사업 축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세 기관에서 제시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

기관명	자체수입 확보 방안
대한법률구조공단	– 유관기관 협의하여 법률구조 대상자 발굴·확대를 통한 자체수입 증대 노력 –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시범사업 실시(2025. 下), 법률구조 플랫폼 사업 실시(2026. 上) – 변호사보수 현실화 등을 통해 자체수입 증대 노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 등 개인 소액기부 활성화 – 관련 부처 및 민간과의 적극 협의를 통한 법률구조 실적 증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크라우드 펀딩,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한 후원 확대 – 관련 부처 및 민간과의 적극 협의를 통한 법률구조 실적 증대

자료: 법무부

그러나 제시된 방안은 민간 후원 확대, 플랫폼 사업 추진, 기업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외부 환경과 민간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 내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

임.[39] 또한 기관별 자체적인 수익 창출 역량과 사업 여건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기관들이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9)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법률구조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이로부터 구체적인 자체수입 증가 금액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해피빈·같이가치 모금함 당 평균 200만원을 목표로 모금함을 상시 개설하고, 대형로펌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유치 노력을 통해 약 5억 이상의 자체수입 증대를 목표하고 있으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과거 청계재단(장학재단)을 통해 연 1천만 원 규모의 예방교육사업 후원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 중이나, 현재는 기획 단계로써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수입 증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2) 인권국 기본경비(7011-263)

▢ 결산 개요

‘인권국 기본경비’는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0억 9,900만원이고, 이 중 9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권국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권국 기본경비	1,099	1,099	-	-	1,099	991	-	108	1,099

2025년 인권국 기본경비 중 정책연구비(260-02 목)는 1억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5,830만원이 집행되고 4,970만원이 불용되었음.

<정책연구비(260-02 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책연구비 (260-02)	108	108	-	-	108	58.3	-	49.7	60

▢ 집행계획 없는 정책연구비 편성 지양 필요

2025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액 1억 800만원에 대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결정 이행’ 용역 과제 3,500만원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용역 과제 1,800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이 없었음.[40)]

<2025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안 편성 당시 연구용역 과제 계획>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 과제명	금액	용역 기간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결정 이행	35	~ 25.11.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18	미정
과제 미정	55	미정
합계	108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인권국 기본경비 내 정책연구비는 정책연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인권활동 세부사업(인권교육 등)이나 기타 특이 소요(국정과제 또는 사회적 이슈 과제 등)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고, 특이소요가 발생하지 않았던 2025년 동 예산의 일부 불용은

40) 이하 표에 제시된 3개 과제에 대하여 5,830만원을 실제 집행하고 4,97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년도 정책연구비 실제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건명	금액	계약기간
유엔 인권협약상의 개인진정 제도의 국내 이행 방안 연구	25	25.9.~12.
외국인 대상 혐오 표현 대응방안	13.5	25.9.~12.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쟁점 연구	19.8	25.10.~12.
합계	58.3	

자료: 법무부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정책연구 수요의 특성상 연도 중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2025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액 1억 800만원 중 과반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예비적으로 집행계획 없이 편성하여 둔 것은 예산의 목적성과 구체성을 저해하는 것임.

따라서 법무부는 연구과제별 필요성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41]

41)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사전 수요나 대외환경을 고려해 보다 면밀한 정책연구계획을 수립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 등 기타 특이사항에 대비하여 일부 금액을 '과제 미정'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사업성 연구용역은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되나, 기본경비 연구용역은 국회 법안 심사, 급변하는 사회적 이슈, 국정 현안 관련 수시 대응 등 예산 편성 시점(전년도 5~8월)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므로, 이러한 기본경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 결산 개요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대상 교육과 이민정책소식지 발간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확산하고, 주요국의 이민정책 사례연구 및 정책연구용역 실시로 이민정책개발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억 9,000만원이고, 이 중 1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민정책개발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민정책개발지원	190	190	-	-	-	190	173	-	17	226
·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99	99	-	-	-	99	97	-	2	136
· 이민정책개발 연구	91	91	-	-	-	91	75	-	15	91

▢ 세부사업의 활성화나 통·폐합 여부를 검토할 필요

이민정책개발지원 세부사업은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내역사업은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확산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담당자 교육 및 국제 이민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위한 공무직근로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2025년도에 사업비 9,900만원 편성하여 9,7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민정책 개발연구” 내역사업은 출입국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주요 선진국의 이민정책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에 사업비 9,100만원을 편성하여 7,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2025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내역사업비 9,700만원 중 53.6%인 5,200만원은 공무직근로자(영문에디터) 1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집행되었고, 39.2%인 3,800만원은 외국인 업무 담당자 교육에 집행되었으며, “이민정책 개발연구” 내역사업은 집행액 100%를 국외업무여비에 집행하였는데, 결국 동 세부사업비 대부분이 이민정책 개발지원이라는 핵심 업무에 직결되지 않는 1인 인건비, 행사비, 여비와 같은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이민정책 개발지원 세부사업비 결산 주요내역>

세사업 명	집행 내역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 97백만원 – 공무직근로자(영문에디터) 운영 : 52백만원 · 보수 및 복리후생비 44백만원, 4대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8백만원

	– 중앙부처, 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교육 : 38백만원 – 이민정책 사업추진비 : 7백만원 · 이민국 직원방문 경비 2백만원,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경비 등 5백만원
이민정책개발 연구	○ 75백만원(국외여비) – 이민행정 선진사례 연구 : 70백만원 –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교환 연수프로그램 : 5백만원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에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5년도부터 이민정책개발지원의 핵심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연구비 예산이 타 세부사업인 “이민정책연구원운영 (1231-302)”에 편성된 이민정책 연구사업 예산과의 중복 영역이 발생하여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동 사업비의 총규모도 함께 축소되면서 주요 사업이 제외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42)43)].

<최근 4년간 이민정책개발지원 세부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정책연구비 전액삭감 시작)
사업비	429	390	386	190

따라서, 법무부는 동 세부사업이 이민정책개발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한 후, 필수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거나 필요시 다른 세부사업으로 통폐합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42) ‘이민정책 개발연구“내역 사업 중 정책연구비는 2025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며 전액 삭감된 바 있음.

43) 2026년 세부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포상금(310-01) 3천만원이 신규로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2025년과 동일한 수준임.

(2) 이민정책연구원 운영(1231-302)

▢ 결산 개요

이민정책연구원 운영사업은 이민정책연구원 구성원 인건비, 운영경비 및 연구사업비를 지원하여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하며, 해외기관과의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제이민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34억 5,500만원이고, 이·전용 등이나 불용없이 전액을 집행하였음.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민정책연구원운영	3,455	3,455	-	-	-	3,455	3,455	-	-	3,786
·연구원 인건비	1,886	1,886	-	-	-	1,886	1,886	-	-	1,918
·연구원 운영비	966	966	-	-	-	966	966	-	-	462
·연구사업비 등	603	603	-	-	-	603	603	-	-	1,406

▢ 보고서 발간 체계 점검 필요

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이민정책연구원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 실적을 살펴보면, 보고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보고서별 발간 실적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보고서 발행과 관련된 사업 추진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먼저, 이민정책연구원은 연구실적을 아래 표와 같이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정책리포트(정책브리프),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프, 통계브리프, 통계시리즈, 수탁보고서로 총 8가지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보고서별 분류기준과 성과물의 특색이 명확하지 않아 수요자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유사·중복 유형을 통합하여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민정책연구원 발행 보고서 유형>

유 형	카테고리화 사유(분류 기준)	성과물의 차이
연구보고서	연구주제, 방법론, 분석,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정규 연구성과물	(주제) 비자, 통합, 국적, 난민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특정 1개 주제 (분량) 120페이지 이상(서술식 또는 개조식) (연구 기간) 약 10개월 이상
연구총서	이민관련 국내·외 제도·동향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등을 개괄하여 정리하는 과제	(주제) 국내·외 이주 관련 법제도 및 연구 흐름 등 (분량) 100페이지 이상(서술식 또는 개조식) (연구 기간) 약 10개월 이상
정책리포트 ('26.2.폐지)	특정 이민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간행물	(주제) 이주 정책 (분량) 20~30페이지 (연구 기간) 약 6개월
워킹페이퍼	이주 관련 주제를 학술적·탐색적으로 다루는 기초연구 성과물	(주제) 이주 관련 정치, 사회, 경제 (분량) 20페이지 이상 (연구 기간) 2~3개월

유 형	카테고리화 사유(분류 기준)	성과물의 차이
이슈브리프	시의성 높은 정책 현안, 해외사례, 제도 쟁점 등을 간략 분석	(주제) 이민 관련 국내·외 현안 (분량) 4페이지 이상 (연구 기간) 2주 ~1개월
통계브리프	통계자료의 현황, 추세,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간결하게 제시	(주제) 이주 관련 국내·외 주요 통계 (분량) 4페이지 이상 (연구 기간) 2주~1개월
통계시리즈	연구원이 실시한 사회조사 또는 통계자료의 조사 개요, 조사방법, 기초분석 결과 등을 제공하는 간행물	(주제) 통계 조사 기법, 분석결과 등 (분량) 120페이지 (연구 기간) 약 10개월 이상
수탁보고서	외부기관 발주 또는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한 연구성과물	(주제) 발주 기관 공모 주제 (분량) 발주 기관 요청별 상이 (연구 기간) 발주 기관 요청별 상이

또한, 아래 표와 같이 보고서별 발행실적을 살펴보면, 수탁사업을 제외할 경우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은 매년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마저도 실적의 절반가량은 4페이지 분량의 브리프 위주이며, 정책리포트, 워킹페이퍼처럼 분량이 20페이지 이상되는 심층보고서는 연구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연구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44].

<최근 3년간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별 발행실적>

(단위: 건)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구보고서(120페이지 이상)	8	10	11
연구총서(100페이지 이상)	1	1	3
정책보고서('24.11.폐지)	4	2	–
정책리포트(정책브리프)(20~30페이지)	–	–	2
워킹페이퍼(20페이지 이상)	3	2	2
이슈브리프(4페이지 이상)	6	7	5

44) 물론 정성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정량적인 기준으로 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연구원이 교육사업이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보고서 실적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연구 이외의 기타사업의 수행이나 인력의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통계브리프(4페이지 이상)	10	14	15
통계시리즈(120페이지)	1	1	1
수탁보고서	4	9	7
합 계	**37**	**46**	**46**
합 계(수탁보고서 제외 시)	**33**	**37**	**39**

따라서, 이민정책연구원은 설립된 지 17년이 지난 이민정책 분야 전문 연구기관[45]의 위상에 맞게 보고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여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대해, 이민정책연구원은 정책브리프의 경우 주제와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리포트로 명칭을 변경('24.11)한 바 있고, 정책보고서는 연구보고서(정책)와 기능 및 발간 목적이 중복되어 폐간한 뒤 연구보고서(정책)와 통합('24.11)하였으며, 정책리포트 또한 연구보고서(정책)와 일부 유사·중복되는 발간물로 보아 최종적으로 폐간하는 등('26.2.) 정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연구 결과물 분류체계를 간결화하고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인 입장임.

45)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간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이주(이민) 분야에 관한 종합적·중장기적 연구·교육을 위한 국제적 연구원 설립을 2007년부터 추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체결을 통해 2009년 12월에 개원한 IOM의 협력연구원으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임.

(3)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1232-300)

▢ 결산 개요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사업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45개 출입국관리 소속기관에 대한 지원인력 운영, 청사시설관리, 물품구입, 시설·장비 개보수 및 업무용 장비 및 집기류 구입 등을 통해 원활한 이민행정업무 수행과 출입국 업무수행 지원, 민원환경 개선,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551억 6,300만원이고, 4억 7,3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56억 3,600만원이며, 이 중 551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55,163	55,163	-	473	-	55,636	55,157	-	479	65,441
·공무직근로자 운영	17,872	17,872	-	△1,006	-	16,867	16,728	-	138	20,233
· 소속관서 운영	33,572	33,572	-	1,579	-	35,150	34,707	-	334	35,899
·출입국관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3,719	3,719	-	△100	-	3,619	3,722	-	7	9,309

▢ 출국대기실 운영실적에 근거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출국대기실은 입국불허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등 송환대상외국인[46]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 내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항에 설치한 외국인 출국대기시설을 의미함[47].

과거 민간이 출국대기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인 인권침해 및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22년 시행되면서[48], 법무부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식사·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49], 전국에 11개의 출국대기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46) **「출입국관리법」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의 송환을 지시한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을 말한다)과 책임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 2. 삭제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원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5.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47)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이 제389회 국회(임시회)제2차 본회의(2021.07.23)에서 의결되어, 2022.08.18 시행됨.

49) 이 밖에도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출국대기실 시설 현황〉

공항만	면적	수용적정 인원
인천공항 제1터미널(2층)	499㎡(151평)	76명
인천공항 제1터미널(3층)	427㎡(129평)	65명
인천공항 제2터미널	599㎡(181평)	91명
김해공항	351㎡(106평)	53명
제주공항	440㎡(133평)	57명
김포공항	118.66㎡(36평)	12명
청주공항	37.1㎡(11평)	6명
대구공항	38.76㎡(12평)	8명
무안공항	44㎡(13평)	7명
양양공항	44㎡(13평)	7명
평택항	18㎡(5평)	3명
주요시설: 대기실, 수면실, 화장실, 샤워실, 사무실 등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2025년 해당 사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출국대기실 운영 식비, 의료비 등의 구호 및 교정비 예산 9억 5,900만원 중 32%에 해당하는 3억 500만원을 다른 시설의 임차료 예산에 집행하도록 전용 감액하고, 남은 예산 8,200만원은 불용함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59.6%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5년 출국대기실 운영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출국대기실 운영 식비, 의료비 등	959	959	-	△305	-	654	572	-	82
- 구호 및 교정비 (110-03)	959	959	-	△305	-	654	572	-	82

나아가 출국대기실을 국가운영으로 전환한 최초 시점인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23년 70.4%, 2024년 73.1%, 2025년 59.6%인 것으로 나타나 이·전용 등에 따른 감액과 불용액 발생 등의 집행부진 현상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출국대기실 운영 예·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107	107	-	107	107	99.9	99.9	-
2023	1,065	1,065	△286	779	750	70.4	96.3	29
2024	1,065	1,065	-	1,065	779	73.1	73.1	286
2025	959	959	△305	654	572	59.6	87.5	82

이와 같은 집행률 저조 현상에 대해 법무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회복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출국대기실 입실 인원 수준인 연간 74,000명, 일평균 203명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에 따라 입국 불허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감소하게 되어 출국대기실의 입실자 인원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출국대기실 입실자 예측 및 실제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측인원	-	-	-	14,965	74,121	74,121	46,026
실제인원	74,121	10,525	624	23,952	33,222	31,196	20,639

주) 정부 운영 시점인 2022년부터 예측인원 존재

<2023년 출국대기실 운영 예산안 편성 내역>

■ 출국대기실 구호 및 교정비 : 1,065백만원
· 매식비 : 74,121명(2019년 입실자 수)×6,242원(매식단가)×3식×0.84(코로나 회복률)×0.88(일급식율) = 1,026백만원
· 의료비 : 203명(일평균 입실자 수)×145천원×0.84(코로나 회복률)
· 피복비 : 203명(일평균 입실자 수)×145천원×0.84(코로나 회복률)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타 부처가 아닌 법무부 소관 업무이므로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사전 예측이 불가한 외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 동 제도는 2021년 5월 시범실시 운영을 시작으로 9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사전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50], 그리고 2023년부터 시작된 높은 불용률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예산을 집행실적에 근거해 매년 감액 산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은 낮다할 것임.

결국 이는 사전에 소요액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관련 사업비를 관례적·지속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계속해서 관련 예산을 타 사업을 위해 감액하거나 불용하게 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거나, 필요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적정 예산이 반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임[51].

50)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보도자료(2021.04.29.)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 (9.1.부)」, 법무부 새소식(2021.08.27.)

51) 법무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6년부터는 출국대기실 입실자 예측 인원을 하향조정하고 3개년 평균집행액인 7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

(4)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32-305)

▢ 결산 개요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업무시스템 임차,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출입국 업무장비 도입·교체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 체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304억 1,000만원이고, 이 중 303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출입국정보 시스템운영 (정보화)	30,410	30,410	-	-	-	30,410	30,383	-	27	41,015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14,224	14,224	-	-	-	14,224	14,224	-	1	14,587
·업무시스템 임차	465	465	-	-	-	465	465	-	-	465
·시스템개발 연구용역	15,721	15,721	-	-	-	15,721	15,694	-	27	25,963

▢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모니터링 필요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COI)는 난민신청자의 출신국에 대한 안보, 법체계, 주요 사건, 정치·경제·사회·문화, 인권 상황 등을 포괄하는 정보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및 박해 가능성 판단과 난민 정책 수립 시 핵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법무부는 난민심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첫해인 2025년에는 예산 28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28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2,848	2,848	-	2,848	2,843	5
- 일반연구비(260-01)	782	782	-	782	779	3
- 자산취득비(430-01)	2,066	2,066	-	2,066	2,064	2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계획
2025년 (1차년도)	(자동화) 국가정황정보 자동수집 및 기계번역, 통합검색 기능 등 정보 수집·관리 체계화
2026년 (2차년도)	(지능화) DB 보유 정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 사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COI 자료(초안) 생성, 난민신청 문서 분석 등 고도화

그런데,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사업 추진 준비단계에서부터 실제 시행단계까지 전반적인 사업 지연이 나타나고 있음.

법무부는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 베이스 구축 여부를 확인하고자 2022년 5,400만원을 집행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실시하였는데[52], 난민 정보 수집·관리의 체계화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고도 관련 예산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ISP 보고서가 제시하는 2023년부터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2025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시작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지연된 문제가 있음.

또한, 최초 사업연도인 2025년에도 조달청 사전규격 공고 및 구매업무 협의 지연으로 조달계약의 최초 요청은 5월에 이루어져 실제 계약은 8월이 되어서야 체결되었고, 사업 기간은 차년도인 26년 2월까지로 설정되는 등 예산 반영, 계약, 실제 사업 시행까지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서 지연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에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다음으로, ISP 평가 결과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이행과제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ISP 결과보고서에는 개별 이행과제의 전략적인 중요도와 실행의 용이성을 평가하여 총 7가지 세부 이행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는데[53], 사업 추진 결과 당시

52)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ISP 수립」 최종산출물, 2022.6. 아이티이앤씨

2순위 “국가정황정보 검색·통계 서비스 구현” 과제와 3순위 “국가정황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 과제는 2025년에 미이행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집행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

<2025년 국가정황정보 통합DB 구축사업 ISP 과제별 평가결과 및 이행여부>

ISP에 따른 이행과제	총점	우선순위	이행 여부
국가정황정보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3.35	7	이행
국가정황정보 통합 관리 포털 구축	3.96	6	이행
국가정황정보 수집·번역·분류 기능 자동화 – 선택적 정보 자동 수집을 위한 웹크롤링 적용 – 정보 분류 자동화 – 다국어 기계번역 서비스 구현	4.87	1	이행
국가정황정보 통합 DB 구축	4.43	5	이행
국가정황정보 검색 서비스 구현	4.86	2	이행
국가정황정보 통계 서비스 구현	4.86	2	미이행
내부 시스템 및 외부 웹 사이트 간 국가정황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	4.78	3	미이행
국가정황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구축	4.70	4	이행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정황정보 검색·통계 서비스 구현” 과제 중 통계 파트는 데이터수집 현황 등의 기초적 통계 서비스는 구현하였으나 2차년도 사업 시 보다 고도화된 통계 기능을 보환할 예정이고, “국가정황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과제는 정부전산센터 보안 측면에서 정보전송이 불가하여 대체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정황정보 통계 서비스는 이용자 맞춤형 통계를 제공하는 중요 기능이고, 국가정황정보 연계 서비스는 시스템 간의 연계서비스를 구축하는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망에 국가정황정보 통합 DB

53) 우선순위는 세부이행과제별 전략적 중요도와 실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짐.

를 구축하려는 당초 ISP계획과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요구됨.

특히 “국가정황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 과제의 경우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산실 과부화로 인해 관련 DB서버를 구축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상 업무망 DB와 웹기반 포털간 정보 전송이 불가한 문제점[54]은 사업 추진 준비단계에서 충분히 인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핵심 세부이행과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이므로 문제라 할 것임.

54) 국가정황정보 조사 업무는 특성상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수집이 필수적임.

(5)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 결산 개요

외국인보호관리 사업은 단속 등으로 보호된 외국인의 국내외호송, 수용관리 및 강제퇴거를 집행하고, 외국인 보호업무 지원을 위한 출입국 공무직근로자를 고용·운영하며, 외국인 보호시설 보강·개선을 통해 보다 원활한 보호관리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13억 7,200만원이고, 5,6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14억 2,800만원이며, 이 중 212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외국인보호관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외국인보호관리	21,372	21,372	-	56	-	21,428	21,278	-	150	24,011
·공무직근로자 운영	12,170	12,170	-	△14	-	12,156	12,150	-	7	13,540
·불법체류외국인 수용관리	5,341	5,341	-	-	-	5,341	5,266	-	75	5,399
·외국인보호시설개선	652	652	-	-	-	652	618	-	33	-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3,209	3,209	-	70	-	3,280	3,244	-	35	3,237

▢ 보호외국인 의무관 임상연구비의 적정성 점검 필요

의무관 임상연구비 사업은 보호외국인의 건강 및 의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보호시설의 특수한 환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의료적 관점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의무관들의 임상연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55] 전액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그런데 2025년 의무관 임상연구비로 편성된 2,700만원에 대한 결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액을 이·전용 등으로 감액함으로써 예산현액은 0(영)이 되어 사실상 사업비를 소멸시켜 전액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예산 운용이 적정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특히 최근 4년간의 집행실적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2022년에는 1,000만원을 이·전용 등으로 감액하고 1,7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은 63%에 불과하였고, 2023년에는 이·전용 등을 통해 전액 감액하여 현액은 0(영)이 되었으며, 2024년에는 전액 불용하는 등 관련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있어 예산 운용의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55) 사업 근거로는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법무부 훈령 제1496호, '23.10.25. 일부개정) ②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민조사과-6117호, '20.10.23.)」이 있음.

<2025년 보호외국인 의무관 임상연구비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의무관 임상연구비 (일반연구비, 260-01)	27	27	-	△27	0	0	-

<최근 4년간 보호외국인 의무관 임상연구비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27	27	△10	17	17	63.0	-
2023	27	27	△27	0	0	0	-
2024	27	27	-	27	0	0	27
2025	27	27	△27	0	0	0	-

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매년 외국인보호소(사무소)별로 배정된 912만원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화성 및 청주 보호소는 2022년에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외국인들의 의무과 진료 방해 행태 및 의료 갈등 개선방안 고찰”, “보호외국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영성에 대한 고찰”과 같이 실적을 일부 도출하였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사업 미추진으로 매년 전액 불용하였고, 여수사무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화성보호소의 경우 의무관의 고령과 업무과중으로, 청주보호소는 개인신상으로, 여수사무소는 의무관 공석으로 인해 임상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외국인보호소(사무소)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022	9,120	9,120	9,120	8,208	9,120	-
2023	9,120	-	9,120	-	9,120	-
2024	9,120	-	9,120	-	9,120	-
2025	9,120	-	9,120	-	9,120	-

<최근 4년간 예산 집행 및 미집행 사유>

연 도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2	집행	집행	공석(퇴직)
2023	업무과다 고령사유	공석(휴직)	공석(퇴직)
2024	업무과다 고령사유	근무(개인신상)	공석(퇴직)
2025	업무과다 고령사유	근무(개인신상)	공석(퇴직)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보호외국인 의무관 임상연구비의 필요성·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여 만약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폐지하고, 반대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인 한계로 집행이 곤란하다면 외부 연구용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도출되어 보호외국인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6)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

▢ 결산 개요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은 국내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사회통합지원 업무보조원 등을 고용하여 출입국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76억 3,900만원이고, 6억 6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70억 3,300만원이며, 이 중 16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5,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외국인사회통합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17,639	17,639	-	△606	-	17,033	16,380	-	653	21,579
·공무직근로자 운영	1,458	1,458	-	-	-	1,458	1,443	-	15	1,629
·사회통합업무지원	14,262	14,262	-	△606	-	13,656	13,305	-	351	16,389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	1,919	1,919	-	-	-	1,919	1,632	-	287	3,561

▢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예산 낭비와 같은 사례 예방 대책 필요

저출산의 한 요인인 가정 내 가사 노동 부담 경감과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2024년 법무부는 고용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어 능력, 육아·가사 분야 교육 이수 등의 기본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방식으로 육아·가사 분야 활용 가능 체류외국인을 확대함[56].

<육아·가사분야 활동 가능 체류외국인 확대>

기 존	개 선
5개 체류자격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5개 체류자격**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4개 체류자격**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방식 [유학(D-2), 구직(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또한, 법무부는 아동 돌봄이라는 직종의 특수성과 내밀성 및 활동자가 외국인인 점 등을 고려하고, 아동에 대한 이해 및 학대 예방과 가정 내 안전 등 필수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내역사업을 2024년에 시범사업, 2025

56)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년에는 본사업 형식으로 실시하였음.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예·결산 집행을 살펴보면 사업 첫해인 2024년에는 동 사업 추진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관련 용역연구비 예산 1,500만원을 미편성하여 관련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급히 추진한바 있고, 2025년의 경우에는 사업비 3억원 중 10.2%에 해당하는 3,2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0%가량의 대다수 예산을 이·전용 등으로 감액하여 집행이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본예산	추경			
·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일반수용비, 210-01)	300	300	△268	32	32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2024	-	-	15	15	15	-
2025	300	300	△268	32	32	10.7

특히 본사업을 시작한 2025년의 관련 사업비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인 가사사용인 예상 규모를 연간 4,000명으로 산정하고 이들에 대한 총 40시간 과정에 필요한 직무교육 강사료를 반영하여 총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교육생은 연간 9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24년도의 경우 비록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사업이긴 하나 2023년부터 논의되던 사업에 대해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없이 추진함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못한 결과이고[57], 2025년에는 단계적인 목표 수립 없이 4,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9명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임.

<2025년 체류외국인 가사사용인 직무교육 예산명세서상 편성근거>

-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 ('25) 300백만원(순증) * 외국인 가사사용인 직무교육 강사료, ('25) [4,000명(5,000명-1,000명[1]) / 32명[2]] × 40시간[3] × 60천원[4] = 300백만원 1) '24년 下 시범실시로 제외되는 인원(1,000명), 2) 교육반별 인원 3) 교육시간 : 40시간(주말 1일 8시간, 5주) 과정 4) 강사료 단가 : 고용부 여성재취업훈련 강사료 기준

아울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총 9명의 교육이수자 중 7명은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초 법무부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방식으로 4개의 체류자격자[유학(D-2), 구직(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결과라 할 것이므로, 사

57) 다음과 같이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는 202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저출산 문제 해결책 될 것...('23.3.22. 매일경제)
* '육아도우미 비용 월 264만원...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필요성 제안('24.3.4. 한국은행 BOK이슈뉴스)
* 워킹맘의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력 활용 적극 검토 요청('24.6.19. 저고위 본위원회 워킹맘 참가자 발언 中)

업추진 전부터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결과임.

<2025년 체류외국인 가사사용인 직무교육 이수자 현황(총 9인)>

연 번	국 적	체류자격
1	방글라데시	F-3
2	방글라데시	F-3
3	네팔	F-3
4	필리핀	F-3
5	감비아	F-1
6	네팔	D-10
7	방글라데시	F-3
8	중국	F-3
9	방글라데시	F-3

결국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성과가 저조하고, 관련 예산을 당초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타사업의 여유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관련 사업비를 낭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추진 전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검토와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차 반복 발생하여 재원을 낭비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동 사업은 2026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종료된 사업이나, 이에 대한 어떠한 평가서나 결과보고서 작성 없이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적저조로 종료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보고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 검찰국

(1) 개관 및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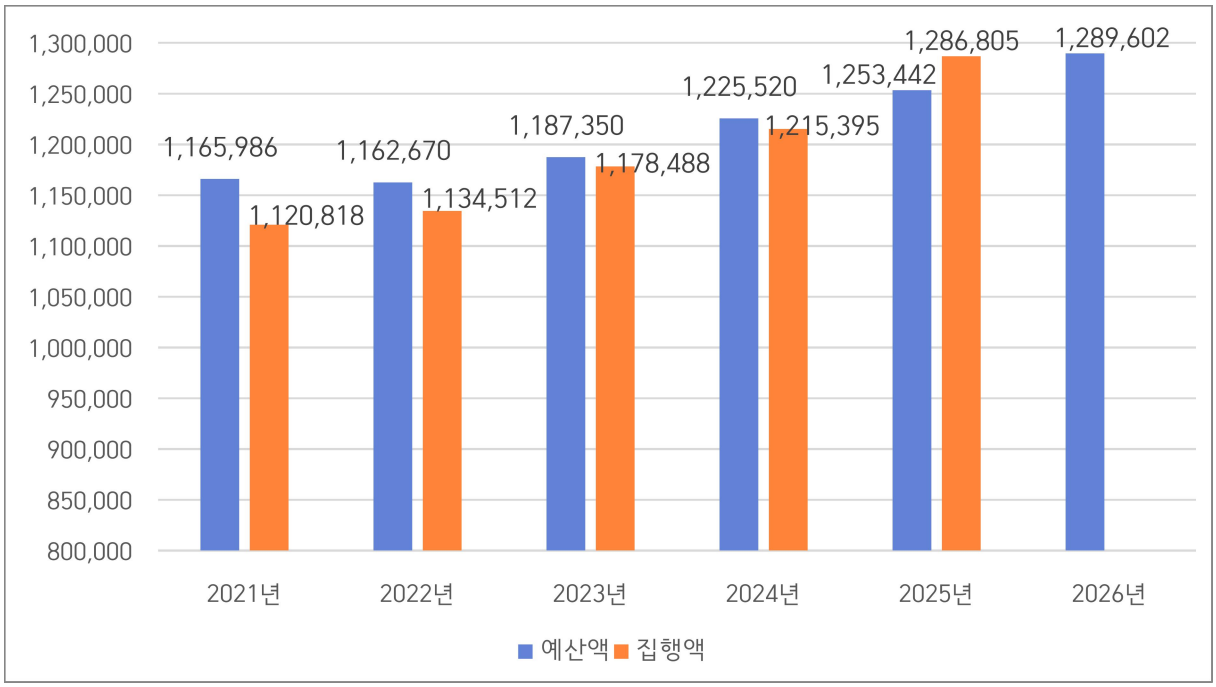
▢ 검찰청 소관 결산 개요

법무부는 검찰청 소관 예산을 ‘검찰활동(1300)’ 프로그램 내 ‘검찰운영(1333)’, ‘검찰업무정보화(1334)’,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1335)’, ‘공판활동 및 형집행(1337)’ 단위사업 등의 주요사업비와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내 기본경비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검찰청 소관 예산액은 1조 2,534억 4,2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조 2,868억 500만원임.

<연도별 검찰청 소관 예산 편성 · 집행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구체적으로, 검찰청 소관 예산은 다음 표와 같이 주로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속한 18개의 세부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으며, 검찰청 인건비 및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음. 이 중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는 법무부 소관 예산과 검찰청 소관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음.

<검찰청 소관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업별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	예산액(추경)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검찰청시설운영	**검찰청**	82,703	-	△2,157	-	80,546	79,670	-	875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법무부	6,749	-	△329	-	6,420	6,419	-	1
	검찰청	1,208	-	△270	-	938	932	-	6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법무부	142	-	-	-	142	140	-	2
	검찰청	12,108	-	△551	-	11,557	11,408	-	149
국제형사협력지원(ODA)	법무부	2,128	-	-	-	2,128	2,128	-	-
	검찰청	381	-	-	-	381	370	-	11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법무부	892	-	-	-	892	892	-	-
	검찰청	23,075	49	80	-	23,204	22,553	-	651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검찰청**	2,400	-	-	-	2,400	2,361	-	38
검찰업무 정보화(정보화)	**검찰청**	33,339	-	-	-	33,339	32,786	-	553
첨단범죄및디지털 수사(정보화)	법무부	46	-	-	-	46	45	-	1
	검찰청	9,958	-	-	-	9,958	9,720	-	238

사업명	소관	예산액(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형사부 등 수사지원	**검찰청**	85,664	145	△681	–	85,128	80,983	65	4,078
공공수사	법무부	258	–	△168	–	90	82	–	8
	검찰청	2,988	–	168	–	3,156	2,206	–	950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법무부	173	–	–	–	173	173	–	–
	검찰청	14,283	–	△533	–	13,750	12,581	–	1,169
마약수사	법무부	530	–	△24	–	506	432	–	73
	검찰청	9,054	–	△37	–	9,017	8,447	–	570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검찰청**	3,702	–	△30	–	3,672	3,333	–	339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법무부	143	–	–	–	143	139	–	4
	검찰청	5,981	–	△90	–	5,891	5,599	–	292
공판활동지원	**검찰청**	2,037	–	–	–	2,037	1,594	–	443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법무부	200	–	–	–	200	200	–	–
	검찰청	7,062	–	△72	–	6,990	6,879	–	111
형사보상	**검찰청**	42,000	–	42,554	42,900	127,454	127,454	–	–
검찰청운영 인건비(총액)	**검찰청**	856,312	–	△34,388	–	821,924	820,474	–	1,450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검찰청**	31,498	–	△1,119	–	30,379	30,298	–	81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검찰청**	16,079	–	314	–	16,393	16,293	–	100

주: 검찰청 소관 음영 표시
자료: 법무부

▢ 예산집행 세부내역 관행적 미제출 시정 필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심사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61조[58] 및 「국가회계법」 제14조부터 제15조의2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 및 사업설명자료에는 각 기관이 예산을 언제, 어떠한 용도로 누구에게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계별·사업별·예산과목별 집행총액만이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예산을 적정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통상적으로 각 기관에 예산집행 관련 건별 세부내역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들은 그 세부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58)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도 검찰국을 제외한 실·국은 소관 예산의 세부집행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검찰국은 수사·정보 및 공소유지 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세부집행내역을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음.

첫째, 검찰국은 소관 사업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수사·공소유지 활동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해당 자료를 일률적·관행적으로 미제출하여 왔음.

예산집행 세부내역에는 건명,[59] 집행날짜, 사업명 및 예산과목, 집행금액, 사용처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검찰의 수사나 공소유지 활동 등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만약 일부 집행내역에 수사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내용만을 제외한 채 제출할 수 있음에도 검찰국은 전체 자료를 미제출하고 있음.

둘째, 검찰국의 예산사업은 수사·공소유지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검찰청시설운영, 과학수사인프라구축, 국제형사협력지원(ODA),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등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과목을 보면, 특수활동비(230목)[60]나 특정업무경비(250-03목)[61]와 같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 또는 수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59) 예시: '형사보상금 지급', '1월 출입통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대금', '사무용품 구입'

60)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지급을 위해 편성할 수 있는 예산과목

61) 각 기관의 수사·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대부분 운영비(210목), 건설비(420목) 등 일반적인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검찰국은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 및 예산과목에 대해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셋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62]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의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이미 지난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이를 결산 심사 용도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현재의 수사·공소제기 업무수행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국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행정부의 예산집행이 법령과 예산안 심의·의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지 상세히 살펴볼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 행정부는 국회에 예산집행 관련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검찰국은 관행적으로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검찰국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검토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검찰국은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63]

---

6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63) 이에 대해 검찰국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자료제출 방식 및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 결산 개요

‘과학수사인프라구축’는 DNA 감식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연구역량 강화, 첨단 감정장비 및 영상녹화장비 도입·유지보수 등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국제 과학수사협력 및 감정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학회 및 교육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액은 122억 5,0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5억 5,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16억 9,900만원이며, 이 중 115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과학수사인프라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12,097	12,250	-	△551	-	11,699	11,548	-	151	11,410
• 과학수사활동 지원	4,828	4,981	-	△33	-	4,948	4,877	-	71	4,954
•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 운영	6,951	6,951	-	△481	-	6,470	6,394	-	76	6,137
• 국제과학수사협력 지원	317	317	-	△36	-	281	277	-	4	323

▢ 검찰청 소관 영상녹화장비를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필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64]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함.

법무부는 이에 따라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고 영상녹화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903개소의 영상녹화조사실이 있음.

<연도별 영상녹화조사실 현황(각 연도말 기준)>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소	838	841	885	890	890	899	893	903	903

자료: 법무부

그러나 연도별 전체 조사건수(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확인 가능한 조서 기준) 대비 영상녹화 조사건수의 비율(이하 영상녹화 조사비율)을 보면, 2017년 16.3%에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3.7%에 불과하였음.

64)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연도별 영상녹화 조사비율〉

(단위: 건, %)

구 분	전체 조사건수(A)	영상녹화 조사건수(B)	영상녹화 조사비율(B/A)
2017년	227,415	37,007	16.3
2018년	212,324	24,145	11.4
2019년	184,479	19,768	10.7
2020년	111,763	6,553	5.9
2021년	64,991	4,902	7.5
2022년	57,938	4,694	8.1
2023년	62,564	4,001	6.4
2024년	63,193	4,360	6.9
2025년	58,625	2,144	3.7

주: 조사건수는 KICS상 확인 가능한 조서(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건수를 의미
자료: 법무부

이중 서울중앙지검 등 23개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최근 3년(2023~2025) 간 영상녹화 조사비율이 매년 5% 미만을 기록하였을 정도로 영상녹화장비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65]

〈연례적으로 영상녹화 실시율 저조한 각급 검찰청 및 지청 현황〉

(단위: 건, %)

청명	영상녹화 조사실	2023			2024			2025		
		조사건수	영상녹화건수	실시율	조사건수	영상녹화건수	실시율	조사건수	영상녹화건수	실시율
서울중앙	71(86)	5,068	179	3.5	4,832	235	4.9	4,487	75	1.7
서울북부	26(27)	1,857	71	3.8	2,097	81	3.9	1,829	27	1.5
의정부	22(22)	1,866	65	3.5	1,909	32	1.7	2,145	20	0.9
고양	17(18)	1,177	8	0.7	1,261	22	1.7	1,073	8	0.7
수원	49(50)	3,173	74	2.3	3,471	121	3.5	3,134	49	1.6
성남	19(20)	928	20	2.2	1,289	33	2.6	1,473	17	1.2

65) 영상녹화장비 활용 저조사유에 대해 법무부는 영상녹화의 필요성 및 효용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고,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계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또한 영상녹화장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영상녹화 활용사례를 적극 발굴·활용토록 하고, 분기별 모범 사례를 선정하여 격려하는 등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청명	영상녹화조사실	2023			2024			2025		
		조사건수	영상녹화건수	실시율	조사건수	영상녹화건수	실시율	조사건수	영상녹화건수	실시율
여주	6(7)	416	14	3.4	450	5	1.1	373	14	3.8
안산	22(22)	1,696	42	2.5	1,893	35	1.8	1,424	21	1.5
영월	6(6)	242	2	0.8	206	8	3.9	145	2	1.4
충주	6(6)	251	11	4.4	254	4	1.6	255	4	1.6
제천	4(4)	254	5	2.0	262	8	3.1	262	6	2.3
영동	2(2)	172	0	0.0	244	10	4.1	230	8	3.5
공주	4(4)	137	2	1.5	152	5	3.3	86	2	2.3
논산	4(5)	160	4	2.5	138	4	2.9	117	1	0.9
안동	6(6)	371	2	0.5	288	5	1.7	270	1	0.4
김천	7(7)	716	27	3.8	487	21	4.3	711	19	2.7
부산서부	15(15)	1,102	26	2.4	1,191	57	4.8	1,441	18	1.2
밀양	5(5)	204	7	3.4	219	4	1.8	190	1	0.5
거창	3(3)	350	4	1.1	308	3	1.0	352	0	0.0
광주지검	23(25)	2,360	64	2.7	2,044	68	3.3	1,899	83	4.4
전주지검	19(19)	1,002	40	4.0	1,095	26	2.4	953	20	2.1
정읍	4(4)	199	8	4.0	295	4	1.4	253	2	0.8
남원	3(3)	127	6	4.7	103	0	0.0	118	3	2.5

주1: 3년 연속 영상녹화 실시율 5% 미만인 청을 대상으로 작성
2: 괄호안은 영상녹화조사실 내 영상녹화장비수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검찰청 소관 영상녹화장비의 활용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한이 일원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각급 검찰청에 구축된 영상녹화장비를 각급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이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동안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여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검사의 수사권이 10월 2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피의자진술 녹화를 위해 영상녹화장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과정 영상녹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고소인 등 면담 과정 영상녹화, 그 외 기타 진술분석용 활용 등을 위해 이미 설치한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07년에 「형사소송법」 개정[66]으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및 참고인진술 영상녹화 근거가 마련되었던 것은 영상녹화가 수사과정의 일환으로서 공판에서의 조서 증거능력과 연관된다는 취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상녹화는 수사권한과 관련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의 영상녹화 장비 필요성은 낮아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피의자진술 영상녹화건수 조차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등의 녹화를 위해 현재와 같이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영상녹화장비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검찰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66) 당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의 신설 및 제312조 개정을 통해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영상녹화물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음. 다만,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312조제2항이 삭제되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재는 영상녹화물을 이용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함으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종전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반면, 수사권한 조정에 따라 각급 경찰청과 중수청에서는 피의자진술 녹화를 위한 영상녹화장비 소요가 증가할 개연성이 크고, 해당 기관에서 장비 추가 구입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보다는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녹화장비의 상당수를 이관받아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경찰청과 중수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녹화장비의 상당수를 이관할 필요가 있음.

(3)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1)

▢ 결산 개요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는 검찰청 소속 검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소속 공무원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보수(110-01)' 및 이들에 대한 '연가보상비(110-05)', 그리고 청원경찰 등을 비롯한 직원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타직보수(110-02)'로 구성되어 있음.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8,563억 1,200만원이고, 343억 3,800만원이 이·전용 등으로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8,219억 2,400만원이며, 이 중 8,20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856,312	856,312	-	△34,338	-	821,924	820,474	-	1,451	883,665
· 보수 (110-01)	832,808	832,808	-	△38,558	-	794,250	793,116	-	1,134	853,161
· 기타직보수 (110-02)	16,763	16,763	-	5,087	-	21,850	21,721	-	129	23,551
· 연가보상비 (110-05)	6,741	6,741	-	△916	-	5,825	5,637	-	188	6,952

▢ 검찰청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인건비는 그 특성상 어느 정도 여유분을 포함하여 추계할 수밖에 없고, 소속 직원의 연중 채용·휴직·퇴직 인원수 등을 사전에 전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을 실제 집행액 규모에 맞게 정확히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은 있음.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검찰청 인건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첫째, 전반적으로 인건비 예산 잔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 위한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상당 부분 불용처리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검찰청 인건비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2025년도에는 총 343억 3,800만원을, 2024년도에는 325억 3,8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이·전용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49억 2,600만원을 이·전용하고 75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2년도 및 2021년도의 경우에도 이·전용 등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각각 205억 8,800만원 및 408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이는 검찰청 인건비 잔액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이 별다른 개선 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67]

67)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퇴직, 휴직 인원 발생 등 사유로 인해 인건비 여유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인건비 여유분은 형사보상금 등 의무지출 사업에 대부분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789,187	789,187	-	789,187	748,373	94.8	94.8	40,814
2022	789,252	788,012	△3,000	785,012	764,424	97.0	97.4	20,588
2023	803,946	803,946	△14,926	789,020	781,485	97.2	99.0	7,535
2024	829,262	829,262	△32,538	796,724	790,870	95.4	99.3	5,855
2025	856,312	856,312	△34,338	821,924	820,474	95.8	99.8	1,451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마약수사(1335-304) 등

▢ 결산 개요

'마약수사'는 마약수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장비구입·차량임차 등 비용을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이 주최하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68])'와 마약류 불법거래 관련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을 목표로 설립된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APICC[69])'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액은 95억 8,4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6,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95억 2,300만원이며, 이 중 88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음.

<마약수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마약수사	7,823	9,584	-	△61	-	9,523	8,879	-	644	10,621
• 마약사범 수사	7,415	9,176	-	△105	-	9,071	8,427	-	644	10,222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138	138	-	43	-	183	183	-	-	138
•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운영(APICC)	270	270	-	-	-	270	269	-	1	261

68)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69) 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 가상자산추적 관련 예산집행의 실효성 제고 필요

최근 마약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가상자산을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도화된 가상자산 거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범죄자 검거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자 추적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2025년도에는 '마약수사' 및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등 세부사업 내에 가상자산추적 및 분석장비 구매,[70] 가상화폐추적수사지원 등의 명목으로 총 3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에는 마약수사를 위한 가상자산 추적도구 도입 등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 규모를 44억원 이상으로 증액한 바 있음.

그러나 다음 표의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 총 편성액 31억 8,000만원 중 전체 집행액은 19억 1,100만원에 그쳤음. 특히, 고난도 자금세탁 추적을 위해 가상자산추적 전문업체의 지원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가상화폐추적수사지원' 예산의 경우,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에서는 4억 4,000만원 중 1억 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23.2%에 불과했으며, 마약수사 사업에서는 9억 9,000만원 중 9,800만원만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8%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70) 가상자산 추적분석 도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계정)를 구매하는 것임.

〈세부사업별 · 연도별 가상자산 추적 관련 예산편성 ·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 역	2023		2024		2025		2026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가상자산추적 및 분석장비 구매	778	750	778	752	778	759	778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가상화폐추적 수사지원 등**	**-**	**-**	**440**	**95**	**440**	**102**	**440**
	가상자산추적 및 분석장비 구매	-	-	777	748	613	601	777
마약수사	**가상화폐추적 수사지원**	**-**	**-**	**440**	**345**	**990**	**98**	**860**
	가상화폐추적 수사전문교육	-	-	-	-	359	352	359
	가상자산 추적도구	-	-	-	-	-	-	1,050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가상자산추적 전문교육	-	-	-	-	-	-	137
계		778	750	2,435	1,940	3,180	1,911	4,401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일부 내역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가상자산 추적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 도구 등 활용을 통한 수사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관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법무부는 '가상자산추적 및 분석장비 구매'를 통해 취득한 장비의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용실적 측정은 어려우나, 전체 계정의 분석 도구 접속·사용 및 그래프 작성 건수 통계를 제출"한다는 답변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이 검찰 전체의 분기별

“접속·조회 및 그래프 작성 건수”만을 제출하였는바, 법무부 내에서 가상자산추적 등과 관련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임.

<2025년도 분기별 가상자산추적 및 분석장비 활용실적>

(단위: 건)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계
접속·조회 및 그래프 작성 건수	2,139	3,577	3,043	2,114	10,873

자료: 법무부

가상자산 추적 역량은 향후 마약범죄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 대응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관련 예산 증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가상자산추적 및 분석장비 활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범죄수사나 범죄수익환수 등에서 성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함.

따라서 법무부는 가상자산 추적과 관련한 사업의 집행실적을 개선하는 한편,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장비 관련 예산 투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추적 관련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5) 형사보상(1337-302)

▢ 결산 개요

‘형사보상’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의자 및 검사가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심·비상상고 등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속 피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구금·형집행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420억원이었으나, 425억 5,400만원을 이·전용 받고 429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예산현액은 1,274억 5,4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형사보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형사보상	42,000	42,000	-	42,554	42,900	127,454	127,454	-	-	44,000

▢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등 개선 필요

형사보상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71]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무죄 판결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연간 지급 규모 산출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72]에 따라 검찰청이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지출'에 해당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특성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73] 단서는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등은 예외적으로 예산 이용(移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매년 예산총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보상금' 등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7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7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73)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74] 또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2조[75]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배정받아 이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함.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청은 형사보상금 부족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소속기관 인건비 등으로부터 예산을 이·전용[76]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음.

<형사보상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40,000	40,000	4,390	-	44,390	44,387	111.0	100.0	3
2022	40,000	40,000	2,323	-	42,323	42,323	105.8	100.0	-
2023	40,000	40,000	16,852	-	56,852	56,851	142.1	100.0	-
2024	40,000	40,000	37,225	-	77,225	77,219	193.0	100.0	6
2025	42,000	42,000	42,554	42,900	127,454	127,454	303.5	100.0	-
2026	44,000	44,000							

자료: 법무부

74)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1. p.233

75)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76)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는 자체 전용도 가능함(위 지침 p.236).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청이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전용 등은 그 금액이 상당히 크고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3년 이후 '제주 4·3 사건' 등 과거사 관련 재심사건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검찰청 소관의 다른 사업으로부터 대규모의 예산을 매년 이·전용하여 지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주요사건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제주 4 · 3 사건	**28,242**	**40,794**	**81,182**
5 · 18 민주화운동사건	2,610	2,396	4,693
납북귀환어부사건	170	5,846	3,899

주: 주요 재심사건별 지급 내역 자료작성은 2023년부터 실시하여, 그 이전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임.
자료: 법무부

2025회계연도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형사보상금의 당초 예산액 420억원보다도 많은 총 425억 5,400만원을 검찰청 운영 인건비·기본경비 및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마약수사 등 검찰청 소관 각종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하였음.

<2025년도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 5. 2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20-03**	**2,2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5.2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3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5.28.)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430-01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5.28.)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6.18.)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30,0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9.17.)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3,1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9.17.)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110-01	2,9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내역변경 (2025.12.23.)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337-301)	310-03	4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110-03	6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1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01	46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07	2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7	3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9	9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23.)	인권보호등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01	1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인권보호등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16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110-03	13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310-04	4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1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7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1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210-01	2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310-04	1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430-01	19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1335-305)	110-03	3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1335-305)	210-01	5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1335-305)	310-04	3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337-301)	210-01	18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337-301)	430-01	12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법정비 (1338-300)	210-01	9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법정비 (1338-300)	210-07	1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법정비 (1338-300)	260-01	2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13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5**	**916**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국기본경비(총액) (7011-204)	110-04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110-04	65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210-06	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210-12	35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210-16	4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250-02	1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01	2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07	2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08	2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12	27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430-01	1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합 계			**42,554**			

자료: 법무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이러한 이·전용으로도 부족하여 2025년 12월 2일 및 23일 두 차례에 걸쳐 총 429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따라 2025년도 형사보상금 지급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세 배가 넘는(303.5%) 1,274억 5,400만원에 달하였음.

<2025년도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세사업	금 액	예비비 배정 사유
310	01	형사보상	39,400	형사보상금 부족(2025.12.2.)
310	01	형사보상	3,500	형사보상금 부족(2025.12.23.)
합 계			42,900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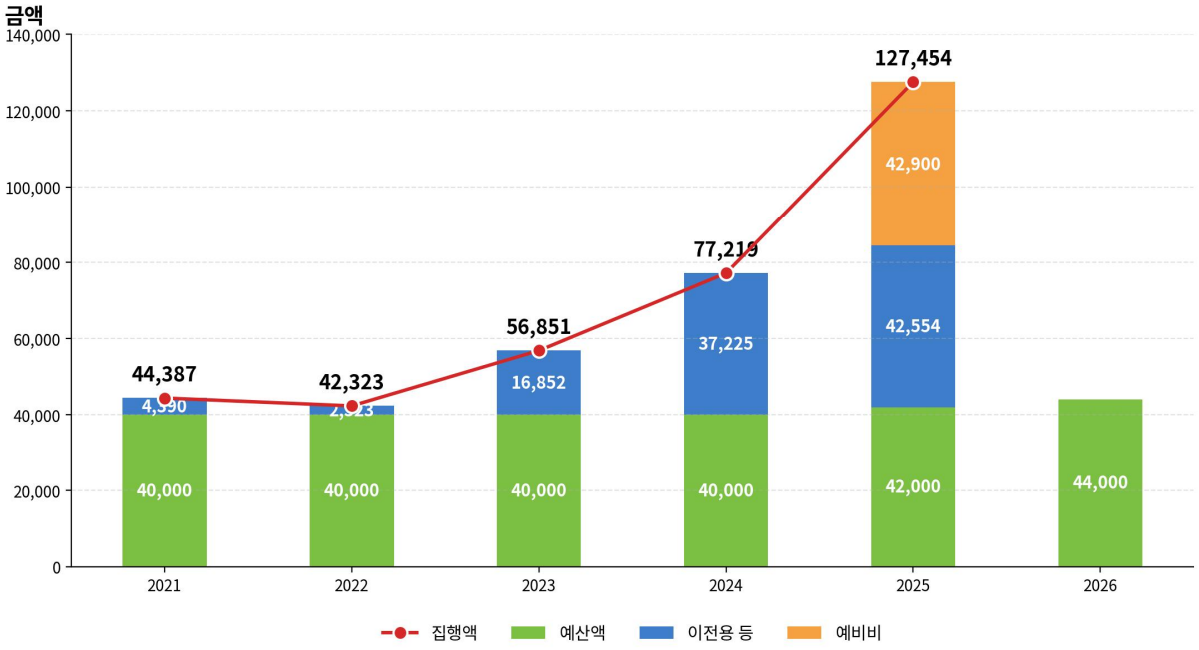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재심 등은 사건 발생 시점 자체가 매우 오래전이고 보상대상자 수가 많아 보상액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 신청과 재판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전체 지급소요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음.

그러나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과다 이·전용 등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안인바,[77]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예산 부족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이·전용 등 규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오히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78]

77)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

〈최근 5년간 형사보상 예산액 · 집행액 및 이 · 전용 등 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처럼 실제 소요에 크게 부족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 규모가 과다할 경우 이·전용에 따라 감액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79]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청은 재심·무죄 사건 및 관련 보상의 진행 상황과 연도별 집행실적 추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형사보상금의 지급 예상 규모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하여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80]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78) 이에 매년 법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시 형사보상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법무부는 2026년도 형사보상 예산을 전년 대비 20억원만 증액하여 44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음.

79) 실제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할 이·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에서 각종 장비 등의 구입 단가를 하향 조정하고 일부 유지·보수 등 항목의 지출을 추후로 연기하는 등의 조치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음.

있는 다각도의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과다·반복 이·전용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81]

80)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검찰청은 연간 형사보상금 집행에 대한 사건 건수, 구금 기간 등 형사보상금 지출액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형사보상금 예산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Ⅰ)”, 2024. 8.
아울러, 위 보고서에서는 형사보상액 산정 시 적용하는 최저임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시에 예산에 반영하는 등을 통해 형사보상금의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81)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심사건 외에도 검사의 과오 등으로 인한 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매년 130억에서 160억원 수준), 검찰청이 보다 적정한 수사 및 기소를 통해 형사보상이 필요한 무죄 판결 사건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4. 7.

(6)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 결산 개요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는 주가조작,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는 한편, 범죄신고자에게 안전가옥 제공 등 신변보호조치 및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침해 사범 수사와 관련된 특별사법경찰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액은 144억 5,6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5억 3,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39억 2,300만원이며, 이 중 127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9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9,918	14,456	-	△533	-	13,923	12,754	-	1,169	13,768
·국민생활침해 사범 수사	9,412	13,950	-	△533	-	13,417	12,248	-	1,169	13,262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276	276	-	-	-	276	276	-	-	276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	230	230	-	-	-	230	230	-	-	230

▢ 자산취득비 및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 과다편성 주의 필요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의 전반적인 2025년도 집행실적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불용액을 제외하면 준수한 수준으로 보이나, 세부내역 중 ‘자산취득비’ 및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 등은 다음과 같이 그 집행실적이 매년 저조한 상황임.

먼저, 각종 수사 장비 등 취득을 위해 편성되는 자산취득비는 2024년도에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장비 구매’ 명목으로 전년 대비 7억 7,700만원 증액되어 1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된 이후 2025년에도 같은 금액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법무부는 이 중 65.1%인 9억 5,800만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1,300만원을 형사보상금 부족분으로 전용하였음.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자산취득비 최근 3년간 집행내역 및 2026년 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3	694	-	694	**693**	2
2024	1,471	**△674**	797	**797**	-
2025	1,471	**△513**	958	**958**	-
2026	1,671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024년도에도 자산취득비 6억 7,400만원(45.8%)을 전용하여 공공요금 등에 집행하였는바, 2024년도부터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른 용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임.

<2024년 및 2025년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자산취득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4.10.22.)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60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2	공공요금 부족
자체전용 (2024.11.22.)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4.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6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2024년도 소계			674			
자체전용 (2025.5.28.)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1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2025년도 소계			513			

자료: 법무부

다음으로,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82]에 따라 범죄신고자등[83](피해자 포함)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8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결정한다.

8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받거나 기타 비용 지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범죄신고자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임.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은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그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최근 5년간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천원, %, 건)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지급건수
2021	77,000	900	1.2	1
2022	77,000	-	-	-
2023	77,000	37,100	48.1	6
2024	62,000	27,820	44.9	5
2025	62,000	17,000	27.4	4

자료: 법무부

구체적으로, 구조금은 과거부터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2021년에는 90만원 지급 1건뿐이었고, 2022년에는 실적이 전무하였음. 이에 당시 우리 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는 “구조금 지원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채택하기도 하였음.[84]

84)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당시 “법무부 및 검찰청은 일선 청 담당자들이 가지급

법무부는 담당자 교육 및 지급대상자 적극 발굴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에 2022년 이후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실적이 다소 개선된 2023년 및 2024년의 집행률도 여전히 50%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25년에는 1,700만원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7.4%에 그쳤음.

따라서 법무부는 이 사업 자산취득비와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의 집행실적 및 향후 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은 범죄신고자 등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구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요건 완화나 절차 간소화, 범죄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신청절차 안내 확대 등 노력을 병행하도록 할 필요도 있겠음.

을 포함한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제도를 숙지하고, 신청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 구조금 지원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7) 검찰청시설운영(1333-300)

▢ 결산 개요

‘검찰청시설운영’은 전국 67개 검찰청의 기본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편성되는 사업으로, 청소·시설·조경 등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운영하고, 각 청사를 유지·보수 등 관리하는 한편, 각 청사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 관사 및 비상대기소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2025년도 예산액은 827억 3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21억 5,7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05억 4,600만원이며, 이 중 796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검찰청시설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검찰청 시설운영	82,703	82,703	-	△2,157	-	80,546	79,670	-	875	83,131
·검찰청사 공무직 운영	28,594	28,594	-	△168	-	28,426	27,949	-	476	31,524
·검찰청사 유지 보수 등 관리	42,525	42,525	-	△1,988	-	40,537	40,148	-	389	38,314
·어린이집 운영 위탁	3,187	3,187	-	-	-	3,187	3,187	-	-	3,286
·관사 및 비상 대기소 운영	8,397	8,397	-	-	-	8,397	8,386	-	11	10,007

▢ 공공요금 등 부족분에 대한 연례적 이·전용 개선 필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은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과 우편·전화·통신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상경비성 비목으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업무수행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각종 수사·공판 등 활동을 위하여 우편·전화·통신비는 물론 전국 청사의 전기요금 등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검찰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85] 단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의 이용(移用)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기획예산처도 매년 예산총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86] 필요시 자체 전용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87]

다만, 이러한 예외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공공요금 등에 대한 실제 소요를 파악하여 적정한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득이한 경우

85)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1. p.233

87)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에 해당하는 경비는 자체 전용도 가능함(위 지침 p.236).

에 다른 목적의 경비를 이·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결산내역을 보면, 3회계연도 연속으로 다른 목적의 예산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여 왔음. 2025년도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296억 2,800만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전용으로 43억 500만원을 조달하여 총 338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음.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21	27,631	△545	27,086	26,935	97.5	99.4	151
2022	28,197	437	28,634	28,621	101.5	100.0	13
2023	27,762	4,727	32,489	32,482	117.0	100.0	7
2024	29,158	4,121	33,279	33,234	114.0	99.9	45
2025	29,628	4,305	33,934	33,869	114.3	99.8	64
2026.3.	24,854	-	24,854	11,974	48.2	48.2	-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88] 결과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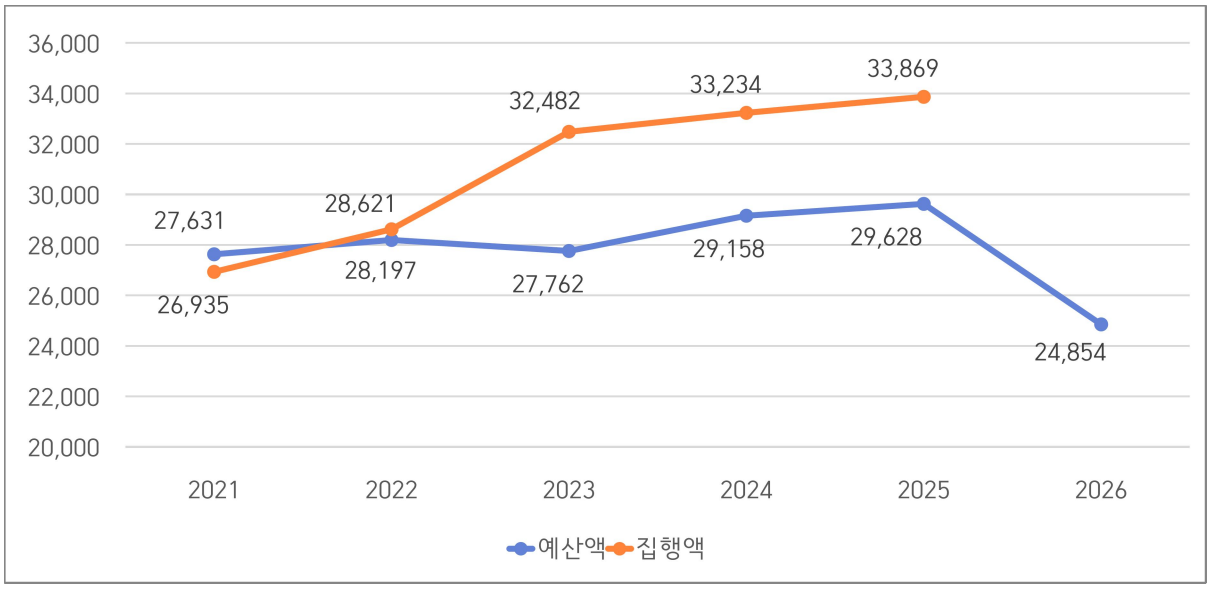
88)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각 중앙관서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당국이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

흡’ 평가를 받은 사업[89]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평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러한 예산편성 방침을 바탕으로 2026년도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액을 2025년보다도 오히려 16.1% 감액된 24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그 결과 2026년도 공공요금 등 예산은 3월까지 총 119억 7,400만원이 집행되어 이미 예산액의 48.2%가 소진된 상황이며, 그에 따라 2026년에도 예년과 같은 대규모 예산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 집행액 추이>

(단위: 백만원)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토대로 작성

는 제도로, 평가 대상 세부사업을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등급으로 구분함. ‘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삭감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이 요구됨.

89)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등

따라서 향후 법무부 및 검찰청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의 적정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하여 편성함으로써, 필수경비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업으로부터 대규모의 예산을 이·전용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8) 공공수사(1335-302) 등

▢ 결산 개요

‘공공수사’는 선거사범, 국가안전위해사범, 불법집단행동사범 등 대상 공공수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는 한편, 국가보안 유공자 및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액은 32억 4,600만원이며, 이 중 22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공공수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공수사	1,346	3,246	-	-	-	3,246	2,288	-	958	2,982
・공공수사 지원	522	522	-	147	-	669	653	-	16	528
・공공수사활동 경비	567	2,466	-	21	-	2,487	1,553	-	934	2,197
・포상금 지급	**258**	**258**	**-**	**△168**	**-**	**90**	**82**	**-**	**8**	**258**

▢ 포상금 편성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공공수사’ 사업에는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2억 4,388만원) 및 ‘선거범죄신고포상금’(1,362만원) 등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310-03) 예산이 2025년도 기준 총 2억 5,75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음.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은 「국가보안법」[90]에 따라 국가보안 등 위해 사범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민간인) 및 위 사범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정보기관 종사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임.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은 「공직선거법」[91] 및 「정치자금법」[92]에 따라 선거범죄 등 사건 해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임.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포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집행이 원활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예산이 증액된 2024년 이후로는 실적이 오히려 급감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90) **「국가보안법」 제21조(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1)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2) **「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5년에도 총 2억 5,750만원의 예산 중 8,160만원만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1.8%에 불과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예산액의 65.0%에 해당하는 1억 6,75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공공수사 포상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예 산	지 급	
			금 액	대 상
2021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64,500	38,640	16명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53,379	173,552	7명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1,120	80	1명
	소 계	**128,999**	**212,272**	**24명**
2022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64,500	59,840	39명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53,379	131,300	4명
	선거범죄신고포상금	45,121	380	1명
	소 계	**163,000**	**191,520**	**44명**
2023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64,500	153,240	19명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53,379	8,600	1명
	선거범죄신고포상금	45,121	0	0명
	소 계	**163,000**	**161,840**	**20명**
2024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133,500	8,400	1명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110,379	14,800	1명
	선거범죄신고포상금	45,121	0	0명
	소 계	**289,000**	**23,200**	**2명**
2025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	133,500	59,700	17명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민간인)	110,379	21,900	2명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3,621	0	0명
	소 계	**257,500**	**81,600**	**19명**

자료: 법무부

포상금의 이러한 집행부진 문제는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임. 먼저,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에도 형집행 우수기관·유공자 및 범죄수익 추적·환수 유공자 등 대상 포상금이 매년 1억 200만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나, 이들 포상금의 집행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예 산	지 급	
			금 액	대 상
2021	형집행 우수기관 및 유공자 등	40,000	39,600	36개청
	범죄수익 추적, 환수 유공 등	50,420	62,670	민간 6명, 공무원 6명
	소 계	**90,420**	**102,270**	
2022	자유형집행 우수기관 및 유공자 등	24,600	24,600	24개청
	범죄수익 추적, 환수 유공 등	50,420	21,900	민간 1명, 공무원 11명
	재산형집행 우수기관 및 우수집행사례	27,400	27,400	26개청
	소 계	**102,420**	**73,900**	
2023	자유형집행 우수기관 및 유공자 등	24,600	24,600	24개청
	범죄수익 추적, 환수 유공 등	50,420	36,300	민간 2명, 공무원 9명
	재산형집행 우수기관 및 우수집행사례	27,400	27,400	24개청
	소 계	**102,420**	**88,300**	
2024	자유형집행 우수기관 및 유공자 등	24,600	24,600	24개청
	범죄수익 추적, 환수 유공 등	50,420	20,200	민간 3명, 공무원 9명
	재산형집행 우수기관 및 우수집행사례	27,400	27,400	32개청
	소 계	**102,420**	**72,200**	
2025	자유형집행 우수기관 및 유공자 등	24,600	24,600	24개청
	범죄수익 추적, 환수 유공 등	**50,420**	**7,500**	공무원 7명
	재산형집행 우수기관 및 우수집행사례	27,400	27,400	34개청
	소 계	**102,420**	**59,500**	

자료: 법무부

특히, 2025년에는 ‘범죄수익 추적, 환수 유공 등’ 포상금의 집행액이 75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률이 14.9%에 그쳤으며, 법무부는 잔액 대부분을 형사보상금으로 전용하였음.

다음으로, ‘마약수사(1335-304)’ 사업에도 2025년도 포상금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어 마약류범죄 신고자 포상금이 4억 2,400만원, 마약사범수사 유공자 포상금이 1,68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해 집행률이 58.9%로 저조하였으며, 잔액 1억 8,132만원은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전용되었음.

<최근 5년간 마약수사 포상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 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1	300,388	△95,122	205,266	42,100	163,166
2022	136,800	-	136,800	136,800	-
2023	126,800	-	126,800	126,800	-
2024	126,800	-	126,800	126,800	-
2025	**440,800**	**△181,320**	**259,480**	**259,480**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포상금은 해당 연도 사건 수, 정치·사회적 상황, 사건 내용, 수사단서 성격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집행실적이 달라지고, 포상 심의 과정에서 유공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부 포상금의 예산액과 집행액 간 차이가 정확한 추계의 어려움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포상금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9)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1335-305)

▢ 결산 개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는 사건관계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분석하는 진술분석관 채용·운영 등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전국 검찰청에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액은 37억 2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3,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6억 7,200만원이며, 이 중 33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2,760	3,702	-	△30	-	3,672	3,333	-	339	3,856
• 진술분석관 운영	1,153	1,153	-	△136	-	1,017	995	-	22	1,347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지원	1,607	2,549	-	107	-	2,656	2,336	-	318	2,509

▢ 각 내역사업의 연례적 실적부진 개선 필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는 디지털성범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찰청 소관의 각종 수사업무 중에서도 특히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본 사업에 편성된 일부 내역사업들은 다음과 같이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함.

먼저,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사업은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 등 관련 수사실무 매뉴얼(“디지털성범죄 수사실무”)을 발간하고, 전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집행실적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매년 예산이 9,100만원씩 편성되고 있음에도 실제 2025년도 기준 집행액은 3,180만원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내 일부 내역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관련 전문화 교육	91,000	7,122	91,000	7,712	91,000	31,796	91,000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67,000	1,441	67,000	14,365	67,000	24,660	67,000
준법강의 등 학교폭력예방활동	58,527	6,721	40,527	20,826	40,527	15,050	40,527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자문료	60,000	18,500	30,000	16,000	30,000	9,000	30,000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	22,800	3,254	15,800	3,600	13,800	11,561	13,800

자료: 법무부

이는 지난 2024년 및 2023년 각각 700만원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인 것에 비하면 개선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93]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와 관련하여 검사·수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본 내역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그 실적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음으로,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전담 검사·수사관 등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나, 2025년에는 예산액 6,700만원 중 2,466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 36.8%에 그쳤을 뿐

93) 법무부는 단계적인 실적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아니라, 2024년 및 2023년에도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난 바 있음.

그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준법강의 등 학교폭력예방활동' 사업 및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 사업 또한 2025년도 기준 집행률이 각각 37.1% 및 30.0%로 저조한 상황이며,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 사업의 경우에만 과거의 연례적 실적부진이 2025년 들어 준수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법무부는 이와 같은 집행부진이 각 내역사업에 대한 일선 청의 인지 부족 및 수사·공판 등 사건처리 업무 부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라는 본 세부사업의 취지 및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법무부는 이러한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즉각적인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해당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규모에 맞추어 조정한 이후, 집행여건이 개선되는 때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 결산 개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은 전국 검찰청의 사무원·전화상담원 등 공무직 채용·운영을 지원하고, 검사 및 수사관의 수사·정보수집 등 검찰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검찰의 인력선발 관리 및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검찰청의 감찰·인권보호·양성평등 업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액은 239억 6,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 및 이·전용 등 증액 8,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40억 9,600만원이며, 이 중 234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9,187	23,967	49	80	-	24,096	23,445	-	651	31,381
·검찰업무지원 인력 운영	9,631	9,631	-	△200	-	9,431	9,430	-	1	10,909
·검찰업무지원	4,164	8,565	-	234	-	8,800	8,217	-	582	14,220
·인력선발 및 관리 지원	3,665	3,665	49	△247	-	3,467	3,441	-	26	4,209
·감찰활동 강화	559	938	-	314	-	1,252	1,209	-	43	882
·인권감독 강화	1,017	1,017	-	△19	-	999	997	-	2	1,010
·양성평등 강화	150	150	-	-	-	150	150	-	-	150

▢ 예산편성·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 철저 필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률이 97.8%로 높고,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불용액을 제외하면 이·전용 등 규모도 크지 않아 전체 집행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집행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용역비의 집행과정에서 예산편성·집행 관련 지침[94]에 따른 비목 구분 등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

용역비는 크게 일반용역비(210-14)와 연구용역비(260)로 구분되고, 연구용역비(260)는 연구의 내용·성격에 따라 다시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로 나뉨.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청은 이들 비목 간의 정확한 구분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로 인해 다음 표와 같이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인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95]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인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94)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95) 타 기관은 ‘역량평가’를 대부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등 다른 부서는 모두 이를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연구용역비(260) 전체 과제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계약방법
일반연구비(260-01)	**2025년도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	**287**	**25.2. ~25.12.**	**주식회사 휴먼컨설팅 앤메니지먼트**	**일반경쟁**
	심리분석면담을 위한 모범진술문(model statement) 개발	41	24.7.4. ~12.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의계약
	해외 주요국가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 체계 연구	20	24.5.31. ~11.3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의계약
	기술유출범죄 판례 분석을 통한 기술유출수사 역량 강화 방안 연구	44	24.6.14. ~12.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한계약
	검찰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연구	59	24.6.11. ~10.10.	주식회사 공감데이터	수의계약
	디지털증거 관리 거버넌스 개선 및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방안	36	24.6.25. ~12.2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자유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도입 및 해외 사례	30	24.7.10. ~25.7.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의계약
	검찰청 맞춤형 성인지 교육 표준 교안 개발	30	24.7.31. ~25.5.3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정책연구비(260-02)	피해자 관점 합리적 양형 개선 방안 연구	40	25.6.16. ~11.13.	한국피해자학회	수의계약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해외 법제와 정책 연구	25	25.6.9. ~11.3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및 입법론 연구	25	25.7.3. ~26.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의계약

자료: 법무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청이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한 그 외의 연구용역 또한 해당 과제명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정책연구'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이는 '각 부처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인 정책연구비(260-02)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판단됨.[96]

둘째, '인권센터 지원'과 같은 개별 내역사업 중에는 예산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인권센터'는 종전 각 검찰청의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2019년 개편한 것으로, 검사로 임명하는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지청은 인권보호담당관)이 해당 청의 인권센터를 담당하며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임.[97]

본 세부사업에는 각 청 인권센터의 인권상담사 수당 지급,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비품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기준 총 5억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다음의 표와 같이 실제 집행액은 3억 4,700만원으로서 집행률이 5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96) 정책연구비(260-02)는 예산편성지침 상 전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여 차년도 정책연구비 총액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이소요 발생으로 지출한도 보다 증액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감편성·집행을 위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예산집행지침 상으로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록·공개 의무, 행정안전부의 기관별 정책연구용역 점검 및 평가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할 수 있는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은 가급적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하여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4. 8.

97)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연도별 '인권센터' 지원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인권센터 등 지원 (인권상담사 수당 등)		457,480	120,884	457,480	253,562	320,480	273,624	320,480	258,591
인권 프로그램 등 교육 운영	일반 수용비	82,526	25,008	82,526	21,410	65,526	28,727	65,526	22,181
	임차료	51,000	42,123	51,000	33,354	51,000	33,631	51,000	29,527
	사업 추진비	56,000	17,207	56,000	20,626	56,000	19,051	56,000	15,028
인권담당부서 등 비품구입		118,968	55,870	118,968	68,740	94,968	33,651	94,968	21,465
합 계		**765,974**	**261,092**	**765,974**	**397,692**	**587,974**	**388,684**	**587,974**	**346,792**

자료: 법무부

그러나 다음 표와 같이 인권상담사의 상담 실적이 최근 1,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개선되고 인권교육프로그램도 종전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 시행되는 등, 인권센터의 각종 기능은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계속하여 50~6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예산이 실제 소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연도별 인권상담사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상담건수	585	445	239	231	824	999	1,072

자료: 법무부

<2025년도 인권프로그램 등 교육실시 현황>

구분	교육기간	교육(합숙)장소	수료인원
1회차(대구고검)	25. 4. 3. ~ 4.	청송 소노벨	경북지역 산불재난으로 취소
2회차(수원고검)	25. 5. 1. ~ 2.	원주 오크밸리	29명 (검사 6, 수사관17, 실무관6)
3회차(대전고검)	25. 6. 12. ~ 13.	천안 소노벨	28명 (검사 5, 수사관 15, 실무관 8)
4회차(부산고검)	25. 7. 3. ~ 4.	부산 한화리조트	29명 (검사 8, 수사관 12, 실무관 9)
5회차(서울고검)	25. 9. 4. ~ 5.	고양 소노캄	29명 (검사 4, 수사관 17, 실무관 8)
6회차(광주고검)	25. 11. 6. ~ 7.	여수유탑마리나	30명 (검사 5, 수사관 18, 실무관 7)

자료: 법무부

그 밖에도 여러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전문검사·수사관 육성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내역사업의 경우 실제 집행액은 2,000만원 내외에 불과함에도 매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본 세부사업에 포함된 개별 내역사업 중에는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다계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음.[98]

98) 아울러, 다음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수사역량 강화 교육'이나 '직원 직무교육훈련비' 등의 경우에도 그 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음.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내 일부 내역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전문검사·수사관 육성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150,000	16,693	150,000	25,708	150,000	19,580	150,000	18,204
전문수사역량 강화 교육	150,000	150,000	185,000	108,205	185,000	110,103	185,000	85,545
직원 직무교육훈련비	150,000	112,940	150,000	99,500	150,000	112,800	150,000	137,200

자료: 법무부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본 세부사업은 집행률이 전체 예산액 대비 99.0%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및 202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99]에서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바,[100] 향후 법무부와 검찰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예산편성·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99) '재정사업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각 중앙관서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당국이 그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평가 대상 세부사업을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등급으로 구분함. '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삭감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이 요구됨.

100) 참고로, 종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따르면 3회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당 제도가 2025년도부터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개편되면서 '우수·보통·미흡' 등의 등급이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등으로 변경되었음.

(11)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1335-306) 등

▢ 결산 개요

'형사부 등 수사지원'은 전국 검찰청의 각종 수사활동 일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및 수사관의 범죄수사 활동비, 수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경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형사부 등 검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운영하는 사업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액은 856억 6,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억 4,500만원 및 이·전용 등 감액 6억 8,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51억 2,800만원이며, 이 중 809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을 이월, 40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음.

<형사부 등 수사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형사부 등 수사지원	47,838	85,664	145	△681	-	85,128	80,983	65	4,078	87,824
• 수사보조인력 운영	24,143	24,143	-	△1,286	-	22,857	22,744	-	113	27,653
• 수사활동 일반	23,014	60,840	145	604	-	61,589	57,565	65	3,959	59,490
•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339	339	-	-	-	339	339	-	-	339
• 호송 · 인치 업무	342	342	-	-	-	342	336	-	6	342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는 공공부문에서의 구조적 민관유착 비리 등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증거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위하여 자금추적 및 회계분석 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액은 61억 2,4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9,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60억 3,400만원이며, 이 중 5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4,858	6,124	-	△90	-	6,034	5,738	-	296	5,998
·민관유착비리 등 수사	4,018	5,284	-	△90	-	5,194	4,903	-	291	5,158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지원	840	840	-	-	-	840	835	-	5	840

▢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비 과다편성 개선 필요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내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가 2025년도 기준 3억 51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음. 이는 금융회사 등이 검찰의 요구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보 제공의 내용·목적·일자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01]에 따라 그 비용을 검찰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102]

또한, 이러한 통보비용은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및 ‘검찰청 운영기본경비(7018-252)’에도 2025년도 기준으로 각각 9,040만원 및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2025년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예산의 전체 총액은 4억원임.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실제로는 다음의 표와 같이 당초 예산액 대비 38.1%에 해당하는 1억 5,226만원만을 집행하여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집행부진은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것으로서, 그에 대한 지적 및 예산 삭감이 있었음에도 같은 문제가 여전히

---

1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102)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매년 반기별로 통보비용 청구 현황을 취합하여 검찰 등에 송부하고, 검찰 등이 그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고 있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산출하는 예산 내역이 당초부터 실소요에 비해 과다하기 때문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 분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335-306)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7018-252)	합 계
2021	예산액	435,100	200,000	75,000	710,100
	집행액	-	172,656	-	172,656
2022	예산액	435,100	200,000	75,000	710,100
	집행액	61,419	25,062	-	86,481
2023	예산액	435,100	200,000	75,000	710,100
	집행액	-	169,407	-	169,407
2024	예산액	305,100	140,000	4,500	449,600
	집행액	92,445	66,060	-	158,504
2025	예산액	305,100	90,400	4,500	400,000
	집행액	117,243	35,021	-	152,264

자료: 법무부

구체적으로 보면, 법무부와 검찰청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금융거래정보 통보건수를 22만 5,550건으로, 건당 통보비용을 우편 기준 1,50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설정하여 예산액을 산출하였음. 그러나 실제 2025년 전체 통보건수는 6만 8,113건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당 통보비용이 500원 수준으로 저렴한 '모바일 통보' 비중이 12.43%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로 인하여 당초 예산액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실적 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연도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

(단위: 건, %)

연 도	전체 통보(A)	우편 통보	모바일 통보(B)	B/A
2021	49,544	49,333	211	0.43
2022	67,342	62,798	4,544	6.74
2023	106,695	98,167	8,528	7.99
2024	80,548	73,462	7,086	8.80
2025	68,113	59,650	8,463	12.43

자료: 법무부

위 통보비용과 같은 일반수용비(210-01)는 통상적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행정사무비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물품 구입 등을 위해 편성되는 비목이므로, 그 용도가 다양하고 활용 범위가 넓다는 특징이 있음.[103] 따라서 일반수용비(210-01)를 과다하게 편성할 경우, 예산 낭비의 소지가 커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악용한 행정편의적 예산집행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침해될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2025년도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및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사업 등의 일반수용비(210-01)는 저조한 통보비용 집행실적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는 과다편성으로 인해

103) 이에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p.221
나아가 위 지침에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으로 이·전용하였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발생한 대규모의 집행 잔액이 행정사무 비용이나 소규모 물품 구매 등 다른 목적으로 모두 지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청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을 실소요보다 과다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그 잔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 예산 과다편성 개선 필요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104]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음.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105]에 따라 '수사기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

104)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0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①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
② 수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1.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2.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수사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③ 수사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9,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106]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 예산도 1,000만원 이상 편성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회의 개최 예산은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연례적으로 일정 규모의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전부터 개최실적이 크게 부진하였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실적부진이 지적되며 예산액이 1억 5,600만원으로 감액된 바도 있음. 그럼에도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대비 8.0%에 불과한 1,246만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감액 이후의 현재 편성 금액도 여전히 실제 소요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107]

---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10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107)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사법경찰관 신청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어 영장심의위원회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경찰 신청 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최근 5년간 영장심의위원회 예산집행 등 실적>

(단위: 천원, %,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803,000	803,000	223,000	156,000	156,000
집행액	**10,572**	**4,672**	**5,520**	**6,450**	**12,461**
집행률	**1.3**	**0.6**	**2.5**	**4.1**	**8.0**
개최실적	5	2	3	3	6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협의회는 당초에도 부진했던 회의 개최 및 예산집행 실적이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사심의위원회는 2022년, 2023년 및 2025년과 같이 회의 실적이 전무하여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음.

<최근 5년간 수사기관협의회 예산집행 등 실적>

(단위: 천원, %,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	95,000	95,000	95,000	95,000
집행액	**-**	**19,239**	**40,671**	**39,593**	**24,293**
집행률	**-**	**20.3**	**42.8**	**41.7**	**25.6**
개최실적	12	6	15	9	7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최근 5년간 수사심의위원회 예산집행 등 실적>

(단위: 천원, %,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26,100	26,100	26,100	10,100	10,100
집행액	**14,751**	**-**	**-**	**14,386**	**-**
집행률	**56.5**	**-**	**-**	**142.4**	**-**
개최실적	3	-	-	3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영장심의위원회, 수사기관협의회 및 수사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련 예산은 지속적인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실적 및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향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집행 규모가 단기간에 확대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매년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이들 예산은 주로 일반수용비(210-01) 및 사업추진비(240-01)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5회계연도 '형사부 등 수사지원' 세부사업의 비목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회의 개최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일반수용비(99.9%) 및 사업추진비(100.0%)는 불용 없이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과다편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집행 잔액을 행정사무 비용

이나 소규모 물품 구매(일반수용비) 또는 다른 회의·간담회 등을 위한 다과·식사(사업추진비) 등과 같이 동일 비목 내의 다른 용도로 모두 지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바, 회의 개최를 위해 편성되고 있는 예산이 실제로는 매년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영장심의위원회 등의 실제 개최 수요와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바. 국제법무국

(1)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1431-302)

▢ 결산개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은 국제교류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인 통합양상에 따라 국제사법회의,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거래규범 성안 과정부터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 및 국내 도입·이행을 추진하며, 통상 투자·협정 제·개정 시 법률자문·협상지원을 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액은 7억 3,400만원이고, 이 중 6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800만원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	734	734	4	-	-	734	684	22	28	842

자료 : 법무부

또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ODA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법제 모델을 수출·전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 투자환경 및 현지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인 2,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억 7,400만원이며, 이 중 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00만원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	150	150	24	-	-	174	152	-	22	216

자료 : 법무부

▢ 연구용역의 연례적인 연말발주 실태 개선 필요

법무부는 국제법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 지원」,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사업에서 연구용역(260-02목)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법무부의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회계연도 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연구용역비를 이월한 후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제법무국 최근 3개년 연구용역 중 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연구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2023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 지원 (1431-301)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유아인도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10	8	2	2023. 01.02.	2023. 02.28.
		조정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10	7	3	2023. 12.26	2024. 03.26.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431-302)	캄보디아 분쟁해결기구의 효과적 운영방안	10	7	3	2023. 12.22.	2024. 03.25.
2024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431-302)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20	16	4	2024. 11.21.	2025. 10.31.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제도 분석을 통한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20	-	20	2024. 12.27	2025. 04.30.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 지원 (1431-301)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친 영향 연구	20	16	4	2024. 10.18.	2025. 03.31.
2025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 지원 (1431-301)	EU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기본법의 비교 분석 등에 관한 연구 계약체결 의뢰	15	7.5	7.5	2025. 12.01.	2026. 02.28.
		UNCITRAL 자동계약 모델법 국내 도입 가능성 연구 계약체결 의뢰	15	-	15	2025. 12.01.	2026. 02.28.

자료 : 법무부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2024년 12월 및 2025년 12월에 연구용역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개별 사업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이라기보다는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및 발주가 구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2조[108] 및 제3조[109]는 세출예산을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그 예외로서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사고이월제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

그러나 법무부의 경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용역을 12월에 발주하고 그 계약기간을 다음 연도 1~4월까지 설정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계약을 체결한 해당 연도에는 계약액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108)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109)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절차 등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연도 예산을 사실상 다음 연도 사업비처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편성된 회계연도 초부터 연구과제 선정, 연구계획 수립 및 계약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연말에 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의 대부분을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하거나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 또는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식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용역 연말 집중 발주 및 연례적인 이월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제법무국 기본경비(7011-266)

▢ 결산 개요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사업’은 국제법무국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요금,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액은 3억 6,200만원이고, 3억 3,7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6억 9,900만원이며, 이 중 6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500만원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362	362	-	337	-	699	654	10	35	362

자료 : 법무부

▢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개최경비의 기본경비 집행 및 예산 전용의 적정성 검토 필요

법무부는 “검찰청운영 기본경비(7018-252)”사업에서 3억 3,700만원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7011-266)”사업으로 전용하여 예산편성 시 기재되지 않은 사업인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이하 “ICN”)[110] 카르텔 워크숍 관련 행사 대행비로 집행하였음.

<2025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중 전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전용일	~에서		~으로		금액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7.22.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7018-252)	자산 취득비 (430-01)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임차료 (210-07)	166	국제경쟁네트워크 (ICN) 카르텔 워크숍 개최 비용 부족
				일반 용역비 (210-14)	171	

자료: 법무부

구체적인 일반용역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행사 대행에 2억 7,000만원, ② 카르텔 워크숍 프리세션 행사 지원에 5,000만원, ③ 서울 카르텔 워크숍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에 800만원, ④ 조달수수료에 200만원 등 총 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동

110) 국제경쟁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는 전 세계 경쟁당국(반독점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카르텔 수사, 수사기법·정보교환, 국제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에 출범한 비정부·비공식 국제 협의체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등 143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 중임. ICN은 총 5개의 워킹그룹(① Cartel, ② Advocacy, ③ Agency Effectiveness, ④ Merger, ⑤ Unilateral Conduct)을 중심으로 운영됨.

사업은 당초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라, 2025 회계연도 중 예산 전용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된 신규 내역사업임.

〈 카르텔 워크숍 개최 일시 및 장소, 주최국 〉

연도	개최일	개최장소	개최국가 (도시)	비고
2018	10월 15일 ~ 10월 18일	이스라엘 반독점청 지정 행사장	이스라엘 (텔아비브)	–
2019	카르텔 워크숍 대신 연차총회 등 개최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개최			
2022	12월 5일 ~ 12월 8일	오클랜드 현지 컨벤션 및 행사 시설	뉴질랜드 (오클랜드)	–
2024	10월 2일 ~ 10월 4일	바르셀로 레포르마 호텔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외여비로 참석, 2025 서울회의 개최 홍보 * ’23. 8. 국제법무국 신설
2025	11월 12일 ~ 11월 14일	JW 메리어트 호텔	대한민국 (서울)	법무부 국제법무국에서 개최하여 행사 주관

자료 :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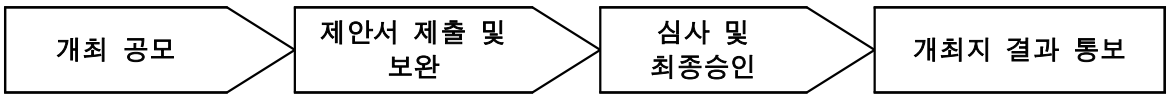
ICN 카르텔 워크숍은 독점·담합 등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기법, 증거수집 및 제재수단 등을 논의하고 카르텔 탐지·수사기법에 관한 노하우 공유 및 국제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수사 및 집행과 관련된 세계 최대 공정거래법 분야 국제회의로서, ICN 카르텔 워크숍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국제법무국장, 국제법무정책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이 참여하는 특정 과에 국한되지 않은 국제법무국 차원의 신규 사업이므로 국제법무국 기본경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법무부의 ICN 카르텔 워크숍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이 국제법무국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신규 국제행사 개최경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회계연도 중 예산 전용을 통하여 기본경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사전 편성 및 국회 심의 원칙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제법무국 국외여비를 통해 ICN 카르텔 워크숍 참석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에는 국제법무국 차원에서 카르텔 워크숍을 주최하게 되었음. 동 행사의 일반용역비 집행액은 총 3억 3,000만원으로, 그 규모가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총 예산(3억 6,000만원)과 유사한 수준임.

[카르텔 워크숍 개최 절차 및 경과]



※ 카르텔 워크숍 개최지 공모 및 선정 시기는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개최 전년도에 공모를 시작하여 개최지 결정까지 4~5개월 시간 소요

- ('25년 카르텔 워크숍 유치 경과) 2024. 중순. 카르텔 워크숍 회의 개최 의향 타진 공문 접수 → 2024. 8. 법무부-공정위 공동개최 추진, 제안서 제출(유럽, 서남아시아, 중동 등 4개국 개최 의향 표명) → 2024. 10. 멕시코시티 카르텔 워크숍에서 韓 우수사례 발표 및 개최 지지 독려 → 2024. 12. ICN 운영위원회에서 서울 개최 확정

법무부는 202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의 서울 유치를 위해 2024년 8월경 제안서를 ICN에 제출하였고, 2024년 12월경 서울 개최가 확정되었는바 2025년 4월 및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가능하였으나 편성하지 않고 2025년 7월 전용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였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응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신규 사업의 재원을 사후적인 전용을 통하여 마련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예산안 편성 시 국내 개최 가능성이나 상당한 규모의 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행사 개최 추진 상황·필요 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사전 편성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회의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전용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본경비에서 사업성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사. 교정본부

(1)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 결산 개요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는 전국 교정기관 노후시설 개선공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등 시설·장비를 운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855억 9,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65억 2,000만원 및 이·전용 등 감액 55억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66억 1,600만원이며, 이 중에서 837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85,596	85,596	6,520	△5,500	-	86,616	83,719	-	2,897	91,557
·교정시설 유지보수	14,338	14,338	-	-	-	14,338	14,336	-	2	15,641
·교정시설 개선공사	45,730	45,730	6,429	△2,000	-	50,158	49,291	-	867	53,443
·교정시설 장비개선	25,528	25,528	92	△3,500	-	22,120	20,092	-	2,028	22,473

▢ 면밀한 이·전용 등 예산의 계획적 집행 필요

「국가재정법」 제47조[111]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산의 이용(移用)은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서 융통하는 것임. 이러한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 또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또한, 동법 제46조[112]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은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목 등의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임. 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음.

---

111)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11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용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45조[113]에서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법무부는 2025년 10월 22일, 동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실시설계비(420-02) 예산 31억 5,000만 원 중 10억 원을 “출입국관리” 프로그램인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1232-300)” 사업의 공공요금(210-02) 비목으로 자체이용하였음. 해당 이용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의 인상, 시설 확장 및 2025년 여름 폭염으로 냉방 전력 소요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한 공공요금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5년 12월 22일, 교정시설 운영 과정에서 다시 대규모 공공요금 부족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앞서 이용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던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1232-300)’ 사업에서 그 증액 금액과 동일한 규모인 10억원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사업의 공공요금 비목으로 재차 이용하였음. 이러한 재이용의 사유로는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단가의 지속적인 인상과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용수 및 냉방기 사용량 급증이 제시되었음.

11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교정활동 및 출입국활동 프로그램 간 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0251022)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 (1531-302)	420-02	1,000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210-02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 상승, 시설확장 및 '25년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냉방 소요 급증 등으로 발생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자체이용 (20251222)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320-09	1,000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10-02	수용시설 과밀화 심각한 상황에서 폭염 등 기후변화와 물 사용 및 냉방기 사용 급증 및 상하수도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단가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 자료: 법무부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2025년 10월 교정 활동 예산(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10억 원을 출입국 활동 예산으로 이용하였다가, 12월에 다시 출입국 활동 예산을 교정 활동 예산(교정시설수용관리 사업)으로 되돌린 것임.

그런데 수용인원 증가는 연중 점진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라는 점, 폭염 등으로 인한 냉방 소요 증가 및 공공요금 부족 현상은 여름철부터 발생한 사유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예산의 부족은 재정연도 전반에 걸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교정활동 프로그램 내 단위사업 간 재원을 조정했다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의 이용을 거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재정 소요만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예산을 이용 감액한 후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재차 이용을 통하여 증액한 것은 재정 운용의 계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법무부는 각 프로그램의 소요를 유기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 소요가 예상될 경우, 다른 입법과목(프로그램) 간 이용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용 여지를 면밀하게 탐색하는 등 체계적인 이·전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교정시설 및 출입국관서의 공공요금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수용시설 과밀화 요인과 공공요금 단가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의 계획적 집행 및 이·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 결산 개요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은 수용자의 일상물품, 급식비, 피복비 등과 그 밖에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수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의 예산액은 2,903억 4,800만원이고, 이·전용 등에 따른 증액분 230억 5,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133억 9,800만원이며, 이 중 3,132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90,348	290,348	-	23,050	-	313,398	313,203	-	195	302,342
·수용관리비	146,512	146,512	-	11,696	-	158,208	158,115	-	93	154,447
·공공요금 등 수용관리 지원	143,836	143,836	-	11,354	-	155,190	155,088	-	102	147,895

▢「제2차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법정 기한 준수 필요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114]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기본계획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을 포함하여 적정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수형자 교화 프로그램 등의 추진방향, 수용자 인권 증진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115]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 제1차 기본계획은 2020. 11. 26.에 수립이 완료되었음.

---

1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경과>

구 분	추진 내용
2019. 4.	형집행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019. 11.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T/F 팀 구성
2020. 2.~7.	제1차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
2020. 7.~9.	관계 부처 및 교정개혁위원회 의견 수렴
2020. 10.	기본계획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2020. 11.	기본계획 협의체 회의 개최 및 확정

* 자료: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제1차 기본계획의 효력 만기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차기 계획인 제2차 기본계획(2026~2030)은 2026년이 도래하기 전에 수립 및 확정될 필요가 있었음. 그러나 법무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제1차 기본계획이 만료되고 수개월이 경과한 2026. 3. 24.에야 제2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음.

법무부는 기본계획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2025. 12. 19. 대통령 업무보고의 내용 및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수립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교정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이에 기초하여 형 집행 및 수용자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업 수행의 전제가 되는 기본계획이 공백 없이 이어지는 것이 필요함.

법무부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용역 계약을 2025. 3. 26.에 체결하여 2025. 10. 17.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는바(용역기간 200일), 향후에는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타 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조기에 착수하는 등, 법정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본계획이 적시에 수립·시행되도록 수립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문제

법무부는 2025회계연도에 동 세부사업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용자 급식비·의료비 등 구호 및 교정비(320-06)에서 125억원, 수용시설 공공요금(210-02)에서 102억원, 수용자 호송을 위한 여비(220-01)에서 3억 5천만원 등 총 230억 5,000만원을 타 세부사업으로부터 이·전용받아 증액하였음.

이는 급식비·피복비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당초 편성된 예산 범위를 넘어 타 사업비로부터 충당한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전용은 2025회계연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 2021년 204억원, 2022년 262억원, 2023년 320억원, 2024년 305억원 등 매 회계연도마다 200억원 이상 규모의 이·전용을 통한 증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으로의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5,185	21,695	19,560	16,830	10,200
국내여비(220-01)	190	-	851	1,100	350
구호 및 교정비(320-06)	5,013	4,500	11,600	12,561	12,500
합계	20,388	26,195	32,011	30,491	23,050

* 자료: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예산의 이·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및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예산 집행상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제도이나, 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세출예산의 목적별 구속력에 변경을 가하는 예외적 조치임.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사기준으로 ‘보충성’ 원칙을 규정하여,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하도록 함.[116]

매년 같은 사업에서 200억원을 상회하는 이·전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해당 이·전용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하는 보충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정례적인 부족분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는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1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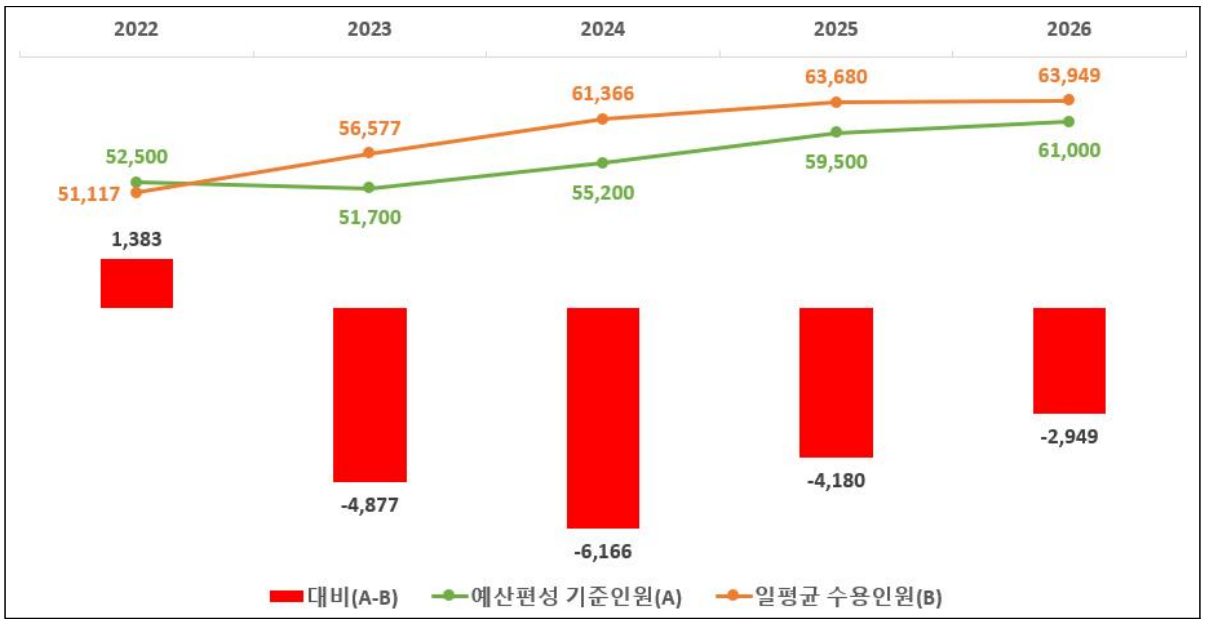
법무부는 이러한 이·전용에 대하여, 수용인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급식비·피복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며, 2021년 및 2022년은 의료폐기물 증가, 집단감염에 따른 격리 이송, 취사장 폐쇄에 따른 도시락 지급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관련 비용으로 이·전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수용자 급식비·피복비 등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인원”에 “수용자 1인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는 구조인바, 실제 수용인원이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원의 부족이 발생하게 됨.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교정시설의 예산편성 기준인원과 일평균 수용인원을 비교하면, 2023년 이후 실제 수용인원이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음. 2022년에는 예산편성 기준인원(52,500명)이 실제 일평균 수용인원(51,117명)을 상회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인원이 일평균 수용인원에 미달하고 있는데 그 격차는 2023년 4,877명, 2024년 6,166명, 2025년 4,180명, 2026년 2,949명 수준임.

<최근 5년간 예산편성 기준인원 및 실제 일평균 수용인원>

(단위: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편성 기준인원(A)	52,500	51,700	55,200	59,500	61,000
일평균 수용인원(B)	51,117	56,577	61,366	63,680	63,949
대 비(A-B)	1,383	△4,877	△6,166	△4,180	△2,949



* 자료: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급식비·피복비 등 수용인원에 비례하여 소요가 결정되는 필수경비의 경우, 이러한 인원의 차이는 그대로 예산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바, 동 세부사업으로의 대규모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예산편성 기준인원이 실제 수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하회함에 있음.

예산편성 기준인원이 실제 수용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향후 급식비 등 필수경비의 편성 단계 과소계상과 그에 따른 이·전용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예산의 목적별 구속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이·전용 재원을 제공하는 타 세부사업의 정상적 집행에도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수용인원 및 예산편성 기준인원과의 격차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급식비 등 수용인원과 연동되는 필수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실제 수용 규모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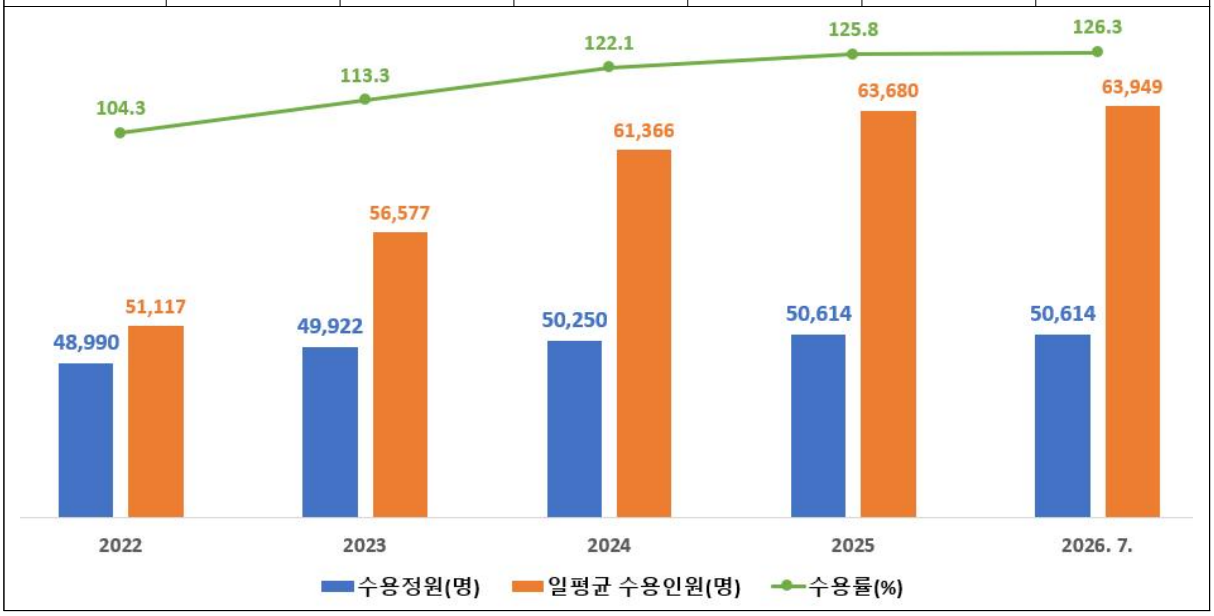
이를 통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를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이·전용에 의존하는 예산 집행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임.

한편, 일평균 수용인원이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현상은 단순한 예산 편성상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음.

<연도별 수용정원 및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명, %)

연도	수용정원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률	수용 내용		
				수형자	미결수용자	기 타
2022	48,990	51,117	104.3	32,610	17,736	771
2023	49,922	56,577	113.3	35,007	19,957	1,613
2024	50,250	61,366	122.1	38,473	21,331	1,562
2025	50,614	63,680	125.8	40,564	21,648	1,468
2026. 7.	50,614	63,949	126.3	41,765	20,684	1,500



* 자료: 법무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일 평균 수용인원은 매년 2천여 명에서 5천여 명 가까이 증가하는 반면, 교정시설의 수용정원 증가폭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바, 수용인원 증가는 급식·피복 등 처우 관련 예산의 부족을 넘어 전반적인 수용자 처우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기본적 처우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정·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시설 내 안전사고 및 계호 부담 증가 등 부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예산편성 기준인원의 현실화와 병행하여 수용시설 확충, 형 집행 및 수용관리 정책의 개선 등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교정교화(1532-301)

▢ 결산 개요

‘교정교화’는 인성교육, 성폭력·중독사범 치료프로그램 등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후 교화시설·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14억 5,700만원, 이·전용 등 감액 2억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12억 5,700만원이며, 이 중 112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교정교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교정교화	11,457	11,457	-	△200	-	11,257	11,227	-	30	13,260
•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지원	9,150	9,150	-	△198	-	8,952	8,928	-	24	9,913
• 교화시설 장비개선	2,307	2,307	-	△2	-	2,305	2,299	-	6	3,347

▢ 가족만남의 시간 등 사회적 처우 활성화 필요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시설 내 처우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117]에 따라 가족만남의 집, 가족 만남의 시간 등 사회적 처우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가족만남의 집”은 형의 집행을 받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물에서 수형자와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가족만남의 시간”(구 가족접견)은 노역 수형자를 제외한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내 차단막이 없는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임.[118]

한편, 법무부는 또한 수형자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시설 등에 대한 “사회견학”과 농촌 취약농가 일손돕기 등 “사회봉사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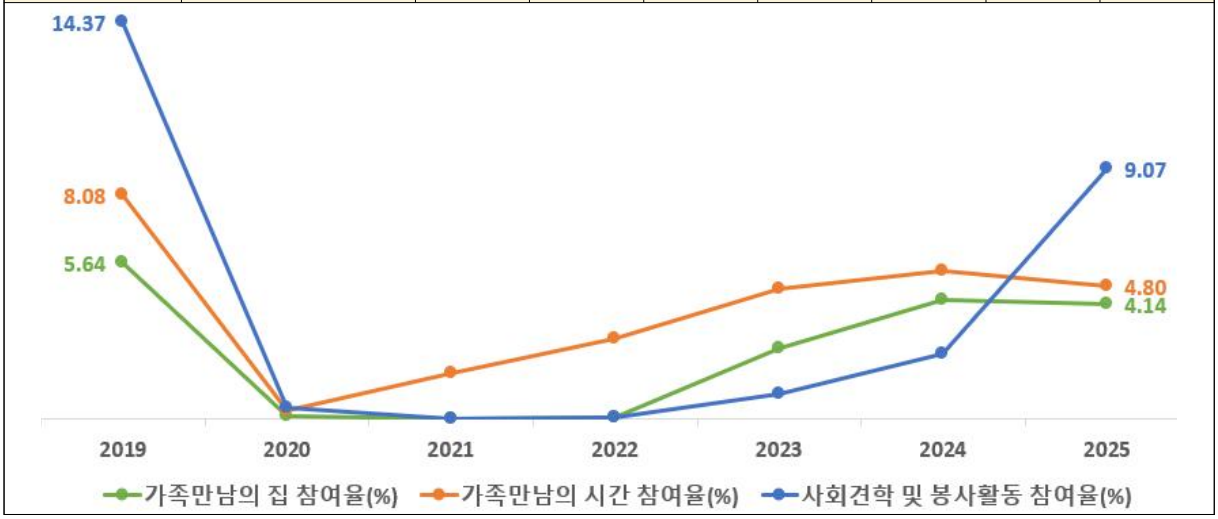
1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118) 그 밖에 여러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의 특정 장소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가족만남의 날” 제도도 있었으나 “가족만남의 날”은 여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서 서로 다른 가족 간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으므로, 현재에는 잘 실시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 인원은 2,987명으로 전년(2024년) 3,199명 대비 212명 감소하였고, 일평균 수용인원 대비 이용 비율도 4.8%로 전년 5.4% 대비 0.6%p 하락하였음. 특히 2025년에는 일평균 수용인원이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가족만남의 시간의 이용 인원과 이용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됨.

〈가족만남의 집 등 이용 · 참여 비율(2021년~2025년)〉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일 평균 수형자 인원(A)		33,813	33,377	33,548	32,610	35,007	38,473	40,564
1일 평균 수용자 인원(B)		53,156	52,476	51,657	50,346	54,964	59,774	62,212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C)	1,908	27	0	5	895	1,662	1,680
	이용 비율(C/A)	5.6%	0.1%	0.0%	0.0%	2.6%	4.3%	4.1%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 인원(D)	4,295	158	859	1,454	2,588	3,199	2,987
	이용 비율(D/B)	8.1%	0.3%	1.7%	2.9%	4.7%	5.4%	4.8%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인원(E)	4,859	134	0	11	305	896	3,680
	참여 비율(E/A)	14.4%	0.4%	0.0%	0.0%	0.9%	2.3%	9.1%



* 주1: 1일 평균 수형자 및 수용자 인원: 노역수형자 제외
* 주2: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교정시설 출입 제한으로 가족만남의 집 등 사회적 처우가 일부 중단되었음
* 자료: 법무부

나아가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 비율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교정시설 내·외 출입이 제한되면서 실적이 급감하기 이전인 2019년 수준(8.1%)에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5.4%까지 상승하였으나, 2025년 다시 4.8%로 떨어져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치고 있음.

반면,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경우 가족만남의 시간과는 달리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음.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비율이 2021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며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온 것과 달리,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은 2021년 0.0%, 2022년 0.0%, 2023년 0.9%, 2024년 2.3%로 2024년까지도 참여 비율이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그러다가 2025년에는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비율이 크게 반등하였음. 2025년 현재에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참여 비율 14.4%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참여 비율이 9.1%(참여인원 3,680명)로 상승하였음.

이처럼 사회견학·봉사활동이 2025년에 들어 회복세로 전환된 것과 달리,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오던 가족만남의 시간은 2025년 오히려 이용 실적이 감소하였는바, 사회적 처우 전반이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가족 유대 관련 프로그램의 회복세만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음.

가족만남의 시간과 같이 수형자와 가족 간의 유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처우는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

관련 연구[119]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의 가족 만남 등 적극적인 사회적 처우는 출소 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가족과의 유대를 지속시켜 가족 해체를 방지하며, 나아가 재범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형자와 가족 간의 만남은 그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용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족 유대 관련 처우의 이용 비율이 정체·감소하는 것은,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사회적 처우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무부는 수용 규모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가족 만남의 시간 등 가족 유대 관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전반의 참여 여건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119) 허경미,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실태 및 개선 방향", 교정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94호, 2022, pp.41-42.; 민수홍,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수형자의 가족관계: 가족접견, 서신교환, 구금 후 가족관계 변화", 교정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79호, 2018., p.150.; 신연희, "족기능이 수용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족접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제9권 3호 : 279-305, 2015, pp.284-285.

▢ 정신질환자·이상동기범죄자 등 심리치료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는바,[120] 법무부는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해소와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등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성폭력·마약·알코올·정신질환·아동학대·이상동기 범죄 수형자 등에 대하여 유형별 맞춤형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전체 심리치료프로그램 실적은 2019년 3,122명에서 2025년 4,33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스토킹사범(2022년 시행)·가정폭력사범(2021년 시행) 등 신규 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교정시설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명)

과정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성폭력사범	2,306	1,804	2,213	2,783	3,040	3,000	3,154
아동학대사범	45	47	40	54	99	96	116
스토킹사범	–	–	–	21	117	369	493
가정폭력사범	–	–	3	18	49	56	82
정신질환자	423	350	314	245	308	273	193

1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과정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우울특화	–	–	36	88	89	104	94
규율위반자	332	149	148	228	238	240	200
이상동기범죄자	16	6	7	–	9	7	3
합계	3,122	2,356	2,761	3,437	3,949	4,145	4,335

* 자료: 법무부

그러나, 전체 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에도 치료적 처우의 필요성이 특히 큰 정신질환자와 이상동기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 실적은 오히려 저조하거나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정신질환 수형자의 증상 완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심화과정과 개방형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바, 개방형과정은 2019년 112명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5년 153명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으나, 심화과정은 감소 추세를 보여 2022년 166명에서 2025년 40명으로 75.9% 감소하였음.

<정신질환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현황>

(단위 : 명)

과정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심화과정	311	261	230	166	222	183	40
개방형과정	112	89	84	79	86	90	153
합계	423	350	314	245	308	273	193

* 자료: 법무부

그 결과,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전체 실적도 2022년 245명에서 2025년

193명으로 21.2% 감소하였음.

반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2년 5,622명에서 2025년 6,345명으로 12.8% 증가하였으며, 특히 조현병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2년 465명에서 2025년 673명으로 44.7% 증가하였음.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미결수용자 등이 위 수용자 수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신질환 수용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치료적 처우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신질환수용자 병명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병 명														
	계	F00–F09*	F10–F19	F20–F29		F30–F39		F40–F48	F50–F59		F60–F69	F70–F79	F80–F89	F90–F98	기타
		치매 등	물질 관련 장애	조현병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불안장애·기타 신경증적 장애	불면증	기타	성격장애	지능장애	발달장애	ADHD·틱 등	
2022	5,622 (100)	128 (2.3)	159 (2.8)	465 (8.3)	192 (3.4)	644 (11.5)	1,403 (25)	739 (13.2)	1,372 (24.4)	63 (1.1)	57 (1.0)	25 (0.4)	1 (0.0)	46 (0.8)	328 (5.8)
2023	6,094 (100)	131 (2.1)	205 (3.4)	594 (9.7)	219 (3.6)	630 (10.3)	1,402 (23.0)	1,003 (16.5)	1,443 (23.7)	32 (0.5)	48 (0.8)	9 (0.1)	10 (0.2)	55 (0.9)	313 (5.1)
2024	6,274 (100)	119 (1.9)	149 (2.4)	611 (9.7)	194 (3.1)	703 (11.2)	1,305 (20.8)	1,060 (17.0)	1,561 (24.9)	78 (1.2)	58 (0.9)	17 (0.3)	13 (0.2)	43 (0.7)	363 (5.7)
2025	6,345 (100)	93 (1.5)	180 (2.8)	673 (10.6)	192 (3.0)	772 (12.2)	1,301 (20.5)	988 (15.6)	1,726 (27.2)	49 (0.8)	41 (0.6)	25 (0.4)	20 (0.3)	47 (0.7)	238 (3.8)

* 주: FXX는 정신질환 상병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각 질환명 코드]를 의미
* 자료: 법무부

아울러, 이상동기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실적 또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법무부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2022년 실시 인원이 전무하였고 2025년에도 3명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함. 이는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경찰청이 2023년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한 이후 파악된 발생 건수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연평균 약 42.3건에 이르며,[121]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심에서 선고된 이상동기 범죄가 3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122]

종합하면, 정신질환 수용자와 이상동기 범죄는 증가·지속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실적은 감소하거나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정신질환 및 이상동기범죄의 특성상 적정한 심리치료 등 치료적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중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심화과정이 크게 감소한 점, 이상동기범죄자 프로그램의 경우 실시 인원 자체가 극소수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심리치료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등 체계 전반의 개선

121) 권민석, "'이상 동기 범죄' 최근 3년간 매년 40건 안팎 발생", YTN, 2026. 5. 5.,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52029187330, 최종검색일: 2026. 8. 3.

122) 윤정숙,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p.89.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무부는 정신질환 수용자 및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정신질환자 심리치료프로그램과 이상동기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대상자 선정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 범죄예방정책국

(1) 소년원생수용(1632-300)

▢ 결산 개요

‘소년원생수용’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대행 소년원에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하며,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창업비전센터 운영을 통해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269억 7,100만원 중 267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소년원생수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년원생수용	26,971	26,971	-	-	-	26,971	26,733	-	238	29,183
・소년원생수용	26,971	26,971	-	-	-	26,971	26,733	-	238	29,183

▢ 소년원학교 교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자격 교원 인력 충원 필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123]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124]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서울·대구·전주·안양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하여, 소년원 입원 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123)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12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교원 등)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소년원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중학교 1,122시간, 고등학교 1,156시간 이상)의 수업을 운영하며,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최소 8개 필수 보통교과와 인성교육·컴퓨터 등 특성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음.

<소년원학교 주요 교과목 현황>

구 분		주요 교과목	비 고
중학교	보통 교과(8)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음악/미술, 한문 등 8개 필수 과목	· 보통/특성화/창체 수업 비율 : 40/40/20 · 특성화 교과 수업 비율 : 인성(80),컴퓨터(20) ※ 70:30까지 조정 가능
	특성화 교과	인성교육(직업교육 포함), 컴퓨터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 자치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고등학교	보통 교과(9)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음악/미술, 한국사, 한문 등 9개 필수 과목	
	특성화 교과	인성교육(직업교육 포함), 컴퓨터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 자치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 자료: 법무부

그런데, 2026년 6월 기준 4개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 담당 인력은 총 37명이나, 이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전문경력관은 13명, 공무직은 3명으로, 전체의 43.2%에 그치고, 나머지는 보호직 공무원 7명, 외부 파견교사 4명, 외부 전문강사 10명으로 충원되어 운영됨.

이에 반하여, 4개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 대상 학생은 총 15개 학급의 443명인바, 교과교육 담당 인력 1인당 학생 수는 약 12명에 이르며, 교사 자격을 가진 전문경력관 등 자격 교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소년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3명, 안양소년원의 경우 41명에 이름.

<소년원학교 기관별 교과교육 담당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전문경력관	보호직	공무직	파견교사	외부 전문강사
서울	11	5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2 (한문,한국사)		2 (체육)	2 (음악,미술)
대구	8	1 (사회,한국사)		3 (국어,수학,영어,과학)		4 (체육,한문,음악,미술)
전주	8	4 (국어,수학,영어,사회,한문,한국사)	1 (체육)			3 (과학,음악,미술)
안양	10	3 (국어,수학,사회)	4 (음악,한국사,한문2)		2 (과학,체육)	1 (영어)
합계	37	13	7	3	4	10

* 주: 2026. 6. 기준
* 자료: 법무부

<소년원학교 학급 수 및 학생 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학급수	현재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중1	중2	중3	소계	고1	고2	고3
서울소년원	5	166	57	1	25	31	109	55	30	24
대구소년원	3	64	18	1	4	13	46	25	9	12
전주소년원	3	90	35	0	8	27	55	31	15	9
안양소년원	4	123	48	1	13	34	75	40	24	11
합 계	15	443	158	3	50	105	285	151	78	56

* 주: 2026. 6. 기준
* 자료: 법무부

또한, 교과교육 인력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소년원학교의 경우 교원 한 명이 2개 이상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구소년원의 경우 공무직 교사 3명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소년원 학생은 일반학교에서의 부적응·학업중단 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보다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지도가 요구되나,[125] 교과교육의 상당 부분이 교사 자격 없는 보호직 공무원이나 신분이 불안정한 외부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총원 443명에 이르는 소년원학교의 교육 규모에 비추어 교사 자격을 갖춘 교수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교사 자격을 가진 전문경력관·공무직이 교육을 전담해야 하나, 교수 인력 부족으로 보호직·외부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소년원학교의 자격 교원 확보가 어려운 배경에는 소년원학교 교원에 대한 처우 미비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년원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교원(전문경력관 등)은 보호소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그 경력·연수 및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126] 같은 법 시행령은 직무수

125) 강태경·유진,「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1., p.53.

126)**「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0조(교원 등)**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

행 및 연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경력 산정·호봉 획정 등 보수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127]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 3 의견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소년법 제3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그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2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어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62조(교원의 연수)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거나 법무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해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감 또는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실제로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석·박사 학위 취득를 취득하거나 임용 전 경력을 인정받아 기산호봉에 반영되는데, 소년원학교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인 교원은 이러한 적용을 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 처우를 받아온바, 이는 소년원학교의 자격을 갖춘 교원의 확보·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 교사 경력 관련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결정요지>[128]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3호로 정된 것)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긍정

-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므로(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참조),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 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 한편 피청구인이 대통령령 제정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

따라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호봉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교사 자격을 갖춘 일반직 교원을 충원함으로써 소년원학교 교과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28)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2) 갱생보호활동(1633-300)

▢ 결산 개요

‘갱생보호활동’은 무의탁·무연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창업·주거·긴급지원, 가족희망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실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468억 5,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갱생보호활동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갱생보호활동	46,856	46,856	-	-	-	46,856	46,856	-	-	48,468
• 한국보호복지공단	45,101	45,101	-	-	-	45,101	45,101	-	-	46,641
• 한국교화복지재단	129	129	-	-	-	129	129	-	-	129
• 세계교화갱보협회	169	169	-	-	-	169	169	-	-	169
• 담안선교회	704	704	-	-	-	704	704	-	-	704
• 빠스카교화복지회	132	132	-	-	-	132	132	-	-	132
• 양지뜸	200	200	-	-	-	200	200	-	-	200
• 뷰티플라이프	146	146	-	-	-	146	146	-	-	146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열린낙원	153	153	–	–	–	153	153	–	–	153
• 굿라이프	122	122	–	–	–	122	122	–	–	122

▢ 전남기술교육원 건립사업 이월 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갱생호보활동 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 갱생보호법인에 민간경상보조 형식(수지차보전)으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129)]

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4년부터 “전남기술교육원” 건립 사업을 수행 중인바, 이는 서남권 전남지역(목포, 신안, 무안, 영암, 해남, 진도) 및 22개 시·군에 대한 효과적 갱생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남기술교육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전남 목포시에 3층 청사와 1층 기술동을 포함한 연면적 1,558.4㎡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5년 전남기술교육원 건립을 위해 편성한 22억 5,000만원 중 22억 450만원을 이월하였음.

---

12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전남기술교육원 건립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26. 7. 31.기준)

연 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전용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	1,479	1,479	1,144	-	-	335
2025년	2,250	2,250	45	-	2,205	-
2026년	2,635	4,840	784	-	-	-

* 자료: 법무부

이월의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예산 최초 편성 당시에는 2024년 12월 실시설계 후 2025년 4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130]의 기준 충족을 위한 설계변경 등을 원인으로 실시설계가 당초 계획보다 8개월 경과한 2025년 8월에야 이루어지는 등 사업 초기부터 일정이 지연되었음.

이후 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5년 9월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업체에 적격판정을 통보하였으나, 그 직후인 2025년 10월 낙찰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및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발생하였음.

130) BF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이에 따라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당초 선금 지급방식에서 기성금 지급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25년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임.

<사업단계별 당초 계획일정 대비 실제 추진현황>

사업단계	당초 계획일정	2025.9. 기준 추진일정	2026.6. 기준 추진일정	변동 사유 등
토지매입	2024. 7.	2024. 7.	2024. 7.	
기본계획	2024. 9.	2024. 10.	2024. 10.	
기본설계	2024. 12.	2024. 12.	2024. 12.	
실시설계	2024. 12.	2025. 8.	2025. 8.	(2025. 1.) BF인증기준 충족 위해 일부 설계변경 (2025. 4.) BF인증 신청 (2025. 8.) BF인증서 발급
공사 입찰 및 계약	2025. 2.	2025. 9.	2025. 9.(입찰) 2025. 12.(계약)	(2025. 10.) 시공사 법정관리 신청 및 개시결정
착공	2025. 4.	2025. 10.	2025. 12.	
준공	2026. 8.	2026. 10.	2026. 12.	
사용승인	2026. 10.	2026. 12.	2027. 2. ~ 5.	BF본인증 완료 소요기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자료: 법무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은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선금지급 불가능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131]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기성

13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 지급 방식으로의 변경은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해 연내 선금 집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 22억 45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이에 따라 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6년도 예산액 26억 3,500만원과 2025년도 이월액 22억 450만원을 합산한 48억 3,95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계획 공정률 이행을 통해 연내에 이월 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 완료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6년 7월 말 기준 실제 집행액은 7억 8,395만원으로 집행률이 16.2% 수준임.

<전남기술교육원 건립 사업 예산의 2026. 7.기준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6년 7월말 기준)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4,839	784	4,056	16.2%

* 자료: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전남기술교육원 건립 사업의 2026년 7월 말 기준 공정 현황을 살펴보면, 합계 공정률은 25.96% 수준이고, 세부적으로는 토목조경이 11%, 공통가설이 0.19%, 건축공사가 11.97%, 기계설비가 2.8%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전남기술교육원 건립 사업 예산의 2026. 7.기준 공정 현황>

공 정	공사기간	실적 공정
공통가설	2026. 01. 02.~2026. 04. 30.	0.19%
토목조경	2026. 03. 02.~2026. 12. 10.	11.00%
건축공사	2026. 06. 01.~2026. 12. 23.	11.97%
기계설비	2026. 07. 01.~2026. 11. 30.	2.80%
합 계		25.96%

* 자료: 법무부

해당 사업의 월별 예산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7월 말까지의 집행률이 16.2%에 그치는 상황에서, 8~9월에 15억 7,996만원(누적 56.0%)을 집행하고, 마지막 4분기(10~12월)에 집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임.

<월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예정액>

(단위: 백만원, 26년 7월말 기준)

구 분	1~5월	6~7월	8~9월	10~12월
해당월 집행액	139	645	1,925	2,130
누적 집행액	139	784	2,709	4,839
집행률	2.9%	16.2%	56.0%	100.0%

* 1~5월 및 6~7월의 경우 실제 집행액
* 자료: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러나 본 공사는 시공사의 실제 공사 실적에 기하여 대금을 사후 지급하는 기성금 지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공사의 자금 동원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진 공정, 동절기 기상 악화에 따른 돌발상황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전남기술교육원 건립공사의 공기 지연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기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공사의 법정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사 중단 등 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시공사 파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체 시공사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이월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전자감독 (1635-301)

▢ 결산 개요

'전자감독'은 고위험 강력사범에 대한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감독하고,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선고형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며,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실시를 통해 재범 억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368억 4,700만원이고, 이·전용 등 감액 3억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65억 4,700만원이며, 이 중 358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6,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전자감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자감독	36,847	36,847	-	△300	-	36,547	35,878	-	669	37,266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10,082	10,082	-	△304	-	9,778	9,248	-	530	11,212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운영	6,456	6,456	-	620	-	7,076	7,076	-	1	6,940
•장치 및 시스템 개선	19,201	19,201	-	△617	-	18,584	18,456	-	128	17,865
• 사업지원경비	1,109	1,109	-	-	-	1,109	1,099	-	10	1,249

▢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대응한 지도·감독 전담인력 확충 필요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스토킹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의 전과자와 일부 가석방 및 보석 대상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전국 보호관찰소의 연계를 통해 이들의 위치·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전자감독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전자감독 대상자는 형기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부과받은 사람과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잠정조치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나뉘며, 전자는 '일반 감독 대상자'와 재범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1 감독이 이루어지는 '1:1 감독 대상자'로 구분됨.

전자감독 대상자는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관리가 요구되고, 전자발찌 훼손·무단이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재범을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전담인력의 확보가 요구됨.

그런데,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1:1 감독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일반 감독 대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지도·감독 전담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4,316명이던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5년 말에는 4,827명으로 511명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1:1 감독 대상자는 3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 감독 대상자의 지도·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담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일반 감독 대상자의 수는 2021년에는 17.7명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20.7명으로 상승하였음.

<연도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및 지도 · 감독 전담인력>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자감독 대상자	4,316	4,421	4,188	4,474	4,827
일반	4,286	4,348	4,090	4,352	4,624
1:1	30	73	98	100	100
잠정조치	–	–	–	22	103
지도 · 감독 전담인력	272	328	333	333	333
일반	242	255	225	223	223
1:1	30	73	98	100	100
잠정조치	–	–	10	10	10
전담인력 1인당 대상자	15.9	13.5	12.6	13.4	14.5
일반	17.7	17.1	18.2	19.5	20.7
1:1	1.0	1.0	1.0	1.0	1.0
잠정조치	–	–	–	2.2	10.3

* 자료: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러한 인력 부담은 일부 보호관찰소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기관 간 편차도 상당한바, 2025년 전담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일반 감독 대상자를 보호관찰소별로 살펴보면, 광주(30.5명), 수원(26.1명), 창원(25.2명), 춘천(25.4명) 등은 전국 평균(20.7명)을 상회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에 따른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 보호관찰소별 전담인력 1인당 일반 감독 대상자 수>

(단위: 명)

구 분	일반 전담인력(A)	일반 감독 대상자(B)	1인당 일반 감독 대상자(B/A)
광주	12	367	30.5
수원	28	733	26.1
창원	12	303	25.2
춘천	7	178	25.4
대구	23	515	22.3
전국	223	4,616	20.7

* 자료: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더욱이 야간·휴일에는 각 기관의 범죄예방팀(전담직원 1명, 무도실무관 1명)이 기관 전체 대상자를 관리·감독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밀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준수사항 위반은 2022년 1,292건에서 2024년 784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97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매년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훼손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신속한 현장 대응을 담보할 인력의 중요성이 큼.

〈전자감독 대상자 주요 준수사항 위반 세부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6
훼손	11	9	3	5	2
외출금지 위반	1,263	882	759	956	315
접근금지 위반	7	8	16	9	3
출입금지 위반	11	8	6	5	3
연도말 전자감독 대상자 수	4,421	4,188	4,474	4,827	5,306

* 자료: 법무부

2024년 및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전자장치 착용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리인력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 안전을 위하여 관리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132)]

따라서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 추세 및 기관별 편차를 고려하여 지도·감독 전담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야간·휴일 관리체계 및 지도·감독 전담인력 등 현장 대응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32) **[2024·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24년) 스토킹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범죄와 관련한 전자감독 등 강화를 위하여 현장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2025년) 전자장치 착용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리 인력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

자. 법무연수원

(1)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5131-311)

▢ 결산 개요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법무부 외의 타 기관 교육대상자에게 연수원 시설사용 대가로 징수하는 교육료 수입에 기반하여, 교육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1억 3,700만원이고, 이 중 1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37	137	-	-	-	137	135	-	2	137
·교육 운영	137	137	-	-	-	137	135	-	2	137

▢ 수입대체경비 편성 목적과 무관한 예산 집행 재발방지 필요

「국가재정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나, 당해 경비나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 정의하고 있음[133].

이에 법무연수원은 특사경, 군검사 등 법무부 외의 타 기관 교육대상자에게 교재대, 식대, 공공요금에 필요한 재원 마련 명목으로 일정 부분의 교육비를 징수하여 세입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예산 부족분 만큼의 세출예산을 수입대체경비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음.

동 세부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상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1년 45.3%, 2022년 45.7%, 2023년 73.5%, 2024년도는 85.8%로 집행률과 집합교육 실적이 함께 상향 추세이고, 2025년도의 경우에는 98.5%로 집행률이 점차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법무연수원은 2025년의 경우에는 식품의약안전처 특별사법경찰에게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2025.

133)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3. 18.)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의 요청으로 의료용 마약류 수사 실무 과정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집행률이 제고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지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불용액	집합교육 실적 (타기관 교육생)
	본예산	추경(A)					
2021	159	159	159	72	45.3	87	총 11과정, 617명
2022	151	151	151	69	45.7	82	총 21과정, 1,295명
2023	151	151	151	111	73.5	40	총 48과정, 2,193명
2024	137	137	137	118	85.8	19	총 47과정, 1,993명
2025	137	137	137	135	98.5	2	총 43과정, 2,026명

연수원의 식당 식재료비는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각 목적에 맞게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세부사업(사례A)이나,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지원세부사업(사례B) 혹은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사례C)를 통해서 매월 혹은 매주 단위로 지출하고, 수입대체경비는 “외부교육생 식당 식재료비”(사례D)와 같이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집행 방식임.

<연수원 식재료비 지출 예시>

(단위: 원)

사례	세부사업명	지출결의건명	지출일자	금 액
A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5131-30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2월 4주)	2025-03-28	1,080,00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4월 2주)	2025-05-28	3,935,890

B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5131-312)	신임검사 식재료비 (5월)	2025-06-05	6,592,820
C	법무연수원기본경비 (7018-254)	식당 식재료비 (6월)	2025-06-05	1,040,000
D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5131-311)	외부교육생 식당 식재료비(3월)	2025-04-04	7,610,700

그런데, 법무연수원이 집행한 동 세부사업비의 디지털회계시스템(D-brain)상 지출 내역 중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대체경비 지출 목적과는 무관한 "진천 본원의 식당 식재료비" 지출을 위해 2025년 6월과 11월에 총 12차례에 걸쳐 수입대체경비 25,018,77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사례A와 같이 연수원시설 관리 및 운영(5131-300)을 세부사업비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수입대체경비로 잘못 집행한 것임.

<수입대체경비를 진천본원 식재료비로 잘못 집행한 사례>

(단위: 원)

지급일	금액	지출결의건명
2025-06-27	1,317,00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06-27	1,256,60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11-11	2,387,82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11-11	937,55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11-11	2,915,55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11-26	2,029,00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11-26	1,962,50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11-26	73,00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11-26	2,704,05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11-26	2,060,00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11-26	3,743,20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2025-11-26	3,632,500	진천본원 식당 식재료비(수입대체경비)
합 계	25,018,770	

특히 이와 같은 집행오류를 반영하여 수입대체경비(5131-311) 세부사업비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여 재산정해 보면, 2025년 집행률은 80.3%에 불과하게 되어, 오히려 2024년보다 집행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부적절 집행, 집행합계 오류에 더하여 집행실적 과다 산정의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집행오류 금액 제외・수정 시 2025년 수입대체경비(지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불용액	집합교육 실적 (타기관 교육생)
	본예산	추경(A)					
2024	137	137	137	118	85.8	19	총 47과정, 1,993명
2025 기존	137	137	137	135	98.5	2	총 43과정, 2,026명
수정	137	137	137	110	80.3		

따라서, 법무연수원은 동 비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 집행실적을 재산정하고 수입대체경비의 취지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금액이 집행된 사유와 원인분석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수입대체경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

(2) 법무연수원 기본경비(7018-254)

▢ 결산 개요

법무연수원 기본경비는 법무부 소속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신임검사, 특사경, 로스쿨 지원교육을 보다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경상경비로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53억 900만원이고, 이 중 48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5,309	5,309	-	-	-	5,309	4,844	-	465	5,309

▢ 예산편성과 다른 집행 등 부적절한 집행 관행 개선 필요

법무연수원 기본경비(7018-254)는 법무연수원 진천본원과 용인분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식비, 공사비 등의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동 기본경비와 관련된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산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예산 집행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먼저, 피복비 증액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다음 이·전용 등의 감액을 통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된 타 업무를 위해 집행한 문제가 있음.

법무연수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관 내 이불, 베개 등의 통상적인 관리·교체를 위해 매년 3,000만원의 피복비를 편성·집행하다가, 약 2,080채 분량의 이불과 베게 등의 대규모 전면 교체를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2024년부터 피복비를 매년 1억 4,100만원으로 증액·편성한 뒤 사업 첫해인 2024년에는 전액 집행하고 목표의 1/3에 해당하는 700여채를 교체하였음.

그런데, 사업 2년 차인 2025년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 중 4,400만원을 이·전용 등으로 감액하여 당초 계획대비 74%만 집행하는 대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편성된 예산 일부를 당초 목적에 집행하지 않고 전혀 다른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고, “홍보 동영상 제작”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급성이 낮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피복비를 우회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한 것은 사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임.

이에 대해 법무연수원은 2026년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애초에 계획한 침구류 대규모 교체를 모두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밝히고 있음.

하지만, 당초 3년간 매년 1억 4,100만원 집행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2025년에 4,400만원을 이·전용 등으로 감액하고도 관련 사업을 모두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과대 편성[134]하여 타 목적을 위한 여유재원으로 활용하게 한 것이었거나, 당초 계획액 대비 부족해진 예산 만큼 낮은 단가와 품질의 침구류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올바른 예산 편성·집행 방식은 아니라 할 것임.

<피복비 산출 근거 및 관련 설명>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4(1년차)	171	–	–	171	171	–
2025(2년차)	171	–	△44	127	126	1

주) 매년 171백만원=700채×244천원 산정

134) 연수원은 동 사업비 편성 당시 본원 및 분원 생활관 수용 가능 인원은 905명으로, 교육생 입·퇴소에 따른 주기적 세탁 및 훼손 대비 여분 확보를 위해 2.3배 분량 산정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애초에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가 의문시되는 상황임.

다음으로,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를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어, 관련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법무연수원(진천본원)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골프연습장과 같은 운동시설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2025년 3월에는 연수원시설관리 및 운영 주요사업비에서 시설을 조성한 뒤, 4월에는 관련 물품을 기본경비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그런데, 기본경비는 경상적 성격의 기관운영 경비임을 감안할 때 골프연습장용 비디오프로젝터를 기본경비로 구매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법무연수원은 사업목적·내용·효과 평가 등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관련 예산을 하나의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를 혼용하여 집행 사례(예시)>

(단위: 원)

세부사업명	일 자	금 액	건 명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5131-300)	2025-03-11	2,790,000	스크린골프장 천장 개선공사
법무연수원기본경비 (7018-254)	2025-04-03	9,790,000	골프연습장용 비디오프로젝터 구매(2대)
	2025-04-03	42,290	골프연습장용 비디오프로젝터 구매 조달수수료

◈ 예 비 비 ◈

(1) 조은석 특별검사(1339-309), 이명현 특별검사(1339-311)

▢ 예비비지출 개요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6. 6. 10. 제정·시행)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135]

2025년도 예비비 배정액은 104억 700만원이며, 이 중 65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조은석 특별검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은석 특별검사	-	-	-	±560	10,407	10,407	6,573	-	3,834	-

13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이명현 특별검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6. 6. 10. 제정·시행)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136]

2025년도 예비비 배정액은 73억 7,200만원이며, 이 중 5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명현 특별검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이명현 특별검사	–	–	–	–	7,372	7,372	5,459	–	1,913	–

13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예비비 배정액의 전용 및 과다 불용 주의 필요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137]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재원으로, 같은 법 제51조[138]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제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배정·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예비비는 최대한 실제에 부합하는 소요 예측에 따라 적시에 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전용이나 과다한 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025회계연도에 예비비 배정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각 특별

---

137)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138)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139]의 경우 '안미영 특별검사(1339-308)'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특별검사는 회계연도 진행 중 근거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2025년도 예산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고, 안미영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검사와 마찬가지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급하도록 근거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므로,[140] 이들 특별검사와 관련한 예비비 지출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그러나 '조은석 특별검사' 및 '이명현 특별검사' 관련 예비비는 그 배정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비비 추가 배정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는 예비비 전용이 발생하였음.

먼저, 조은석 특별검사는 다음 표와 같이 수사기간이 총 세 차례 연장되었는데, 2차 수사기간 연장 당시에도 이미 2차 예비비 배정이 다소 늦어졌던 상황에서 3차 연장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른 예비비도 적시에 배정되지 않아 3차 연장 기간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음.

---

139) 안미영 특별검사(1339-308, 공군 중사 사망 관련 군 내 성폭력 등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1339-309,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민중기 특별검사(1339-310,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 이명현 특별검사(1339-31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등 관련 진상규명), 안권섭 특별검사(1339-312,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 진상규명)

140)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조은석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및 예비비 배정 내역>

구 분	일 자	예비비 배정 등
준비기간(6일)	2025.6.12. ~ 6.17.	1차 예비비 배정(7.8.)
수사기간(90일)	6.18. ~ 9.15.	
1차 연장 수사기간(30일)	9.16. ~ 10.15.	
2차 연장 수사기간(30일)	10.16. ~ 11.14.	예비비 배정 지연
3차 연장 수사기간(30일)	11.15. ~ 12.14.	**2차 예비비 배정(11.18.)** **기존 예비비 전용(11.24.)** **3차 예비비 배정(12.9.)**
공소유지기간(17일)	12.15. ~ 12.31.	추가 예비비 미배정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인력 미충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수(110-01) 예산 잔액으로부터 특수활동비(230-00) 3억 9,900만원, 임차료(210-07) 1억 1,000만원 및 사업추진비(240-01) 4,20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도 조은석 특별검사 예비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1.24.)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110-01	560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210-06	3차 연장 수사기간 (2025.11.15.~2025.12.14.)에 해당하는 예비비 편성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실질 집행을 위한 승인전용
					210-07	
					210-16	
					230-00	
					240-01	

자료: 법무부

다음으로, 이명현 특별검사 또한 수사기간이 총 세 차례 연장되었는데, 2차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2차 예비비가 적시에 배정되지 않아 연장 기간에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이에 임차료(210-07) 9,900만원 및 국내여비(220-01) 5,0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이명현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및 예비비 배정 내역>

구 분	일 자	예비비 배정 등
준비기간(20일)	2025.6.12. ~ 7.1.	1차 예비비 배정(7.14.)
수사기간(60일)	7.2. ~ 8.29.	
1차 연장 수사기간(30일)	8.30. ~ 9.29.	
2차 연장 수사기간(30일)	9.30. ~ 10.29.	**추가 예비비 미배정 기존 예비비 전용(10.21.)**
3차 연장 수사기간(30일)	10.30. ~ 11.28.	2차 예비비 배정(11.20.)
공소유지기간(33일)	11.29. ~ 12.31.	3차 예비비 배정(12.11.)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5년도 이명현 특별검사 예비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0.21.)	이명현 특별검사 (1339-311)	210-07	99	이명현 특별검사 (1339-311)	110-01	예비비 편성 지연으로 인건비 부족분 충당
전용 (2025.10.21.)	이명현 특별검사 (1339-311)	220-01	50	이명현 특별검사 (1339-311)	110-01 110-02	예비비 편성 지연으로 인건비 부족분 충당

자료: 법무부

그러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41]은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 사업이나 타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효율적인 재해복구 지원, 국제관계 등 대외여건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항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추가 예비비의 배정 지연에 따라 기존 예비비를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정·집행해야 하는 예비비의 특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둘째, 이미 배정된 예비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추가로 예비비를 배정받은 후 이를 대부분 불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먼저, 조은석 특별검사는 인력충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도 전체 보수(110-01)를 총 12억 1,500만원만 집행하였음. 이를 단순 일할 계산할 경우, 2차 예비비 배정 시점인 2025년 11월경에는 1차 예비비를 통해 배정받은 보수(110-01) 28억 8,200만원 중 약 20억원 내외의 잔액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이에 비추어 보면, 11월 및 12월분 보수는 이미 배정된 예비비 내에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예비비를 배정받을 경우에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그럼

141)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1. p.142~p.143

에도 조은석 특별검사는 2차 예비비로 보수(110-01) 6억 1,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보수(110-01) 항목의 예산에서 총 17억 1,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조은석 특별검사 주요 비목별 예비비 배정·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예비비				이·전용 등	집행액	불용액
	1차(7월)	2차(11월)	3차(12월)	계			
· 보수 (110-01)	2,882	610	-	3,493	△560	1,215	1,718
· 기타직보수 (110-02)	437	114	-	551	-	315	236
· 연가보상비 (110-05)	-	11	26	37	-	9	28
· 일반수용비 (210-01)	1,358	9	5	1,372	△38	549	784
· 직책수행경비 (250-02)	148	20	-	168	-	64	104
· 고용부담금 (320-09)	352	46	-	398	-	122	275
· 공사비 (420-03)	241	30	-	271	-	225	45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마찬가지로 기타직보수(110-02), 일반수용비(210-01), 직책수행경비(250-02), 고용부담금(320-09), 공사비(420-03) 등의 과목도 추가 예비비 배정 시점에 이미 기존 예비비 잔액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추가 배정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예비비 추가 배정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142]에 부합하지 않는 예비비 사용신청 및 배정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문제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

<이명현 특별검사 주요 비목별 예비비 배정·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예비비				이·전용 등	집행액	불용액
	1차(7월)	2차(11월)	3차(12월)	계			
·보수 (110-01)	1,119	851	134	2,104	122	1,607	619
·기타직보수 (110-02)	209	-	32	241	8	181	67
·연가보상비 (110-05)	-	-	28	28	20	18	30
·일반수용비 (210-01)	278	237	59	574	81	472	18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12	58	20	190	-	83	107
·특근매식비 (210-05)	54	29	9	92	-	48	44
·임차료 (210-07)	1,158	1,028	219	2,405	△99	1,886	419
·유류비 (210-08)	65	20	3	88	-	9	79
·국내여비 (220-01)	228	75	-	303	△50	71	182
·직책수행경비 (250-02)	50	47	9	105	-	82	23
·고용부담금 (320-09)	127	58	20	205	-	127	77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142)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이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인력충원을 전제로 인건비 및 수당·고용부담금 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어 추가 예비비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인력 미충원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비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예비비를 통해 집행하면서 인력채용규모가 어느정도 구체화되는 시점에 예비비 추가 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타당하였음에도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인력충원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최대한으로 요청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예비비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것임.

따라서 법무부는 예비비의 전용과 불용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예비비 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지, 연내 실제 집행가능한지 등 실제 지출소요를 면밀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음.

2. 교도작업특별회계

◈ 세 입 ◈

(1) 교도소수입(63-631)

▢ 결산 개요

‘교도소수입’은 교도작업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등으로, 당초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643억 4,300만원이었으나, 716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14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100만원임.

〈교도소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5								2026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교도소수입	64,343	64,343	-	64,343	71,625	71,464	161	-	67,118

▢ 교도작업 재료비 증가 및 수입실적 추세를 반영하지 않는 부적정한 예산편성 관행 시정 필요

교도작업특별회계는 「형법」 제67조 및 제69조[143]에 따라 수형자에

143)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노역(勞役)인 교도작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144]한 특별회계로서, 국가재정 지원 없이 교도작업에 의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운영하고 교도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회계임.[145]

법무부는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146]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147]에 근거하여,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판매 및 용역 제공 수입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관리하고 있음.

교도작업 생산제품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활용하는 각종 서식·복사용

---

144)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14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46)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14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지, 수용자 피복류, 수건·컵·도마 등 생활용품, 된장·땅콩·맛김 등 가공식품, 신발장·의자·테이블 등 가구에 이르기까지 그 품목이 다양함.

그런데, 최근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교도작업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210-11) 예산은 매년 증액 편성될 뿐만 아니라 전용 등을 통하여 집행과정에서도 추가 증액되고 있음. 2022년에 230억 5,000만원이었던 재료비 예산 편성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에는 287억 9,600만원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매년 전용, 세목조정 등을 통한 추가 증액도 발생하여 같은 기간 동안 집행액이 예산액을 최대 21억 8,100만원 상회하기도 하였음.

<연도별 재료비 예산 집행 및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2	23,050	473	59	23,581	23,578	3
2023	23,050	-	2,181	25,230	25,230	-
2024	25,612	-	1,389	27,001	27,001	-
2025	26,154	-	1,169	27,323	27,323	-
2026	28,796	-	-	-	-	-

일반적으로 재료비의 증가는 해당 재료로 생산한 교도작업 제품의 개당 단가 및 판매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것인바, 실제로 최근 교도작업수입의 수납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교도소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2	64,343	63,512	63,303	98.4	99.7	209
2023	64,343	68,199	67,902	105.5	99.6	297
2024	64,343	71,663	71,304	110.8	99.5	359
2025	64,343	71,625	71,464	111.1	99.8	161
2026	67,118	–	–	–	–	–

그러나, 법무부는 교도소수입 세입예산을 643억 4,300만원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동일하게 편성하여 왔음.

이로 인해 재료비 등 투입은 매년 증가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도 2023년부터 예산액을 지속적으로 초과(수납률 2023년 105.5% → 2025년 111.1%)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은 실적 및 판매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액과 실적 간의 괴리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

이는 세입예산이 재료비 투입 규모의 변동이나 교도작업 제품의 실제 판매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년도 편성액을 관행적으로 답습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법무부도 2025년까지 세입예산의 편성근거를 “전년 수준 반영”으로 하다가, 2026년 예산부터 “최근 5년 수입 평균 반영”으로 변경한바, 이는 종전의 연례적 편성방식이 실제 수입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음.

교도작업 재료비 등 투입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제품 판매 수입 실적도 편성액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에도, 교도소수입 세입예산이 연례적으로 동일 금액으로 편성되어 온 것은 세입예산의 정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재료비 투입 규모의 변동과 교도작업 제품의 실제 생산·판매 상황 및 최근 수입실적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총 괄 ◈

▢ 결산 개요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 945억 9,300만원의 계획액 중 902억 2,300만원을 집행(집행률 95.4%)하고, 43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94,593	94,593	90,223	-	4,370
정부내부지출	2,245	2,245	2,244	-	1
여유자금운용	48,039	48,039	57,345	-	-
합계	144,877	144,877	149,813	-	4,371

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기금 운영비 4,800만원을 제외한 계획액 945억 4,500만원 중 901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4%)됨.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2026 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1,442	21,442	20,271	94.5	27,988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3,450	3,450	3,357	97.3	3,277
범죄피해구조금	9,573	9,573	7,683	80.3	11,781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5,540	5,810	5,768	99.3	5,400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632	1,632	1,629	99.8	1,711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413	39,413	39,367	99.9	40,394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3,495	13,225	12,113	91.6	12,145
사업비 소계	**94,545**	**94,545**	**90,189**	**95.4**	**102,696**
기금관리비	48	48	34	71.6	60
총지출 합계	**94,593**	**94,593**	**90,223**	**95.4**	**102,756**

자료: 법무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 미준수 시정 필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 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48]

14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결산보고)**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음.

법무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149]에 따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 Ⅱ-1 사업설명자료'를 매년 제출받고 있고, 매월 사업 담당자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집행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조금 정산 절차의 일환으로 제출되는 자료이고,[150] 국회 제출자료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위한 요구 자료라는 점에서, 타 법령 또는 입법부의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대체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동 시행령 조항은 매년 1월 31일까지 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기금 사용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은 제출자료의 내용적 유사성 여부와 별개로 시행령상

14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0)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법정기한과 차이가 있음.

요구되는 결산보고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법무부의 주장처럼 다른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별도의 결산보고서 제출의무와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151] 별도의 결산보고 체계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따라서 법무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산보고서 등 유사한 결산보고서 제출이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점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 제출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5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결산보고)**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수 입 ◈

(1)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결산 개요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및 기금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으로, 2025회계연도 수입 계획액은 7억 3,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계획액 대비 171.8%인 19억 8,400만원으로 이 중 19억 6,000만원이 수납되고 2,4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5								2026
	계획액		이체 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재산 이자수입	730	730	-	730	1,984	1,960	24	-	1,023

자료: 법무부

▢ 미수납된 이자금의 신속한 수납 필요

동 세목의 미수납액은 2021년부터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

<2021~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당초	수정(A)							
2021	426	426	-	426	111	99	23.2	89.2	12
2022	417	417	-	417	558	550	131.9	98.6	8
2023	417	417	-	417	1,570	1,540	369.3	98.1	30
2024	417	417	-	417	1,002	979	234.8	97.7	23
2025	730	730	-	730	1,984	1,960	268.5	98.8	24

자료: 법무부

미수납 사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금으로 수행되는 지출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152]에서 지속적으로 정산 이자가 수납되지 못하였고, 법무부에 따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누락하면서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2021~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2021년	12	(성폭력피해자지원) 7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5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지연
2022년	8	(성폭력피해자지원) 2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6	

152)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2022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으며, 2024년까지 발생한 미수납액은 모두 수납이 완료되었음.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2023년	30	(성폭력피해자지원) 28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2	
2024년	23	(성폭력피해자지원) 22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1	
2025년	24	(성폭력피해자지원) 24	
합계	97	-	

자료: 법무부

한편, 2025년 미수납액은 전액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발생하였는데, 상세 결의내역을 보면 201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반납되었어야 할 이자금도 포함되어 있음.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상세 결의내역>

(단위: 천원)

거래처명	결의내용	최초결의일자	미수납액
충청남도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해바라기센터)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추가반납)	2025.12.9.	550
	202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2.7.17.	171
	20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상담소, 보호시설 등)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3.11.27.	753
	2023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상담소, 보호시설 등)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4.11.11.	862
	202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상담소, 보호시설 등)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5.5.26.	2,836
충청북도	202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해바라기센터 등)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5.5.28. 2025.6.19.	6,050
전라북도	202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해바라기센터)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추가반납)	2025.12.9.	6
	2023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4.11.11. 2025.8.25.	17
	202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5.4.27. 2025.12.15.	7

거래처명	결의내용	최초결의일자	미수납액
전라남도	20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상담소, 보호시설 등)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3.11.27. 2023.12.8.	4,459
	2023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상담소, 보호시설 등)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4.7.19. 2024.11.11.	659
	202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5.5.8. 2025.5.28.	7,189
강원도	202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2025.4.21.	401
합계			23,960

자료: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이 내려간 이후 상담소 등 2차 보조기관에서 보조금이 최종 집행되는 구조인데,[153]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2차 보조기관을 거쳐 집행되는 구조의 보조사업은 정산된 이자금이 수납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는 미수납액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정산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154] 미수납액이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5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17개 개별 지방자치단체로 1차 집행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속한 성폭력 피해상담소(99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5개소), 해바라기센터(41개소)로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개별 기관이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함.

15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2025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금 반납이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본 보고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참조).

(2)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결산 개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수납하는 수입항목으로, 2025회계연도 수입계획액은 31억 6,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계획액 대비 114.6%인 36억 2,600만원으로, 이 중 30억 6,200만원이 수납되고 5억 6,4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5								2026
	계획액		이체 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 이전수입	3,164	3,164	-	3,164	3,626	3,062	564	-	3,109

자료: 법무부

▢ 장기 미수납된 정산 반환금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 마련 필요

동 세목은 2021년 6억 9,500만원, 2022년 21억 6,100만원, 2023년 15억 3,600만원, 2024년 8억 1,800만원, 2025년 5억 6,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2021~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당초	수정(A)							
2021	1,949	1,949	-	1,949	3,863	3,168	162.5	82.0	695
2022	2,029	2,029	-	2,029	4,991	2,830	139.5	56.7	2,161
2023	2,373	2,373	-	2,373	5,031	3,494	147.2	69.4	1,536
2024	2,717	2,717	-	2,717	3,820	3,002	110.5	78.6	818
2025	3,164	3,164	-	3,164	3,626	3,062	96.8	84.4	564

자료: 법무부

미수납 사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금으로 수행되는 지출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정산금이 수납되지 못하였고, 법무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누락함에 따라 미반납 되었다는 입장임.

<2021~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2021년	695	(성폭력피해자지원) 548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147	지자체 추경 예산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2022년	2,161	(성폭력피해자지원) 413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1,749	편성 지연
2023년	1,536	(성폭력피해자지원) 850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685	
2024년	818	(성폭력피해자지원) 734 (아동학대피해자보호및지원) 83	
2025년	564	(성폭력피해자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지원) 564	

자료: 법무부

한편, 2025년에 발생한 미수납액은 5억 6,400만원이고, 1억 9,461만원은 2년 이상 체납되었는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155]은 2013년 국고보조금 정산금 약 445만원이 아직 미수납된 것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2018년, 2021년 및 2022년 국고보조금 정산금이 미수납된 것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2년 이상 체납된 1억 9,461만원은 2023년까지 반납되었어야 하나,[156] 2026년 8월 기준 2년 이상 반납이 지연된 것임.

15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 상담 및 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4년부터 법무부가 수행하다가 2014년 성평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으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음.

15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기한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22년에 종료된 두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2023년까지는 반납이 완료되었어야 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중 2년 이상 체납된 내역>

(단위: 원)

결의일자	거래처명	결의내용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2022.7.18	충청남도	성폭력피해자지원(202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846,710	48,846,710
2023.11.28	충청남도	성폭력피해자지원(2022년 성폭력피해자지원(상담소, 보호시설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265,940	37,265,940
2023.12.11	전라남도	성폭력피해자지원(2022년 성폭력피해자지원(해바라기센터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6,979,180	46,979,180
2023.12.11	전라남도	성폭력피해자지원(2022년 성폭력피해자지원(해바라기센터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88,500	3,288,500
2025.6.11	경상남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2013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48,500	4,448,500
2025.10.30	전라남도	성폭력피해자지원(20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상담소, 보호시설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7,279,000	47,279,000
2025.12.10	충청남도	성폭력피해자지원(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해바라기센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_추가반납	6,106,560	6,106,560
2025.12.10	충청남도	성폭력피해자지원(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해바라기센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_추가반납	400,000	400,000
합계			194,614,390	194,614,390

자료: 법무부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2018년, 2021년 및 2022년 발생한 국고보조금 정산금이 수년간 수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은 법무부의 기금 수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법무부는 기금관리주체로서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정산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157] 정산금이 적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채권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58]

157)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2025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금 반납이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본 보고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참조).

158)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33)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납입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채권에 대한 회수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국가채권 관리 및 연체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미수납채권의 회수를 위한 회수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일반회계 전입금(91-911)

▢ 결산 개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금액을 수납받는 수입항목으로, 2025회계연도 수입 계획액은 887억 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계획액과 동일하고 해당 금액이 전액 수납되었음.

<일반회계 전입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5								2026
	계획액		이체 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일반회계 전입금	88,762	88,762	-	88,762	88,762	88,762	-	-	91,146

자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전입받되, 당해 벌금의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납입받도록 규정하고 있음.[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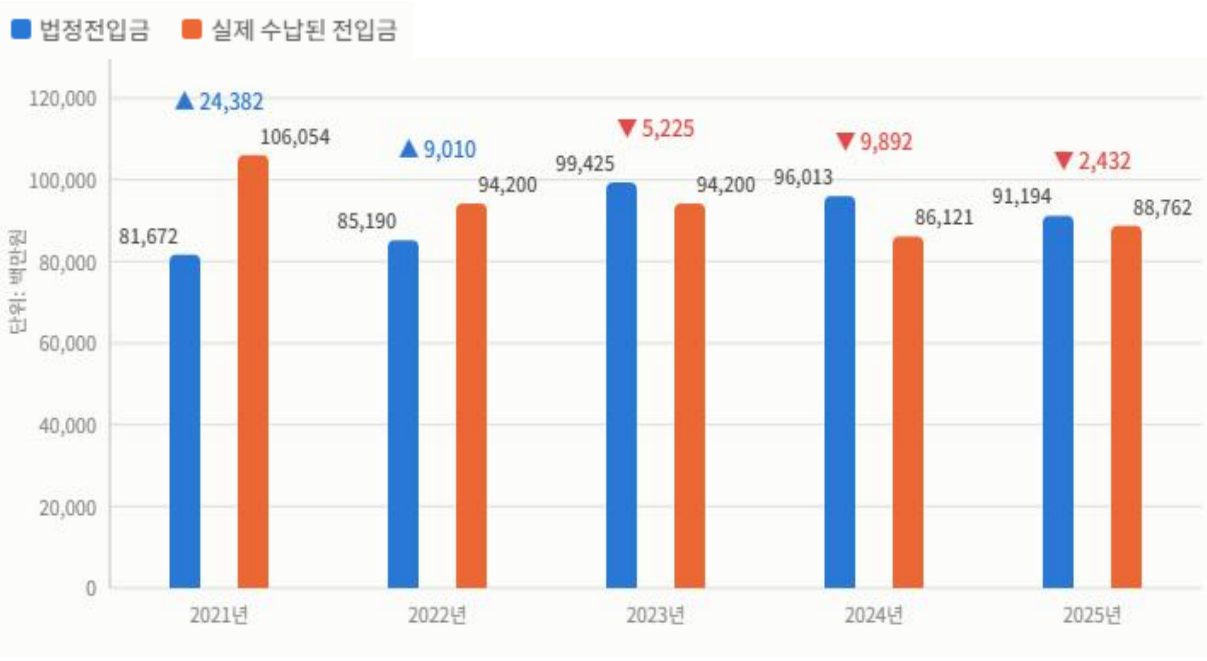
15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 연례적인 전입금 법정비율 미준수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동 세목에 수납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법정 금액(이하 '법정전입금'이라 함)은 매년도 벌금 수납액의 8%이고, 2025년도 법정전입금은 2025년 벌금 수납액 1조 1,399억 2,800만원의 8%인 911억 9,400만원임.

해당 금액은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 실제 수납액인 887억 6,200만원보다 24억 3,200만원이 많은 금액인데, 해당 차이는 2021년 243억 8,200만원, 2022년 90억 1,000만원, 2023년 52억 2,500만원, 2024년 98억 9,200만원으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2021~2025년 법정전입금과 실제 수납된 일반회계 전입금의 차이>



이처럼 법정전입금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상황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입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벌금 계획액과 사업연도 말 실제 수납된 벌금액 간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이 정하는 수납된 벌금의 8%를 기금 수입으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법정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수납액의 차액을 정산하여[160] 차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액에 반영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입장임.[161]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금액의 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한 취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정기준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정산 절차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정산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162][163]

---

160) 정산액: 일반회계 전입금 수납액 - 실제 벌금수납액*8%

161) 참고로,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액과 벌금수납액의 차이는 여유자금 고갈로 인하여 정산하지 않기 시작한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약 601억원에 달함.

162) 법무부는 정산되지 못한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금액 601억원에 대하여 이를 단기간에 정산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및 기금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16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처럼 법정전입비율을 특정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기금은 '기후대응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있음. 그러나 두 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달리 전입금의 범위에 유동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어서, 결산 과정에서 실제 전입금의 비율이 법령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

①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583을 전입받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제1호는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보장하고 있음.

②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받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제2항제3호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추가 전입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음.

◈ 지 출 ◈

가. 인권활동

(1)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 결산 개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및 계획현액은 394억 1,300만원이고, 이 중 393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413	39,413	-	39,413	39,367 [38,570]	- [150]	46 [647]	40,394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14,980	14,980	-	14,980	14,980 [14,606]	-	- [374]	16,060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20,035	20,035	-	20,035	20,035 [19,797]	- [150]	- [88]	20,622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40	3,540	-	3,540	3,540 [3,355]	-	- [185]	3,540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72	-	172	140	-	32	172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686	686	-	686	672	-	14	-

5개 내역사업 중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1차적으로 집행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소 99개소, 보호시설 35개소, 해바라기센터 42개소 및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보조금을 2차 집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상담소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집행절차>

(단위: 백만원)

부처	=>	피출연·피보조기관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38,555)	14,980	17개 시도	14,980	상담소 99개소 보호시설 35개소
	20,035		20,035	해바라기센터 42개소
	3,540		3,540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등

자료: 법무부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의 적기 반납을 위한 조치 필요

이 사업은 2025년 정산 결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억 8,069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1억 2,946만 4,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총 13억 1,015만 4,000원의 잔액 및 이자금이 2026년 내에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164]

<2025년 17개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집행잔액(A)	이자발생액(B)	총 반납금(A+B)
서울	111,319	11,263	122,582
부산	43,933	7,106	51,040
대구	19,490	4,945	24,435
인천	48,644	8,349	56,993
광주	84,583	5,187	89,770
대전	46,888	3,734	50,622
울산	160,687	5,381	166,068
세종	34,388	514	34,901
경기	46,880	23,956	70,836
강원	91,510	14,745	106,256
충북	69,382	5,469	74,851
충남	73,590	7,457	81,047
전북	37,190	4,892	42,082
전남	126,845	2,836	129,680
경북	78,987	12,641	91,628
경남	58,905	9,061	67,966
제주	47,469	1,928	49,397
계	1,180,690	129,464	1,310,154

주) 집행잔액: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임(지방비 집행잔액은 제외함)
자료: 법무부

16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반납액 13억 1,015만 4,000원은 2026년 8월을 기준으로 전액 반납되지 않았고, 2026년 연말에 반납될 예정임.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통상 보조금 반납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리추경(4분기) 때 편성되고,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및 반납 일정에 맞추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합한 뒤 중앙관서로 반납하는 시점은 당해 연도말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금이 연례적으로 미수납되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반환액을 4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하였기 때문임.

그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중 보조사업의 정산금 및 이자를 수납받는 수입항목인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에서 총 5억 내외의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

<2021~2025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2021년	548	7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누락
2022년	413	2	
2023년	850	28	
2024년	734	22	
2025년	564	24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2025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3억 1,015만 4,000원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2026년 4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4분기 정리추경 때 보조금 반납액을 편성하더라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취합하여 중앙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반납기한인 2026년을 도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변경 및 보조금 교부 부적정

내역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2025년도 계획액 200억 3,500만원 중 9,6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로, 이는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개보수비 및 기자재비 등에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금액임.

한편, 지자체경상보조 비목에서 지자체자본보조 비목으로 2억원이 계획변경 되었는데, 1억 5,000만원은 부산 해바라기센터 이전설치비로, 5,000만원은 전북 해바라기센터로 교부되었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내역사업 계획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당초 계획액	자체변경 증감분	수정액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20,035	-	20,035
- 지자체경상보조 (330-01)	19,939	△200	19,739
- 지자체자본보조 (330-03)	96	200	296

자료: 법무부

이 중 부산에 교부된 금액과 관련하여, 부산 해바라기센터 운영기관인 부산대병원은 부산 해바라기센터가 센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운영 종료를 예고함에 따라 긴급하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부산광역시는 2025년 10월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165]에 1억 5,000만원 계획변경(증액)을 요청하였으며, 법무부는 2025년 11월 3일에 부산광역시에 전액 교부하였음.

165) 현(現) 기획예산처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교부받은 예산액 1억 5,000만원을 전액 2026년으로 이월하였음.[166]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부산광역시의 추가경정예산이 회계연도 말인 12월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물리적인 집행 가능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 외 조달청 공고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법정기간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입장임.

<부산 해바라기센터 이전 관련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목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지자체 경상보조 (330-01)	19,939	19,739	19,739	-	19,739	19,684	19,739	19,684	-	55	99.7
지자체 자본보조 (330-03)	96	296	296	295	591	408	296	146	150	33	49.3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5년 10월에 2억원을 계획변경(증액) 하고, 부산광역시에 1억 5,000만원을 2025년 11월 3일에 교부하였는데, 해당 시점은 부산광역시의 추가경정예산 및 조달청의 공고와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으로써, 해당 교부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시점이었음.

166) 전북 해바라기센터에 교부된 5,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167]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68]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할 때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법무부가 부산광역시에 1억 5,000만원을 전액 교부한 것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관련 지침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계획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및 교부 시, 사업 추진 일정,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및 구체적인 집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

16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68)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 95)

(6)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17.1월 개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 결산 개요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상대 상담과 경제·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지원하고,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의 위탁운영을 보조하며,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생계비·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계획액 및 계획현액은 214억 4,200만원이고, 이 중 202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1,442	21,442	-	21,442	20,271 [19,600]	-	1,171 [392]	27,98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5,267	5,267	-	5,267	5,263 [5,094]	-	4 [23]	5,488
·스마일센터 운영	8,571	8,571	-	8,571	8,571 [8,166]	-	- [270]	11,410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	1,343	1,343	-	1,343	1,159	-	184	1,085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4,413	4,413	-	4,413	3,473	-	940	4,804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708	708	-	708	708 [609]	-	- [99]	708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	409	–	409	387	–	22	409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412	412	–	412	412 [412]	–	–	412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320	320	–	320	300	–	20	317
·범죄피해자통합지원 시스템	–	–	–	–	–	–	–	3,355

이 중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 내역사업은 피해자가 다양한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액 및 계획현액은 13억 4,300만원으로, 이 중 1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인력이 입주한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2024년 7월 서울에 첫 센터(이하 ‘서울 센터’)[169]를 설립하였음.

해당 센터는 초기에 상담사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참여기관 담당자들과 연계하면, 법률, 심리치료, 고용, 금융 상담은 서울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고,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주거지원, 안전조치, 불법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는 원소속 기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으로 연계하여 사례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169) 대방역 인근 ‘서울시 여성플라자’ 3층 소재.

▢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개소 지연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법무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인 2025년 하반기, 서울센터의 운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참여 여부 및 예산·직제 등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후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지역별 거점에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12월에 센터 개소 관련 직제 및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참여 확대를 협의한 후, 2026년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동년 12월에 센터 첫 추가 개소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며, 이후에는 해마다 한 개씩 추가 개소를 진행하여 2029년까지 전국에 총 5개의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였음.

<원스톱솔루션 센터 추가 개소 계획(안)>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지역 주요 거점 추가 개소	· 센터 추가 개소 관련 직제 · 예산 요구 (12월) · 유관기관 참여 유도 · 확대 협의(12월)	· 장소 및 참여기관 선정, 센터 시설공사 (1~11월) ·통합지원센터 개소(12월)	· 지역 거점 센터 추가 개소 지속 추진 (12월)	· 지역 거점 센터 추가 개소 지속 추진 (12월)	· 지역 거점 센터 추가 개소 지속 추진 (12월)

자료: 법무부

그러나 추가 개소와 관련된 예산이 2026년도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출범한 서울센터의 성과 분석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법무부에 따르면,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 2026년 2월에 시작하여 8월 기준으로도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고, 성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 구성의 적정성, 실적관리 방안 등을 마련한 후에야 타지역 센터 추가 개소 필요성 및 적정 규모 등 중장기계획을 검토·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 경우 법무부가 2025년 하반기에 설정한 계획(안) 대비 1년 이상 지연되어 원스톱솔루션 센터가 개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임.

<원스톱솔루션 센터 추가 개소 계획 및 현황>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획(안)	센터 추가 개소 관련 직제 · 예산 요구(12월)	센터 시설공사(1~11월) 및 통합지원센터 개소(12월)	지역 거점 센터 추가 개소 지속 추진(12월)		
현재	예산 미반영	성과분석 연구용역 시작(2월)	센터 시설공사 및 통합지원센터 개소 일정 불확실		

자료: 법무부

이처럼 각 지역에 센터 개소가 지연되고 서울센터만 장기간 운영될 경우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음.

또한 성과 분석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7년에 센터 추가 개소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기는 어려우므로 센터 추가 개소 시점은 2028년 이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26년 8월 기준 온라인상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이[170] 진행 중에 있고, 2027년 1월 말에 대국민 서비스가 오픈된다면 서울에서만 운영 중이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장소적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다만 법무부가 제시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은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장소적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온라인 상담과 정보 제공만으로는 대면 상담, 심리·법률·수사 지원 연계, 사례관리 등 원스톱솔루션센터가 담당하는 통합 지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범죄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직접적인 상담과 관계기관 간 즉각적인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거점센터의 역할은 온라인 서비스만으로 대체되기 어려움.

따라서 법무부는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되, 지역센터 확충이 장기간

170)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은 정부부처, 산하·민간단체, 지자체 등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서비스를 서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으로, KICS(형사사법포털) 및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20여 개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지원 업무를 효율화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원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며, 대국민 포털을 통한 온라인 피해상담 및 통합피해지원 서비스 구축으로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6년도 계획액은 33억 5,500만원임.

지연되지 않도록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2024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결과

1.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현황

요 구 수 준						합 계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	-	7	8	45	(1)	59

2.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조 치 결 과			합 계
조치완료	조치중	조치 미이행	
46	13	-	59

3.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상세내역

가. 조치완료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 규정 취지에 반하여 일반용역비(210- 14)를 컨설팅이나 조사·연구 목적 등 연구용역비(260목) 성격의 사업에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임 - 2024년 법무부에서 집행한 일반용역비 내역 중에는 일반용역비와 무관한 '만족도 조사', '친절도 점검', '컨설팅',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일반용역비로 집행되는 전 사업에 대해 비목 적합성을 확인하여 비목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타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예산은 적정비목으로 변경·재편성함으로써, 일반용역비 집행 시 예산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ㅇ 2025년 예산 집행 시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점검' 용역에 대해 일반용역비(210-14)에 편성된 금액을 연구용역비(260목)로 자체 전용하여 집행 완료 ㅇ 2026년 예산 집행 시 일반용역비 집행 건에 대하여 비목 적합성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용역비(260목)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26. 1. 22.)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에도 적정 세목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22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연구용역을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4/4분기나 연말에 추진한 과업들이 존재하고, 선급금(선금) 지급액과 지급시기에 문제가 없는지 적절성 검검이 필요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소관 내 연구용역비(260목) 사업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연구용역이 보다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 개선	ㅇ 법무부 내 '26년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조사하여 연초부터 연구용역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26.1.22), 연구용역 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연말 추진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이월되는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음 ※ 정책연구용역 이월현황 : ('25년) 18건 → ('26년) 7건 ㅇ 다만, 선금의 경우 「국고금 관리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선금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22일
ㅇ [지적사항] 최근 신규로 임용되는 공익법무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익법무관의 전체인원과 수요 대비 충원률이 70%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추세인바, 법률구조 등 주요업무에 차질이 우려됨 공익법무관 인원이 감소추세임에도 공익법무관을 그 주된 업무인 법률구조·국가송무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법무부 부서에 다수 배치하고 있는바, 법률구조 공단 배치 확대 등 조정이 필요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법률구조·국가송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재배치 및 변호사 채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 공익법무관 감소현황에 대응하고 배치적정성을 검토할 것	제도 개선	ㅇ 공익법무관 수 감소는 병역 미필 졸업자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우나, 법무부는 국방부와 미필 인력자원 배분 관련 정례협의를 하기로 하는 등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 또한,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매년 정기인사 시 기관별 업무량·법조인력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배치기관 및 인원수 등을 조정하고 있음 - 법무부는 2025년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기관·부서별 업무량과 기관의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익법무관 배치기관·부서 및 배치인원을 결정하였고, - 향후 정기인사에서도 지적사항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적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소속기관 인건비 등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지난 2023년에도 예산 전용 등 부정확한 예산편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2024년도 이·전용 등 규모는 오히려 2023년 대비 급증하였음. -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규모가 과다할 경우 이·전용에 따라 감액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 제출 예산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소지도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의 지급 예상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과다한 이·전용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25년 1차 예비비(2,431억원), 2차 예비비(622억원)를 배정받아 예비비 총 3,053억원 중 99.9%를 집행하였으며, ㅇ 향후 집행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국제중재센터는 2019년 사건 접수 70건 및 수수료 수입 약 8억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24년의 경우 국제중재 사건접수 건수 48건 및 수수료 수입 약 5억원임 국제중재유치 강화 등(약 2억6천만원)의 예산을 제외하고도 2024년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보조금은 13억 4,900만원 정도이나 국제중재의 수수료 수입은 5억 700만원으로, 국제중재의 국내유치 실적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향후 교육사업 등을 통해 중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사 사건 중재 역량 강화 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재 등 대한상사중재원의 특성화 방안,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상대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하여 중재제도·인프라 강화, 국제중재 유치 확대, 국내중재 제도 정착, 중재산업 기반 강화 등 추진 전략별 과제 추진 - 해외 유수의 중재기구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특히, 국내외 중재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26년 예산을 확정함 ㅇ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전세계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중재사무처리규정」 개정(12월) - 국제중재 분야 최신 실무 및 국제중재 이용자 수요 반영, 합리적 중재비용 체계 마련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현재 1,425개의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1개 마을에 3~4명을 배치한 경우도 있고, 3~4개 마을에 1명의 변호사를 배치한 경우도 있음. 구체적으로 무변촌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배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마을변호사의 상담실적 역시 법무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실적 평가 및 이용자의 평가 체계도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별 상담 건수 및 수요파악이 되지 않아 마을변호사 배치 적정성을 기할 근거가 없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이용자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변호사 배치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	제도 개선	ㅇ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배치인원·인구수 대비 상담건수 비율, 지역별 만족도 등을 산출하는 등 평가체계를 정비하였음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상반기) * 마을변호사 대상 ** 이용자(일반 국민) 대상 ※ 추후 제9기 마을변호사 위촉 시(2026. 8. 예정), 이와 같은 지표를 참고하여 배치 적정성을 제고할 예정임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목적을 불명확하게 작성한 사례가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사업에 집행된 사례도 존재하므로, 사업추진 경위·목적·근거·효과 등에 기초하여 예산액을 산정·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이민정책연구원이 예산 집행용도를 보다 자세히 작성하게 하고, 사업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할 것	제도 개선	ㅇ 법무부는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25. 9. 16.), - 동 공문 발송 이후, 이민정책연구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내 등록시 용도, 집행용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여 제출함 ㅇ 또한, 사업 근거가 미비한 사업(논문공모전)에 대하여 내부 규정인 「사업규칙」을 개정하여 상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4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2018년 사업비 개편*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사업비와 다른 사업의 기본경비를 함께 혼용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① 법무행정정보화(기획조정실 소관), ②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3가지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비로 편성·집행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 세부사업비 간의 혼용지출을 방지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사업을 추진할 것	제도 개선	ㅇ 출입국정보시스템 예산 통합 편성 취지에 맞게 타 세부사업 간 사업비 혼용 지출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을 두 차례('25. 9월, '25년 12월) 진행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음 ㅇ '25. 7월 「출입국관리법」개정으로 계절근로 정보시스템 구축(제19조5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일
ㅇ [지적사항] 최근 3년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연속 '미흡 2회'와 '보통 1회' 등급을 받아 평가결과가 계속 저조한 상황이고, 지출구조조정으로 2024년도 사업비 11억 5,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년에 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사업 폐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 사업 관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 ※ 기재부는 재정성과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22회계연도 이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강조한 바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관리사업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등급으로 사업폐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재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 개선	ㅇ 재정자율평가 결과 '미흡' 원인 시정 - 실적 우수성 홍보 강화 : '외국인보호관리사업' 관련 실적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치안 위협 외국인 국외 호송 등의 실적을 홍보하였으며, 주요 언론사(연합뉴스, 조선일보, YTN 등)에서 보도함 - 연례적 이전용 최소화 : 효율적인 집행 통해 연례적으로 이전용하던 비용을 최소화함 ※ 외국인 국외 호송 등 필수지출을 위한 이전용만 시행 - 환류 결과 반영 : 재정자율평가 미흡사항을 반영하여 실적 우수성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 효율화를 통해 이전용 최소화함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2024년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인건비에서 총 17억 8,500만원을 이·전용한 뒤 타 사업비 부족분에 활용하였고, 최근 4년간 이·전용이 관례화되는 추세로 보임 - 2024년 이·전용 후 집행 내역: 국제법무국기본경비(7011-266) 5억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7018-250) 1억 8,500만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1232-300) 6억원,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5억원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인건비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최소화하도록 규정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집행 점검을 통해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 인건비가 여유 재원으로 반복 활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ㅇ 2025년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여 타사업비로의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2026년도에도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가 이·전용 여유 재원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ㅇ [지적사항] -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 정기분 및 수시분 관련 집행명목, 수령인은 모두 비공개하고, 금액 및 일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하여 익명처리한 수령인을 표기해서 제출하고, 특활비 환수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할 것	시정	ㅇ 2023~2024년 전국 검찰청 특수활동비 정기분, 수시분, 집행명목 일부, 익명처리한 수령인 등 집행내역을 국회 결산, 편성 심사 과정 중에 제출하였고, 향후에도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 법무부와 검찰은 정부구매카드의 경우 '사용일자, 가맹점명, 승인금액'만 제출하고, 수사활동비의 경우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처리하고 '금액'만 제출 - 이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 관련 일시(시간) 및 인원(명수),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환수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하여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주의	ㅇ 2023~2024년 전국 검찰청 특정업무경비 카드사용내역, 일시, 환수 사례 등 집행내역을 국회 결산 심사 과정 중에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 2024년 7월 1일 권순정 당시 수원고검장이 안산지청을 방문 후 안산지청장 등 10명과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98만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특정업무경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유용한 것에 해당함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 등 담당자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 및 지연하였으며, 위 회식에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지만 지침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였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검찰 특정업무경비를 관련 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국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제출할 것	시정	ㅇ 매년 전국 검찰청에 특정업무경비를 편성목적과 관련 지침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특정업무경비 부적정 사용 건 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52)’의 경우 전국 검찰청의 건물 유지보수 및 차량유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2024년도 예산액은 8억 1,800만원이었으나, 예산액의 68.1%에 이르는 5억 5,7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하거나(4억 8,200만원)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7,500만원) 집행함 - 또한,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의 경우에도 전력설비 및 통신시설, 출입통제시스템 등 유지보수 및 기타 시설물·기계설비 점검 등을 위해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210-09) 중 6억 1,4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하거나(3억 4,000만원),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2억 7,400만원) 집행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와 검찰청은 시설장비유지비의 과다한 이·전용 등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전용 등이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실제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ㅇ 2026년은 전년 대비 검찰청시설운영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를 6억 2,000만원 감액하고 검찰 전체 국내여비를 1억 3,000만원 증액하는 등, 수요가 적은 세목은 감액하고 수요가 많은 세목은 증액하여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 검사 학위과정 학자금은 연 6만 달러로 법관(5만)·공무원(2.2만) 대비 과다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 대상자 수, 금액, 논문 표절율 등 주요 현황 자료를 비공개해 국회 심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 국외훈련을 마친 검사의 연구논문이 전체 공개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 국외훈련결과보고서가 모두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임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법관 등 타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검사 국외훈련에서의 학자금, 체재비 등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하여는 국회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ㅇ 기본 학자금을 법관과 동일한 5만 달러로 하향하고, 가산금 지원 요건을 상위 10% 대학 입교자 등으로 제한하는 등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학자금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정비하였음 ㅇ 국외훈련비 환수 대상자, 지급된 훈련비 및 환수액, 논문 유사도 자료 등도 제출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관보다 기본학자금 및 가산한도가 높다는 점, 국외훈련 관련 보고서, 논문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 또한,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16명의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환수 조치만 이뤄졌을 뿐 이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음 ※ 환수된 금액은 총 지급훈련비 6억 7천만원 중 8천 6백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는 검사 국외훈련운영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법무부는 체재비 2배('23. 1. 31.) 또는 4배('23. 1. 31. 이후) 환수. 체재비는 학자금을 제외한 체류기간 동안 지원된 비용을 의미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종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국외훈련비 환수대상자에 대해 적극 조치를 취할 것	시정	ㅇ 환수대상자에 대해 국외훈련비 환수는 물론 감찰 등 진행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사 사례 발생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외훈련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31일
ㅇ [지적사항] - 법무부는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및 '공공수사' 사업의 예산을 실제 소요에 맞지 않게 과다 증액하여 이·전용 등이 크게 발생하였음 - 대표적으로, '통신자료 제공 통지 대행료' 등 명목으로 일반수용비 9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3,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8억 7,000만원에 불과하였음 - 공공수사 사업의 '포상금' 예산 또한 전년대비 77.3%를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8.0%에 그쳤음 - 반대로, 국내여비의 경우 2023년 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당초 예산액을 초과 집행하였음에도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증액하지 않아, 2024년에도 재차 다른 항목으로부터 전용받아 집행하였음	제도 개선	ㅇ '통신자료 제공 통지 대행료'는 2025년의 경우 편성액의 91.8%를 집행하였으며, 2026년 예산 편성시 그동안의 예산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4,200만원을 감액하였음 ㅇ 국가보안유공자 등 포상금은 사건 수, 사건 내용, 수사단서의 성격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집행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동안의 집행률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7년 예산 편성시 적정 금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2026년은 검찰 전체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 증액하는 등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 및 검찰청은 예산 증액 시 그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항목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ㅇ [지적사항] - ‘공사비(420-03)’ 및 ‘자산취득비(430-01)’ 등 항목의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들 항목의 잔액을 다른 항목으로 과다하게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음 - 먼저, 구치감 및 민원실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편성된 공사비(420-03)의 경우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14억 2,500만원이었으나, 이 중 9억 600만원만 집행하고, 예산액의 36.2%인 나머지 5억 1,600만원을 모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전용하였음 - 또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장비 구입 및 각 청사 내 도서관의 도서구입 등을 위하여 편성된 자산취득비(430-01)의 경우에도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6억 2,000만원이었으나, 이 중 4억 600만원만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4.5%에 해당하는 2억 1,400만원을 공공요금 및 형사보상금 부족분으로 전용·집행하였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예산 편성·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	제도 개선	ㅇ 2026년은 2024년 대비 구치감 및 민원실 등 환경개선 공사비를 14억 500만원 감액하고 수사장비, 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도 2억 4,600만원 감액하였으며, 형사보상금은 40억원 증액하는 등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등에 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목적일반수용비(210-01)는 지난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연례적 실적 부진이 지적되어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는바,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처음부터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임 -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제도 개선	ㅇ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및 ‘영장심의위원회’ 예산은 2026년 예산을 2024년 대비 각각 19.5%, 24.8% 감액하는 등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일반수용비 또한 집행실적이 예산액 대비 4.8%에 불과한바, 실제 소요액 대비 과다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시정요구사항] 법무부와 검찰청은 일반수용비의 과다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그 잔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소요액을 보다 정확히 추계할 것		
○ [지적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다른 항목의 경비를 과다 전용하였음. - 2024년도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당초 총 29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도에 이어 재차 상당 규모의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14.1%인 41억 2,100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경비로부터 전용하여, 총 332억 3,400만원을 집행함 - 특히,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사업의 경우 7억 700만원을,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 사업의 경우 9억 3,200만원을 공사비(420-03)와 자산취득비(430-01)에서 전용하였음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의 경우 전용액을 더한 전체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액이 당초 예산액의 162.0%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이는 공사비 예산액의 36.2% 및 자산취득비 예산액의 30.8%를 각각 전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전반적 성과와 효율성을 저해한 사례로도 볼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법무부 및 검찰청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의 적정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편성함으로써, 필수경비 부족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 대규모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2025년은 전년 대비 '검찰청 시설운영',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47억 8,900만원 감액하여 실제 수요보다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 검찰 전체 공공요금을 전년 대비 4억 3,100만원 증액하는 등 모자란 예산은 증액하고 남는 예산은 감액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 ○ 공공요금은 검찰청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은 물론,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를 신청하는 등 대규모의 이·전용을 지양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 다음과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이 다수 있었음. -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의 경우 매년 9,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24년 기준 771만원만이 집행되어 8.5%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실적이 저조함 -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및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도 집행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준법강의 등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의 경우, 실적 부진을 수차례 지적받은 이후 이전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2024년도 집행률이 각각 51.4% 및 53.3%로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 및 검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라는 본 사업의 취지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내역사업의 실적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ㅇ 해당 사업에 대해 일선청 사업 적극 홍보, 각종 수사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수사역량 강화 교육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2025년 집행률을 2024년 대비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은 26.5%,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는 15.4%,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예술치료’는 61.0% 상승시켰으며, ㅇ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는 그동안의 집행 추이를 감안하여 이미 2025년 예산을 2024년 대비 12.7% 감액하는 등 각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 전반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어 그 잔액이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 위한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검찰청 인건비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325억 3,8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이·전용하고 58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149억 2,600만원을 이·전용, 75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전용 등 규모가 크지 않았던 2022년도 및 2021년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각각 205억 8,800만원 및 408억 1,400만원 규모로 발생하였는바, 검찰청 인건비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는 상황	제도 개선	ㅇ 인건비는 예산이 모자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재정당국에서 각 부처의 정원 등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ㅇ 공무원 급여 상승 등의 요인으로 매년 인건비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이고 특히 2026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2017년 이후 최대치인 3.5%를 기록하였으나, 2026년 검찰 인건비 예산 증감률은 3.2%로 오히려 전년도 증감률 대비 0.1% 감소한 금액을 편성함으로써 인건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 ㅇ 향후에도 인건비 집행액 등을 면밀히 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임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토하여 과다편성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 2024년도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당초 총 86명의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62명만을 채용하는 데 그쳤음 - 그 결과, 예산액 12억 9,5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총 6억 9,4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고, 상당 부분을 다른 사업에 전용(3억 1,300만원)하거나 불용(2억 5,500만원)함 - 이는 검찰청 등의 채용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법무실을 비롯한 각 부서는 당초 계획을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검찰청의 경우 당초 35명 채용을 계획하였음에도 실제 채용은 19명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절반 수준의 실적을 보였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 및 검찰청은 실무수습 변호사의 채용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낮은 급여와 지역 근무 등 근무여건 불만족 등으로 잦은 이직, 지원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통해 채용계획 인원대로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위주로 인력 배치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를 증가시켜 집행실적을 제고하겠음 ㅇ 각 해당청 소요 인원 채용 미달시 그 인원을 실무수습 변호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중앙지검 등 재경지청에 신속하게 재배정하여 채용목표를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법률서비스 무역수지는 2024년 2분기 대비 2025년 2분기에 적자폭이 27% 증가함.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각국의 정책변화, AI, 에너지 등 여러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현황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시장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TF를 신설하는 등 법률서비스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중재 사건을 국내 유치하고, 법률시장을 국제화하여 선진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와 소재지협정을 체결하여 PCA에서 수행하는 중재 사건을 국내 유치하기 위해 협의 진행 중 - 법률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를 발족(25년 6월)하여 운영 중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영문 에디터 1인과 국제법 전문위원 2인의 공무직 보수로 2024년 집행액은 1억7,500만원으로 집행률이 87%이며, 공무직 인건비 집행부진은 2022년부터 3년간 지속되었음 이와 같은 국제법 전문위원의 높은 퇴직률이 유지될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국제법률 자문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며,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신속한 진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퇴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전문 공무원 양성, 민간 경력 채용을 통한 공무원 인력 확보 방안 등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제도 개선	ㅇ 현재 결원 발생 즉시 채용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평균 재충원 소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건비 불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임 * ('22년) 평균 3개월 → ('23년) 평균 2개월 → ('24년) 평균 1개월 → ('25년) 평균 0.8개월 ** ('22년) 약 21.6% → ('23년) 약 18.1% → ('24년) 약 12.9% → ('25년) 약 7.2% ㅇ 또한 우수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국제기구 파견 기회 부여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수시 및 정기 직제 신청(25년 9월) 등 공무원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임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 2024년 결산 심사과정에서 교정본부에 각 구치소·교도소별 2024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교정본부는 실제 기관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ㅇ 예산안은 사업별·기능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므로 소속기관별로 세부사업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고, 지방교정청을 포함한 58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소요 발생에 따라 예산을 재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고 소속기관의 집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음 ㅇ 향후에도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27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교정본부가 법사위원의 결산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결산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징계가 필요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원활한 결산심사 업무를 위하여 요구자료를 지연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ㅇ “2024년 서울·수원구치소의 비목별 집행내역 자료” 등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실을 방문하여 설명드리며 제출하였으나, 자료가 제출기한보다 늦게 제출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림. 향후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예·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8월 27일
ㅇ [지적사항] 교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전용하여 상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해당 사업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임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하여만 집행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시정	ㅇ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에서 공무직 고용부담금으로 이·전용한 예산은 과밀수용 해소 관련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직원 관련 시설 개보수 비용이며, 예산집행지침상 이·전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이·전용하였음을 설명드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 ㅇ 향후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ㅇ 대구교도소 개청식 행사 대행용역을 위한 4,900만원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은 전문성이 필요한 비정기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행사 대행용역을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개청식 등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를 용역계약 등을 통해 대행시킬 경우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ㅇ 향후 교정기관 개청식 행사에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 필요한 경우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수원·인천·서울남부구치소, 춘천·원주교도소 등 교정기관 심리치료팀 구성인원 또는 기준이 「심리치료 업무지침」(법무부 예규)상 인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교정기관이 다수 존재함. ※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심리치료팀 구성 인원 : (대형기관) 7명 이상, (중형기관) 6명 이상, (소형기관) 5명 이상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심리치료 업무지침상 심리치료팀 구성기준을 충족하도록 상담전담 직원을 충원·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 개선	ㅇ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전 교정기관 심리치료팀 구성기준 준수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 상담전담 직원, 심리치료프로그램 업무담당자 및 심리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등 기관별 특성, 심리치료 수요에 따라 구성인력 충원·배치 - 교정 현장 인력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세밀한 진단 및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상담 적극 실시 ㅇ 향후,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9월 10일
[지적사항] ㅇ 법무부는 2024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347억 6,500만원을 이·전용하고 63억 1,900만원을 불용하는 등 매년 200~400억원대의 연례적인 인건비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 연도별 이·전용 및 불용액(백만원): ('22)40,946 → ('23)26,483 → ('24)41,085 ㅇ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가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이·전용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처우개선 등 교정직 공무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된 교정직 공무원 확충방안 관련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사현황을 면밀히 반영하여 미집행액의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하며, 부족한 교정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교정직 공무원 결원 발생 시 2025년 합격자를 2026년 1월에 임용하여 결원 발생 최소화 예정임. 더불어 2025년 충원 요구 인원(301명)보다 약 2.5배 많은 인원(728명)이 배정되면서 2026년부터는 교정직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채 인원으로 결원 해소가 어려울 경우 경력채용을 실시하여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겠음 ㅇ 2025년 교정직 공무원 인사현황 및 예산 집행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 이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인사 현황을 면밀히 반영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최근 소년원 신규 수용인원이 급증하고 소년원 출소 후 재입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자립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소년원 출원 후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소년원 출원 후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소년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킬 것	제도 개선	ㅇ 청소년자립생활관·창업비전센터는 입주생 확보를 위해, 소년원, 보호관찰소, 법원 등에 기관홍보 강화, 누수 등으로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제공하여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함 ※ 소년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기관홍보 실시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자립지원기관의 사회정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계속해서 소년보호협회를 지원하여 출원생 자립지원기관의 안정적인 입주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입주율 : 2024년 12월 기준 68% → 2025년 12월 기준 87%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의무관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임상연구비가 불용되었는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의무관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법무부는 제주소년원 의무관 등의 조속한 충원대책을 시행하고, 의무관 처우개선 등 인력충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충실히 검토할 것	제도 개선	ㅇ 임상연구비 예산이 매년 1억 1,846만원이 편성되어 2024년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25년에는 의무관 의무관 임상연구에 앞서 공동연구 독려, 기관 과제 발굴 요청 등 사전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임상연구 참여율이 전년 대비 100% 증가(6건 → 12건) 하였음 ※ 집행률 : 2024년 47.7%(56,544천원) → 2025년 96.9%(114,912천원) ㅇ 보수인상, 퇴직의사 채용,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무관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임 ㅇ 또한, 소년원의 만성적인 의무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소년원(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2027년 전체 소년원에 확대 시행 추진하는『소년원 원격의료제도 도입 계획』을 마련함 ※ 법적근거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갱생보호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적어 매년 기금이 누적되어 기금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음 ㅇ 법무부는 갱생보호기금의 이월금 규모가 매년 증대되어 기금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기금으로부터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지출되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ㅇ 기금으로부터 갱생보호사업 지출 예산 확대 조치함 - 2026년 갱생보호기금에서 지출되는 사업비를 확대하여 41.3억 원을 편성함 ※ 2025년 28.9억 원 대비, 12.4억 원(약 42.9%) 증액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직업훈련사업을 2026년부터 갱생보호기금으로 운영함 ※ 2024년부터 주거지원사업을 갱생보호기금으로 운영 중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국립법무병원 정신과의사의 경우 법령상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 기타 의료인력의 경우 재활치료 연인원 대비 부족한 인원수를 보임 ㅇ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ㅇ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는 2024. 12. 기준 6.8명(충원율 45.3%)에서 2025. - 9.9명(충원율 66%)으로 3.1명 충원됨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상 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수 60명이 적정수준이며, 국립법무병원은 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수 57명으로 법령에 부합함 ※ 2025. 12. 1. 기준 국립법무병원 수용 현황 : 823명 ※ 정신과 의사 9.9명 + 정신과 전공의 4.5명(9명×0.5) ÷ 823명 = 57명 ㅇ 임상심리사 등 기타 의료인력은 13명으로, 피치료감호자의 개인별 특성 및 상황에 따른 다양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상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당 환자 수 100명이 적정수준이며, 국립법무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당 환자 수 63명으로 법령에 부합함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사업 중 프로그램 외부 기관 위탁비용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ㅇ 법무부는 해당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ㅇ 운영학교 모집, 전문 강사 파견, 지도교사 및 전문 강사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용역 성격임을 고려 ㅇ 2026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사업의 위탁대금은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향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편성 시 학생자치법교육 중 프로그램 외부 기관 위탁비용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6년 4월 30일
ㅇ [지적사항] 2024년 법무연수원의 기타운영비 집행내역에는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격려 목적에 집행하거나, 분기별로 지속적·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침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기타운영비(210-16) 지급 사례의 상세 내역을 제출하고, 포상 목적인 경우 해당 예산을 포상금(310-03)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ㅇ 격려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출자료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격려대상 업무범위와 지급절차 등을 마련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9월 16일
ㅇ [지적사항] 국가배상금은 확정된 판결이나 배상결정 후 임의변제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국가배상금의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022년 213억 9,700만원, 2023년 152억원, 2024년 137억6,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이월액은 2022년 1억 4,934만원(14건), 2023년 3,566만원(9건), 2024년 1억 7,053만원(23건)으로 나타남 - 법무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주의, 제도 개선	ㅇ 미지급된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3,053억원(1차 2,431억원, 2차 622억원)을 배정받아 즉시 집행하였음(집행률 99.9%) ㅇ 향후 집행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의 결산 자료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작성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답변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며 제출을 누락하는 등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 최소화하도록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법무부는 국회의 결산 자료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작성을 하여 제출할 것(주의)		
ㅇ [지적사항] 공익신탁제도는 10년 경과되었으나 실제 운영·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고 집행이 없는 신탁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신규인가 및 기부금 규모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법에서 규정한 3년 내 집행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역부족인 상황으로 제도의 활용가치가 제한적임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장기 미운영·미집행 신탁 관리 강화, 홍보효과 분석 및 계층별 수요조사 선행, 세제혜택 개선 및 새로운 기부 모델 창출 등 중·장기적 추진계획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수탁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장기 미운영 공익신탁에 대한 집행·종료·합병 등 방안 마련 지시(6월) - 종료 2건, 기간연장 8건(11월) ㅇ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한 「공익신탁 인식조사를 통한 홍보방안 연구」 용역 실시(9~12월) - 홍보 타깃 및 방법 설정 후 '26년 홍보 실시 ㅇ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 외연 및 내용 확대, 신탁재산 운용 방식 개선,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보고(12월)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2024년 예산액 8억 2,000만원 중 불용액이 9,300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됨 - 저조한 전자공증 이용률, 규모가 작은 지정공증인으로 인한 제약, 효과 분석이 어려운 홍보예산 집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이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시민 인식조사·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지정공증인 확대·전자확정	제도 개선	ㅇ 법무부는 2025년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인지 수준 및 이용 만족도를 평가하는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인식 실태·만족도 및 이용 의향, 홍보에 대한 태도 등을 점검하였고, 관련 조사를 정례화하여 참여율을 제고할 예정임 ㅇ 또한, 아래와 같이 전자공증 기능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 (지정공증인 확대) 2025년 지정공증인 20인을 신규 지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전자공증시스템 이용을 교육하고 이를 독려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일자 도입, 전자공증 기능을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였으며, 앞으로도 지정공증인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전자확정일자도입)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자확정일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 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자공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25. 2. 관련 「공증인법」 개정안 발의, 현재 법사위 1소위 계류 중) ⇒ 향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전자공증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전자공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임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의 정책연구비는 2023년에도 4,4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24년에도 6,600만원을 이월함 - 또한, 2023년에는 8건 중 4건을 4분기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24년에도 8건 중 4건을 4분기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만큼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말에 정책연구를 몰아 체결하여 이월금이 지속 발생하는 문제 개선 필요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의 연례적 정책연구비 이월 및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ㅇ '25년 정책연구비 이월 없이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구용역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 외 수의계약 지양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사업취지인 취약계층 대상 한정 문제 - 자율적 계층 선택 가능 구조로 인해 사업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취약계층 확인 절차 및 계층별 이용 현황 관리 미흡, 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 관련 접근성 문제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취약계층 서류제출 의무	제도 개선	ㅇ 취약계층 서류제출 의무화 : 조치완료 -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기능 구현 ※ 현장에서 법률홈닥터 대상 시범 적용 후 추가적 보완 예정 ㅇ 계층 이동이 적은 대상군(국가 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증빙서류"를 1회 제출로 조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화를 통해 실적 통계 명확화, 계층별 지원효과 평가기반 마련 및 계층 이동이 적은 대상에 대해 계층 확인절차 간소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할 것		ㅇ 종전의 취약계층 유형 중 “기타” 부분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구체화 ㅇ 조치 완료일 : 2026년 4월 30일
ㅇ [지적사항] - 정부는 2023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마약수사사례 제작’, ‘마약범죄정보 제작’ 등을 신규 편성하여 일반수용비 예산을 크게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함. - 세부적으로, 마약사범수사 관련 마약류오·남용 예방 홍보용 책자 발간, 국내외 자료구입비 및 마약범죄 국제공조활동 통역비 등은 집행액이 0원이고, 마약사범 수사용품 구입(4.6%), 마약전문수사요원 집합교육비(6.2%), 마약류 사범 판별 검사 등 제반비용(8.3%) 및 마약수사사례·범죄정보 제작(32.8%)의 예산 등도 집행률이 저조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의 일반수용비 편성 시 인쇄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은 실제 소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행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	제도 개선	ㅇ 마약수사사례 제작, 마약범죄정보 제작 예산은 2025년 예산을 2024년 대비 각각 85.1%, 93.4% 감액하였으며, 국내외 자료구입비, 국제공조 통역비 예산은 2025년 집행률을 2024년 대비 각각 86.4%, 18.2% 상승시키는 등 마약수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집행률을 제고하였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 검찰의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4년간 타 사업으로부터 607억 9,000만원을 이·전용하고, 총 2,20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기준으로는 372억원 이상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하였고, 특히 ‘마약수사’예산에서도 4억 9,000만원을 이·전용함 - 또한, 가장 많은 보상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무죄비용보상’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제도 개선	ㅇ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과오 유형을 세분화하고 사건의 경중, 과오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평정을 진행하여 무죄 평정 결과를 반기별로 인사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인사, 승진, 적격심사, 포상 등에 활용하고 있음 ㅇ 앞으로도 무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평정을 진행하고 평정 결과에 따른 검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사건 처리시 보다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유형	조치결과
검사의 수사과정에서의 과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형사보상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및 수사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한 형사보상금 지급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것		ㅇ 2024년 대비 2026년 형사보상 예산을 40억원 증액하고 2025년의 경우 형사보상 예산 부족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429억원)하였으며, ㅇ 향후에도 형사보상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예비비 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이·전용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 세부사업(1431-303)과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국제법무국 기본경비(7011-266)’의 일반수용비(210-01) 예산을 별도의 이용절차 없이 본 사업(1431-303)의 예산과 함께 집행하였음 -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을 법률상 이용절차 없이 임의로 혼용하여 집행할 경우, 「국가재정법」이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항 상호 간 예산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취지가 무색해지며, 나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장·관·항 및 사업 간 구분을 무시하고 이·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ㅇ 사건별 진행 경과, 정부대리로펌과의 계약금액 및 미지급 금액 등을 예산 편성 시 면밀히 분석·반영하여 예산이 실제 소요에 부합하게 편성되도록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 - 향후 집행단계에서도 이·전용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인천공항(T2) 출입국 심사장 등 임차’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의 준공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출입국 업무용 공간 임차료를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향후 건축물의 확장 등 공사가 수반되는 공간에 대한 임차료의 예산 편성 시 해당 공사기간, 준공 예정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임차료를 편성할 것	제도개선	ㅇ 2025년 인천공항(T2) 서측 확장 지역 시설 임차료 예산 편성 시에는 해당 공사기간, 준공 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3개월 분의 임차료만 편성하였음 - 향후에도 임차료 예산 편성 시 해당 공사기간, 준공 예정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임차료를 편성하겠음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나. 조치 중인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66억 6,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장기·과다 미수납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음 - 구체적으로, '과태료'는 105억 1,200만원, '변상금'은 24억 7,0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2024년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사항이며, 그 밖에 '가산금'(13억 2,400만원), '징계부과금'(7억 1,800만원), '토지대여료'(9,800만원) 등의 미수납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장기·과다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지속적 수납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을 병행할 것	제도 개선	ㅇ 장기·과다 미수납 건은 주로 채무자의 무소득·무재산에 기인하여 수납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기적으로 납입고지서·납부독촉장을 발송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노출된 책임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는 징수조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납 노력을 하고 있음 - 일부 장기·과다 미수납건에 대해 대체집행 등을 통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반환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채무이행소송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겠음 - 한편 검찰청은 해당 미수납 건에 대해 신속한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및 사실조회를 취하고 해당청에 재산 추적 기법을 적극 안내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유관 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징수 위탁 등 조치를 통해 수납률을 제고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 법무부의 202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당초 계획 이상의 실적을 보였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수납실적이 저조하였음 - 구체적으로, '토지대여료'(52.2%), '기타관유물대여료'(76.5%), '변상금' (32.8%), '위약금'(49.7%), '가산금'(25.6%), '기타경상이전수입'(75.7%) 등 항목의 수납률이 저조함 - 특히, 이 중에서도 '토지대여료', '변상금' 및 '가산금' 등 항목의 경우 저조한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바, 이는 관련 제도 운용이나 예산 편성이 실적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수납실적이 저	제도 개선	ㅇ 장기·과다 미수납 건은 주로 채무자의 무소득·무재산에 기인하여 수납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기적으로 납입고지서·납부독촉장을 발송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관리를 위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납 노력을 하고 있음 - 일부 장기·과다 미수납건에 대해 대체집행 등을 통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반환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채무이행소송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겠음 - 한편 검찰청은 해당 미수납 건(변상금, 가산금)에 대하여 2025년 시효 완성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여 2035년까지 시효 연장 조치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압류가능채권 검토, 유관 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수납률을 제고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한 주요 세입항목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항목의 경우에는 향후 세입예산액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 [지적사항] 아동학대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의 총계가 매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개최 실적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아동학대사건의 양적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 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적절한 피해아동 구제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활성화가 바람직함 ○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 보강, 예산 불용 방지, 회의실적 관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체계를 확립할 것	제도 개선	○ '26. 1월 사건관리회의 개최 및 운영 절차를 체계화한 참고자료를 제작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배부하여 사건관리회의 개최실적 및 예산 집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개최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맞추어 사업 예산 집행 체계 개선 추진하는 등 자문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 [지적사항] 2024년에 전문임기제(다급) 33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110-02)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7억 6,700만원을 이·전용으로 마련한 뒤 집행하고, 2024년 인력 충원 및 운영도 원활하지 못함 - 난민심사 수요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가 아닌 정식 직제내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임기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난민심사 인력 충원 및 운영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추진할 것	제도 개선	○ 우리부는 매년 2회(상·하반기) 전문임기제의 실적 평가를 통해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난민심사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과 안정적인 난민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2027년 정기직제 요구안에 난민전담 인력(출입국관리직) 증원을 요청함(77명, 직제 내 정원, '26. 3월 행안부 제출) ○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함과 아울러 전문임기제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고려하여 난민심사 인력의 공무원(직제 내 정원) 전환을 점진적·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 최근 2년간 상고 포기 의견 등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다른 유사 위원회와 비교하더라도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준수율이 유독 떨어짐 - 심의위원회의 상고 포기 의견에도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대검찰청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당초 취지가 몰각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미 1심·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심의위원회도 심의기준에 따라 상고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 포기 의견'을 의결하였음에도 검사가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공권력을 통해 피고인의 형사절차로부터의 해방을 지연시켜 그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무리한 공소 유지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시정요구사항] 검찰청은 향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취지 및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상고제기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일정 요건하에 심의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등도 검토할 것	제도 개선	ㅇ 신중한 상고제기를 위하여 상고제기 여부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항소·상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일선 청에 전파 완료하였음 ㅇ '25. 10.~'26. 3. 상소 제도개선을 위한 TF 3회, 전국공판부장 워크숍 총 2회 개최하여 상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상소심의위원회의 도입 및 활용 방안, 심의대상사건, 상소심의위원회 결정 기속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ㅇ 취합된 협의를 토대로 상소이유 체크리스트 구체화, 상소심의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검토한 상소건 개선 방안을 작성 중임 ㅇ 관련 지침 개정안 마련 및 전국 청 의견조회 실시를 통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상소 인용률 평가제 도입 및 무리한 상소시 평정 고려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실무에 적합한 형태의 신중한 상고제기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6년 5월 30일
ㅇ [지적사항] 교정본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평균 수용률 126.8%, 여자수용자의 경우 138.9%)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8년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것	시정	ㅇ 법무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원주교도소 등 12개 교정시설의 신설·이전·증축을 통해 수용인원 4,519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 ㅇ 교정시설 유치 공모제, 민간투자사업방식(BTL) 등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을 검토하여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30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 초과집행 ㅇ [시정요구사항] - 고령·질병 수용자 증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료 관련 예산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법무부는 의무관 보수 현실화, 전공의 조기확보 등 의무관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할 것	제도 개선	ㅇ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실제 집행된 금액을 기초로 한 예산 산정 및 진료비, 입원비, 의약품비 등 전반적 상승에 따른 예탁금 증액 편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ㅇ '24년 의무관 전체 정원을 일반임기제 의무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무직 연봉특례 제도를 신설, 연봉 상한률 200% 적용한 결과, '23년 의무관 현원 83명(결원율 29.7%)에서 '25년 92명(결원율 20%)으로 9명의 의무관을 충원하였음. 향후 의무관 연봉 상한률 250% 이상 적용을 추진하는 등 채용경쟁력을 확보하고 채용채널 다양화 등 맞춤형 홍보 전략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ㅇ 법무부는 2024년 예산으로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을 초과한 3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164.7%), 위기상황자 1인당 지원액이 2023년 12만 4,000원에서 2024년 77만 5,500원으로 크게 증가함 ㅇ 법무부는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추진·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 개선	ㅇ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 중 위기상황자의 대상자 수 산출 등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추계를 산출할 예정임 ㅇ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산 편성 시 위기상황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2일
ㅇ [지적사항]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CBT를 도입하였음에도, 출제 중복검사, 채점, 문제은행 관리 등은 전산화하지 않아 여전히 종이 기반의 출제·채점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고, 기출문제 제출률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음 - 채점보조인력 및 문제은행 전자화 인력도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제도 개선	ㅇ CBT 도입에 따라 불용된 인건비는 CBT 도입 초기인 제도 정착 상황(수기시험 병행)을 고려해 조정하였음 - '26년 예산은 일용임금 79백만 원('25년: 134백만 원), 고용부담금 16백만 원('25년: 2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총 63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해당 과목의 실집행 역량에 부합하도록 전액 집행될 예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미흡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법전원 기출문제 제출을 독려하여 시험문제를 다양화하고, CBT 도입에 따라 불용된 채점보조 인력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 법무부는 기출문제 제출률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및 보안 대책 방안을 마련하며, 채점·문제은행 등 시험관리의 전산화 및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ㅇ CBT 체제 확대를 위한 전자법전(e-법전)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고 노후 전산시설 이중화 및 온라인백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 시험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 ㅇ 법학전문대학원 기출문제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나 변호사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출문제 제출을 독려 중이며, 필요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검토 예정 ㅇ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사업은 상대국* 배우자의 입국허가요건을 국내 배우자의 강의 수강 여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사적 영역을 제한하고 있음 - 2015년 UN특별보고관 권고 : '특정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국제결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7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이수 및 면제 요건 등을 점검하고, 고시국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시국가 지정 기준, 이수 및 면제요건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연구용역명)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ㅇ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지적사항] ㅇ 광주교도소 및 의정부교도소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지자체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이로인해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향후 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다수 교정기관이 포함되는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령상 제한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광주·의정부교도소의 사업승인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	주의	ㅇ 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을 조속히 추진하여 교정기관 공무직 근로자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겠음 ㅇ 향후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장애 요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ㅇ [지적사항]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해바라기센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재 원스톱솔루션센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처·기관이 존재하여, 지원 체계 연계가 부족 - 원스톱솔루션센터는 현재 서울시에만 1개소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됨 ㅇ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통합적 지원 보장, 온라인 상담 활성화를 위한 개별 홈페이지 구축, 센터의 전국 확대 검토를 위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점검, 범죄유형 및 연계서비스에 대한 실적 관리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ㅇ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중 - 1차 사업 완료('26. 12. 예정) 시 피해자지원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가능 - 대국민 서비스 오픈('27. 1. 예정) 시 개별 홈페이지 생성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접근성 향상 가능 - 2차 사업 완료('27. 9. 예정) 시 다양한 종류의 실적 통계 집계·분석 등 가능 ㅇ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전) 수기 통계 집계 분석 실시 - '25. 9.경부터 수기 방식으로 원스톱솔루션센터 참여기관 연계 실적 통계를 집계·분석하고 있음 ㅇ 조치예정일 : 2027년 9월 30일
ㅇ [지적사항] 2018년부터 위탁계약서 및 법률상에 근거가 없는 '교도소 운영과 무관한 금액(무관액)'을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에서 제외하고 지급 ㅇ [시정요구사항] 무관액을 제외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위탁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제도 개선	ㅇ「위탁계약서」 및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에 '교도소 운영과 무관한 금액(무관액)'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교도행정 예산'의 구체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겠음.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절차상 계약상대방인 재단법인 아가페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향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구 유형	조치결과
있는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의 개념을 교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명확히 하여 위탁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음 ㅇ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